



2010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본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써 세 돌을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경쟁을 촉진하며, 새로운 융합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보람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IPTV는 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불과 2년 만에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통신은 폐쇄적 국내 환경에 안주하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이용의 대중화 단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 스마트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규제 속에 변화의 무풍지대였던 방송은 경쟁 속에 발전하는 역동적인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의 변화와 발전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신문과 방송을 능가하는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 스마트 T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방송통신 환경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 스마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세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IT 선진국에 도달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춘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에 무한한 상상력과 불굴의 도전정신을 더한다면 미래 방송통신의 주역은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번 연차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반성, 앞으로의 도전 그리고 희망찬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방송통신은 다른 산업간 융합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데에 적극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2011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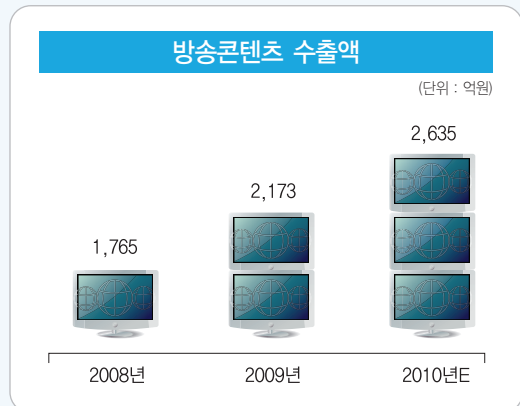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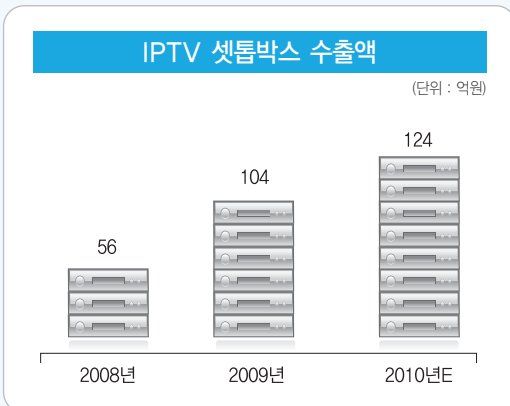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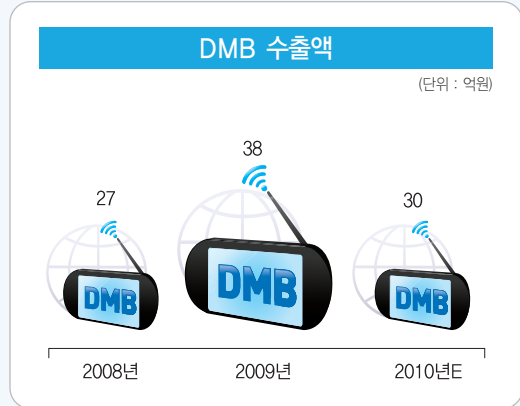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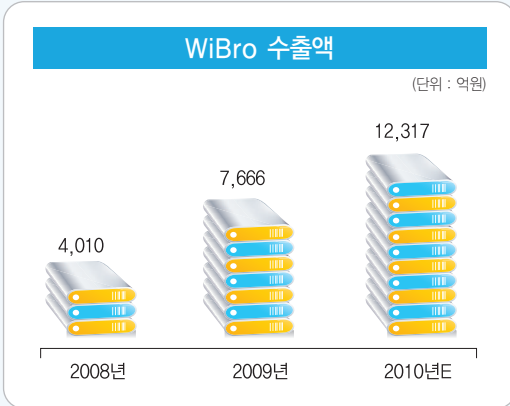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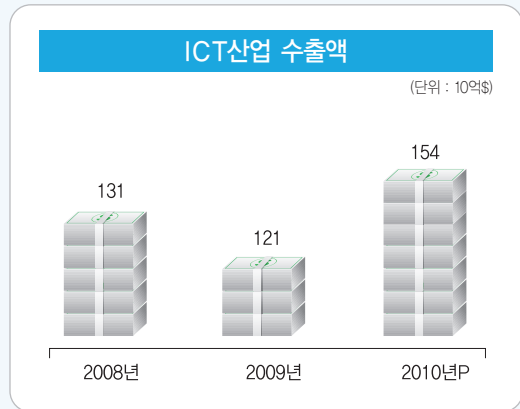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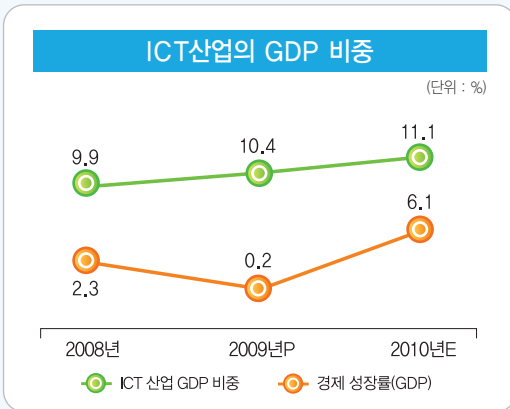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 성과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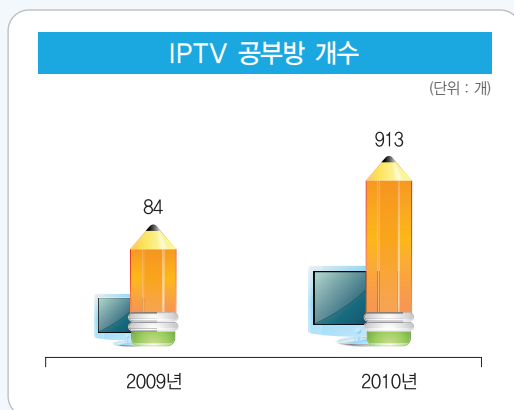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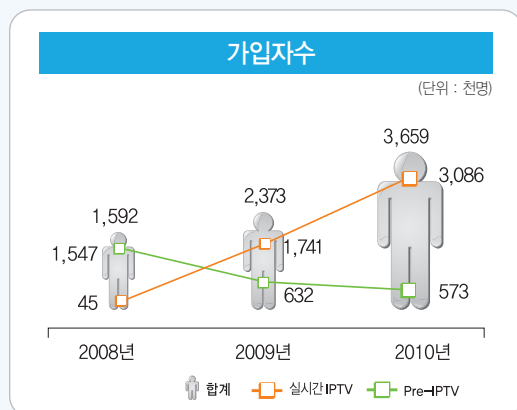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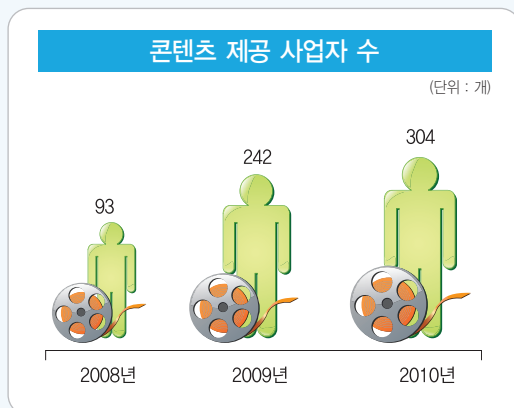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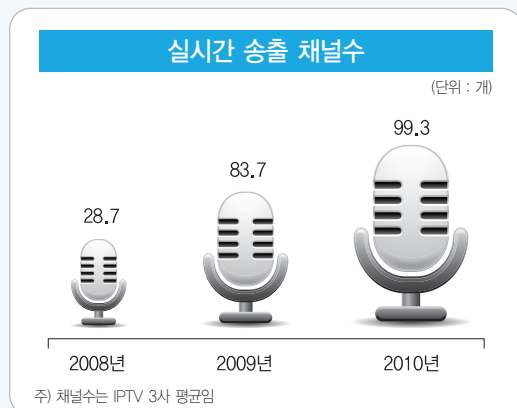
■ 방송통신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o WiBro, 셋톱박스, 방송콘텐츠 등 방송통신 분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IC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9%에서 2010년 11.1%로 높아졌습니다.



■ IPTV 서비스를 확대하여 방송통신융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IPTV는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3,659천 명(실시간 3,086천 명, Pre-IPTV 573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수는 2008년 93개사에서 2010년 304개 사로 증가하였으며, 실시간 송출 채널 수는 2009년 84개에서 99개로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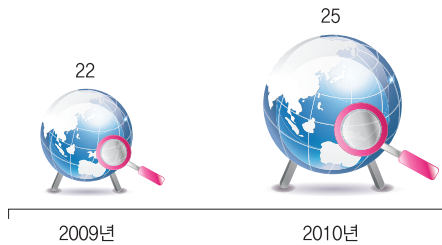


■ 방송통신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국가를 2009년 22개에서 25개 국가로 확대하였고, 해외진출 전략품목도 5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지원을 위한 초청연수 인원은 339명에서 450명으로 증가하였고, 방송콘텐츠 해외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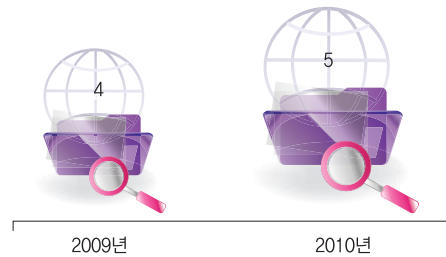
해외진출 거점국가 확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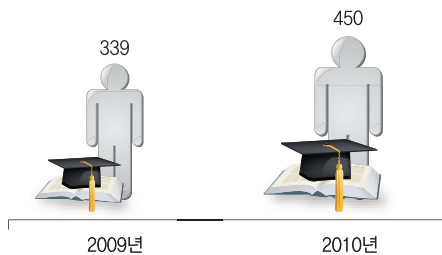
해외진출 전략품목 확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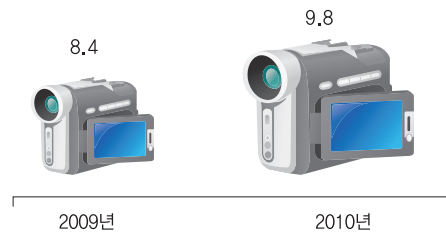
개도국 방송통신정책지원(초청연수인원)

(단위 : 명)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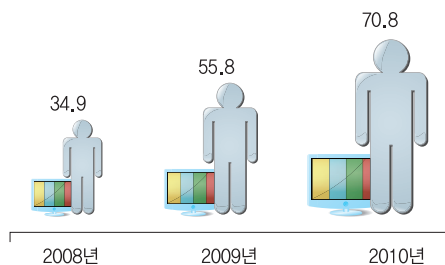


■ 방송의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지율은 2008년 34.9%에서 2010년 70.8%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도 38.7%에서 64.7%로 상승하였습니다.
- 차질없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융자지원도 2008년 140억 원에서 2010년 22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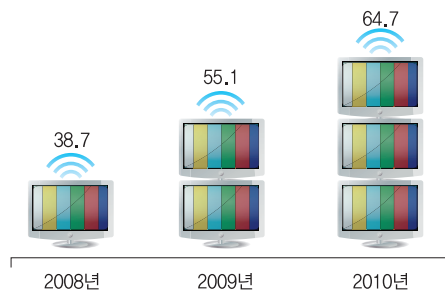
디지털방송 전환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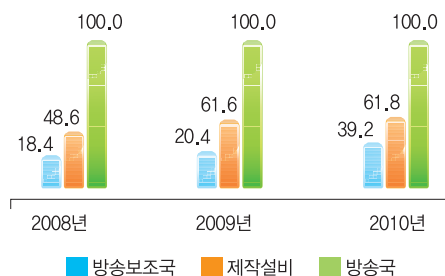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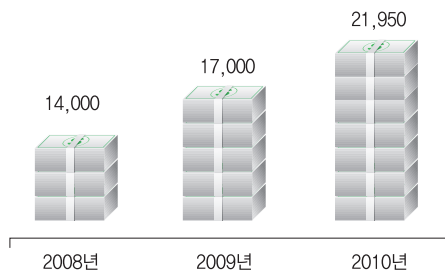
지상파TV 디지털시설 전환율

(단위 : %)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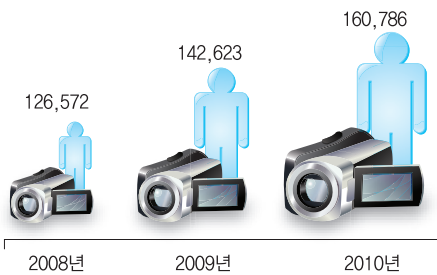


■ 소외 계층의 방송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 16만 여명에 달하였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편수도 3,500편까지 늘렸습니다.
-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수신기 보급은 2010년 말까지 13만 6,000여 대로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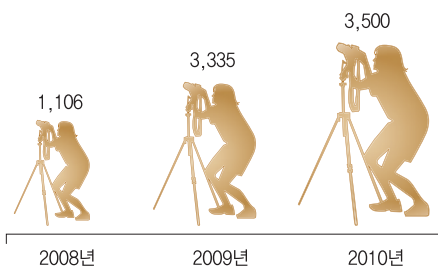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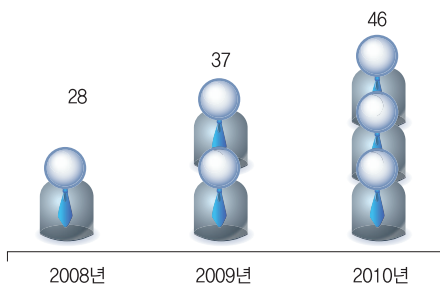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편수

(단위 :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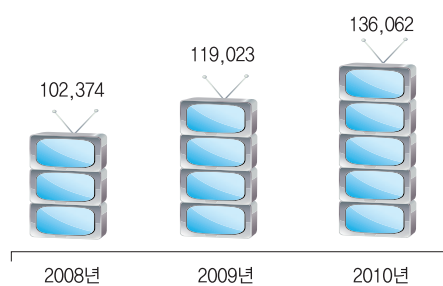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제작사업자수

(단위 : 개)



방송소외계층 수신기 보급

(단위 : 누적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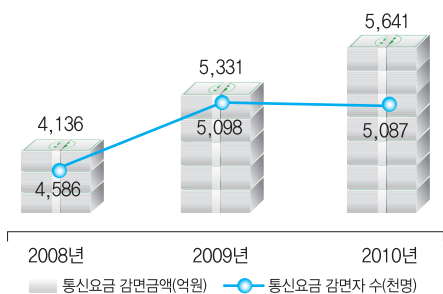


■ 가계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자 수는 2010년 약 509만 명으로 2008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감면액도 5,641억 원으로 2008년 대비 36.4% 증가하였습니다.
- 이동전화 과금 단위를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국내 유무선 접속료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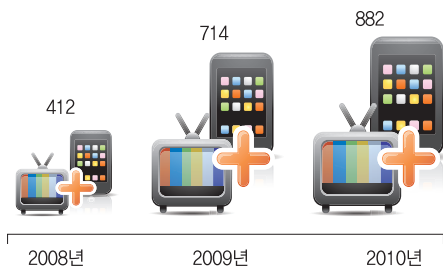
국내 유무선 접속료 감소

(단위 : 원/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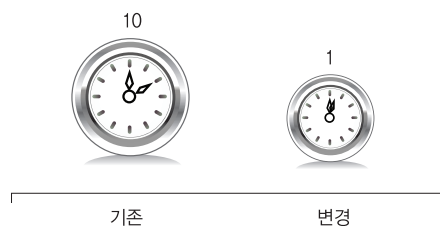
결합상품 가입자수

(단위 : 만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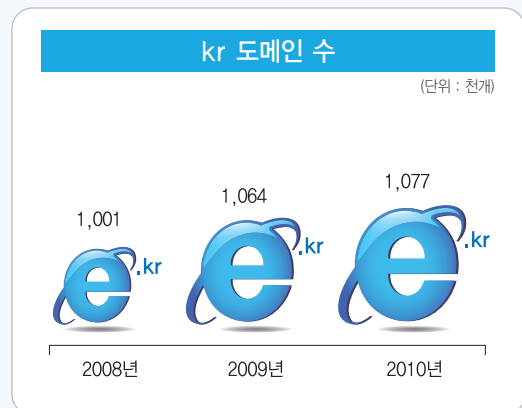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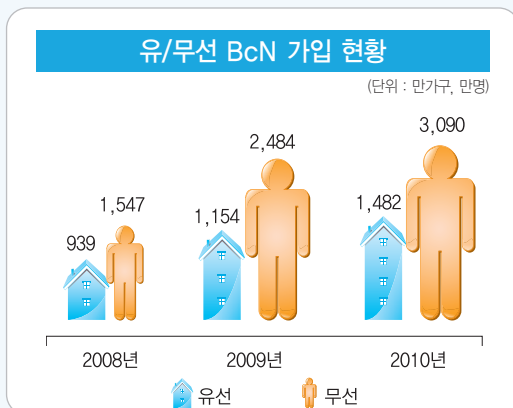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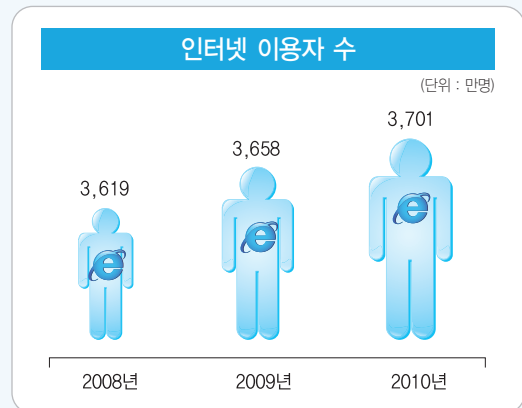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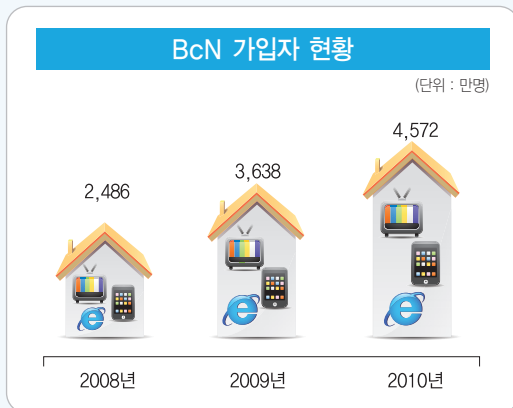
이동전화 과금단위 변경

(단위 : 초)



■ BcN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품질을 높이는 등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BcN은 4,572만 명(유선 1,482만 가구, 무선 3,090만 명)까지 보급하며 7년간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수는 3,701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kr 도메인 수는 2008년 대비 7.6% 증가한 108만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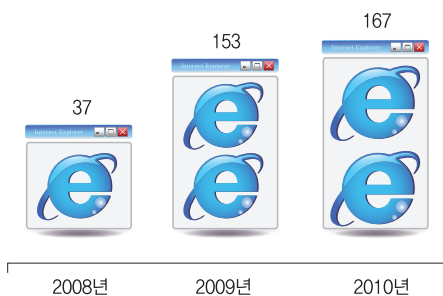


■ 미래 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및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수는 2010년 167개로서 2009년 대비 9.2% 확대하였으며, 1인 일평균 이동전화 스팸수신량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 인터넷 윤리 제고를 위해 윤리교실 운영과 순회 강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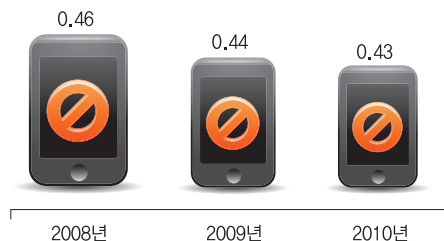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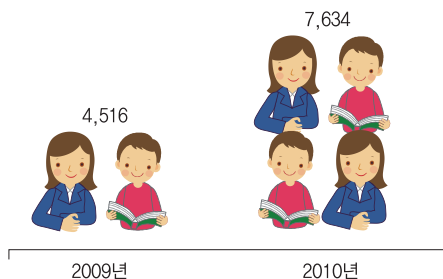
이동전화 스팸수신량 (1인, 1일 평균)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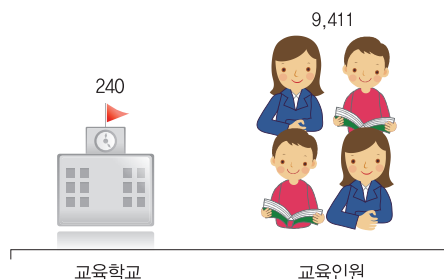
인터넷 윤리 순회 강연현황

(단위 : 명)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 현황

(단위 : 개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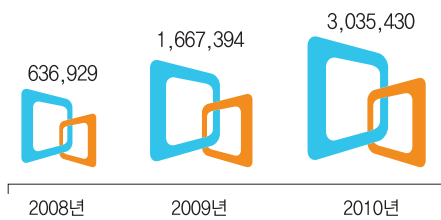


■ 보안기술 및 예방서비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o i-PIN 발급은 2010년 304만 건으로 2009년 대비 82% 증가하였고, ISMS 인증서 발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o 국산 보안기술인 SEED는 2009년 대비 62.5%(719건) 증가한 1,869건을 보급하였으며, 국내 일평균 개인 정보 노출 웹페이지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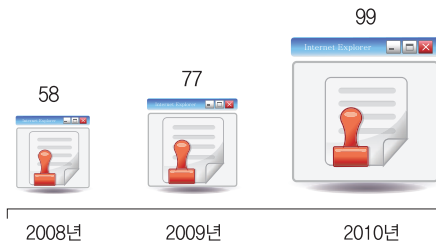
i-PIN(아이핀) 누적 발급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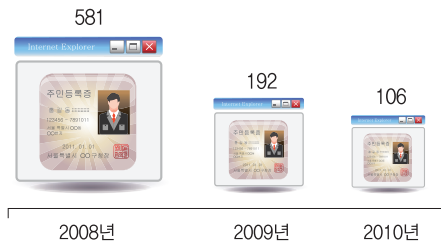
ISMS 인증서 발급 누적 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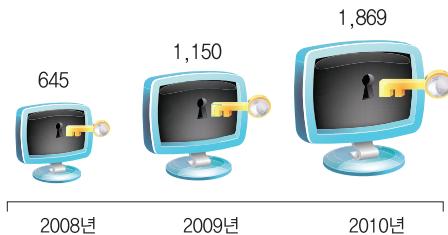
국내 일평균 개인정보 노출 웹페이지수

(단위 : 건)



SEED 국내외 보급 현황

(단위 : 건)





목 차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3
1. 경제성장과 2010년 방송통신 시장	3
가. 세계 거시경제 동향	3
나. 세계 방송시장 동향	4
다. 세계 통신시장 동향	7
2.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	10
가. 성장동력원으로서의 방송통신 산업	10
나. 스마트 환경 구축을 통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	13
다.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14
라.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의 녹색사업	15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9
1. 일반현황	19
2. 2009년 주요 성과	24
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와 차질없는 디지털방송 전환	24
나. 이용자 이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24
다. 방송통신시장 경쟁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	26
라. 방송통신 Korea의 위상을 높이는 해외진출 추진정책	27
3. 2010년 정책목표	27



목 차

Ⅲ.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31
제1절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31
1. 방송통신 융합 기반 확충	31
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체계 개선	31
나. 기금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	33
다. 방송통신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35
라.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37
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39
가. 신규 융합서비스 발굴	39
나. IPTV의 견실한 성장 지원	41
다. 스마트TV 환경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44
라.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46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51
가. 디지털 방송 전환 활성화	51
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52
다. 디지털 방송 대국민 홍보 및 지원방안	57
라. 디지털 전환 관련 방송사 지원	62
4.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64
가. 해외시장진출 기반조성	64
나.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협력활동	73
다. 국가간 방송통신 교류 협력	80
5. 방송통신 에너지절감 시책 추진	85

제2절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87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87
가. 방송법령 · 법제정비	87
나.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89
다. 신규 방송채널 활성화	92
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 개선노력	95
2. 방송의 공익성 강화	97
가.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97
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100
다. 공공 · 공익방송 인프라 지원	103
3. 방송의 다양성 제고	104
가.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	104
나. 지역방송 지원체계 구축 확대	108
다. 영어FM방송 확대	111
4.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114
가. 방송광고 규제제도 개선	114
나. 방송편성 및 외주제도 개선	114
5. 방송의 품질 향상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115
가. 방송광고 법규 준수 및 관리 감독	115
나. 방송 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116
다. 우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시상 및 지원	119
라. 저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지와 방송언어 순화	120
마.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121
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123



목 차

제3절 이용자 편의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25
1.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이용 환경 조성	125
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125
나. 소외계층 통신지원	128
다. USIM 제도 개선	129
라. 선불통화 보증보험 제도 개선	131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추진	132
가. 통신시장 규제완화	132
나. 상호접속제도 개선	136
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37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140
가. 와이브로 사업 이행계획 점검	140
나. 마케팅비 상한제(투자활성화)	142
다.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지원	144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147
가. 차세대 주파수 배정 및 4G 국제표준화	147
나. 차세대방송 기반구축	150
다. 전파자원의 이용활성화 및 산업 활성화	153
라. 전파자원 재개발 및 손실보상	158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159
가. 전파법령 정비를 통한 시장기반 규제체계 마련	159
나.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160
다.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164
라.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연구 지원	168

제4절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69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169
가. 인터넷상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169
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175
다.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181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촉진	183
마.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185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192
가. 네트워크 고도화 기반조성 및 구축 확대	192
나. 사물지능통신 확산 환경 조성	196
다. 클라우드서비스, 미래인터넷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198
라.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99
마.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202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204
가.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204
나.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 확립	211
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218
라.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 확립	222
4.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225
가. 시청자 권익보호 기반강화 및 시청자지원	225
나. 소외계층 방송접근기회 확대	228
다. 방송 등 언론의 피해 구제활동 지원	232



목 차

부 록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	237
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239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242
4. 2010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243
5.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현황	244
6. 2010년도 회계 결산	245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48
8. 2010년도 주요 연월표	260
9. 영문 약어	274
10.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279

표 목 차

〈표 Ⅰ-1〉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4
〈표 Ⅰ-2〉 세계 미디어 시장규모.....	5
〈표 Ⅰ-3〉 지역별 세계 TV광고 시장규모	5
〈표 Ⅰ-4〉 구성별 세계 TV광고 시장규모	6
〈표 Ⅰ-5〉 전 세계 지역별 통신서비스 시장규모	7
〈표 Ⅰ-6〉 전 세계 지역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규모	8
〈표 Ⅰ-7〉 전 세계 지역별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규모	9
〈표 Ⅰ-8〉 ICT 산업 성장률 추이.....	11
〈표 Ⅰ-9〉 국내 기간통신서비스의 전망	11
〈표 Ⅰ-10〉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12
〈표 Ⅰ-11〉 국내 IPTV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12
〈표 Ⅰ-12〉 ICT 산업 수출입 현황	13
〈표 Ⅱ-1〉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22
〈표 Ⅱ-2〉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23
〈표 Ⅱ-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3
〈표 Ⅲ-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32
〈표 Ⅲ-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33
〈표 Ⅲ-3〉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34
〈표 Ⅲ-4〉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인력양성 사업 개요	38
〈표 Ⅲ-5〉 공공분야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내용.....	39
〈표 Ⅲ-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내용.....	40
〈표 Ⅲ-7〉 IPTV 공부방 운영 현황	42
〈표 Ⅲ-8〉 스마트TV 관련 기기 현황	45
〈표 Ⅲ-9〉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내용 및 규모	50
〈표 Ⅲ-10〉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	51
〈표 Ⅲ-11〉 주택 유형별 수신설비 상태	53



목 차

〈표 Ⅲ-12〉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 실적	53
〈표 Ⅲ-13〉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설치 및 시범운영 지역.....	54
〈표 Ⅲ-14〉 2010년 전국 공시청시설 현황.....	56
〈표 Ⅲ-15〉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 현황	57
〈표 Ⅲ-16〉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지원 내용	60
〈표 Ⅲ-17〉 저소득층 지원대상 규모 추정	60
〈표 Ⅲ-18〉 보급형 디지털TV 공급 제품 현황 판매실적	62
〈표 Ⅲ-19〉 2010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사업 추진실적	63
〈표 Ⅲ-20〉 디지털 TV방송장비 관세 경감액	63
〈표 Ⅲ-21〉 관세 감면제도 추진경과	63
〈표 Ⅲ-22〉 방송사 디지털 전환 시설 현황	64
〈표 Ⅲ-23〉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개최 현황	66
〈표 Ⅲ-24〉 2010년도 해외로드쇼 개최 현황	68
〈표 Ⅲ-25〉 2010년도 정부컨설팅 선정과제.....	69
〈표 Ⅲ-26〉 2010년도 방송프로그램 쇼케이스 개최 현황	70
〈표 Ⅲ-27〉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71
〈표 Ⅲ-28〉 해외진출 정보제공 내용	71
〈표 Ⅲ-29〉 2008년 ~ 2010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최 실적	77
〈표 Ⅲ-30〉 2008년 ~ 2010년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개최 실적.....	79
〈표 Ⅲ-31〉 2010년도 해외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 추진현황	82
〈표 Ⅲ-32〉 2008년 ~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 사업 실적	83
〈표 Ⅲ-33〉 극빈국 방송장비 지원 실적	84
〈표 Ⅲ-34〉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88
〈표 Ⅲ-35〉 결합상품 규제방안 적용 사례.....	79
〈표 Ⅲ-36〉 SO-PP간 콘텐츠 공급 거래관계 개선방안 및 시책	91
〈표 Ⅲ-3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 기준	94
〈표 Ⅲ-38〉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 주요 경과.....	94
〈표 Ⅲ-39〉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방송	96
〈표 Ⅲ-40〉 2006 ~ 2010년 공익채널 현황	98
〈표 Ⅲ-41〉 2011년도 공익채널 방송분야 및 채널선정 결과	100

〈표 Ⅲ-42〉 2010년 ~ 2011년 중 MSO별 재허가 대상 사업자수	101
〈표 Ⅲ-43〉 공익사업 지원 예산	104
〈표 Ⅲ-4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	105
〈표 Ⅲ-4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주요 업무추진 경과	106
〈표 Ⅲ-46〉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식	107
〈표 Ⅲ-47〉 2010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심의 내용	109
〈표 Ⅲ-48〉 지역방송 편성 규제 개선 관련 의원발의 방송법 개정안	110
〈표 Ⅲ-49〉 미디어렐 관련 발의 법안별 중소방송 지원방안	110
〈표 Ⅲ-50〉 영어FM방송 설립현황	112
〈표 Ⅲ-51〉 가산제 적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시간	115
〈표 Ⅲ-52〉 '2010년 방송평가' 대상 방송사업자	116
〈표 Ⅲ-53〉 수용자 평가조사 개요	118
〈표 Ⅲ-54〉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및 수상자	120
〈표 Ⅲ-55〉 USIM 이동 현황	131
〈표 Ⅲ-56〉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간 차등 해소를 위한 법개정	135
〈표 Ⅲ-57〉 설비제공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139
〈표 Ⅲ-58〉 국내 와이브로 투자 실적	141
〈표 Ⅲ-59〉 2010년 통신사별 유·무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실적	143
〈표 Ⅲ-60〉 통신사업자별 2010년 투자 실적	143
〈표 Ⅲ-61〉 사업자별 010전환율	145
〈표 Ⅲ-62〉 01X 3G 번호이동과 01X번호 표시서비스 비교	146
〈표 Ⅲ-63〉 신규 주파수할당 주요 내용 및 선정결과	147
〈표 Ⅲ-64〉 아·태지역 무선통신 포럼(AWF) 회의 개최	149
〈표 Ⅲ-65〉 주파수 분배, 할당 및 기술기준 제·개정 건수	154
〈표 Ⅲ-66〉 주파수 지정, 사용승인 및 국제등록·조정 건수	155
〈표 Ⅲ-67〉 차세대 지상파 DMB 관련 특허 현황	157
〈표 Ⅲ-68〉 900MHz 대역의 손실보상 현황	159
〈표 Ⅲ-69〉 2010년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현황	160
〈표 Ⅲ-70〉 주파수할당제도 개선 현황	161
〈표 Ⅲ-71〉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제도 현황	161



목 차

〈표 III-72〉 2011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현황	163
〈표 III-73〉 2010년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현황	165
〈표 III-74〉 방송통신기자제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내용.....	167
〈표 III-75〉 2010년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	170
〈표 III-76〉 연도별 정보보호 사전진단 시행 현황	171
〈표 III-77〉 안전진단 수검 업체 수	172
〈표 III-78〉 ISMS 인증서 발급 추이	173
〈표 III-79〉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	173
〈표 III-80〉 SEED 및 HIGHT 국내/외 보급현황	175
〈표 III-81〉 인터넷망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구축 현황	178
〈표 III-82〉 악성코드 유포지/경유지 사고처리 건수.....	179
〈표 III-83〉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 공시 결과.....	185
〈표 III-84〉 2010년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현황	186
〈표 III-85〉 2010년 인터넷 순회강연 운영현황	186
〈표 III-86〉 2010년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현황.....	187
〈표 III-87〉 한국인터넷드림단 1기 단원 구성 현황	187
〈표 III-88〉 2010년 공익광고 송출 및 게재 내역	188
〈표 III-89〉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한 악성스팸 신고건 접수 추이	190
〈표 III-90〉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191
〈표 III-91〉 연도별 BcN 보급 실적	193
〈표 III-92〉 2010년 가입자망 기술별 가입자 수.....	193
〈표 III-93〉 2010년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내용	194
〈표 III-94〉 2010년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개요	197
〈표 III-95〉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 성장 추이	202
〈표 III-96〉 ARS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206
〈표 III-97〉 이동전화·인터넷접속 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시정 현황	212
〈표 III-98〉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조사 및 제도개선 현황	213
〈표 III-99〉 방송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개선 현황	214
〈표 III-100〉 3G 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내용	215

〈표 Ⅲ-101〉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216
〈표 Ⅲ-102〉 유·무선 데이터 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내용	216
〈표 Ⅲ-103〉 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내용	217
〈표 Ⅲ-104〉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220
〈표 Ⅲ-105〉 2010년 민원 현황	221
〈표 Ⅲ-106〉 방송 분야 금지행위 관련 방통위·공정위 합의안	223
〈표 Ⅲ-107〉 2010년도 조사관 맞춤형 전문교육 현황	224
〈표 Ⅲ-108〉 최근 3년간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내용	225
〈표 Ⅲ-109〉 방송소외계층 지원 내용	228
〈표 Ⅲ-110〉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 분석 현황	229
〈표 Ⅲ-111〉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관련 외부기관 의견 및 조치결과	230
〈표 Ⅲ-112〉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집행실적 평가	230
〈표 Ⅲ-113〉 2010년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231
〈표 Ⅲ-114〉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외부기관 의견 및 조치결과	232
〈부록 표-1〉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239
〈부록 표-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242
〈부록 표-3〉 2010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243
〈부록 표-4〉 2010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244
〈부록 표-5〉 2010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245
〈부록 표-6〉 방송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245
〈부록 표-7〉 방송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246
〈부록 표-8〉 프로그램 총괄현황	247
〈부록 표-9〉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48
〈부록 표-10〉 2010년도 주요 연월표	260
〈부록 표-11〉 영문 약어	274



목 차

그림 목 차

〈그림 Ⅰ-1〉 전 세계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8
〈그림 Ⅱ-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20
〈그림 Ⅱ-2〉 2010년 정책목표	28
〈그림 Ⅲ-1〉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36
〈그림 Ⅲ-2〉 IPTV 공공서비스 예시	42
〈그림 Ⅲ-3〉 국내 IPTV 가입자 추이.....	45
〈그림 Ⅲ-4〉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비전 및 시설	47
〈그림 Ⅲ-5〉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 사업 주체별 기능.....	49
〈그림 Ⅲ-6〉 디지털방송 전환 홈페이지(www.dtvkorea.org) 메인 화면	58
〈그림 Ⅲ-7〉 디지털 전환 인지율과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률 추이	59
〈그림 Ⅲ-8〉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108
〈그림 Ⅲ-9〉 결합상품 가입자수 추이.....	126
〈그림 Ⅲ-10〉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분기별 가계통신비 추이(명목).....	127
〈그림 Ⅲ-11〉 통신요금 감면자수 및 감면금액	129
〈그림 Ⅲ-12〉 USIM 이동 유형.....	130
〈그림 Ⅲ-13〉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개정.....	133
〈그림 Ⅲ-14〉 허가심사기준의 변화	133
〈그림 Ⅲ-15〉 국내 유무선 접속료 변화 추이.....	137
〈그림 Ⅲ-16〉 설비제공 개념도	139
〈그림 Ⅲ-17〉 신규 주파수할당에 따른 사업자별 주파수 현황	148
〈그림 Ⅲ-18〉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189
〈그림 Ⅲ-19〉 ‘한국’ 등록정책 마련 절차	201
〈그림 Ⅲ-20〉 무선인터넷 활성화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03
〈그림 Ⅲ-21〉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초기화면	210
〈그림 Ⅲ-22〉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조직	211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1. 경제성장과 2010년 방송통신 시장
2.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경제성장과 2010년 방송통신 시장

2010년 전 세계 방송통신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수요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을 나타내었다. 아직도 유럽 몇몇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신흥국 경제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글로벌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성장으로의 변화가 컸던 2010년 세계 경제동향과 방송통신 시장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계 거시경제 동향

2010년 세계경제는 실물경제에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고 그 결과 4.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非OECD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OECD 국가들도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갔다. 2009년 11월에 OECD는 2010년 세계 GDP 성장률을 3.4%로 예측했으나, 2010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GDP 성장률은 이보다 1.2%p 상승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띄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미약하여 성장세의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성장둔화 추세는 2011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둔화의 요인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생산과 소비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시장이 부진하여 경기회복의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는 2010년 상반기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아 신흥국에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선진국의 수입위축 등이 성장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1〉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10E		2011E		2012E
	2009년 11월	2010년 11월	2009년 11월	2010년 11월	2010년 11월
세계경제	3.4	4.6	3.7	4.2	4.6
OECD 국가	1.9	2.8	2.5	2.3	2.8
미국	2.5	2.7	2.8	2.2	3.1
유로	0.9	1.7	1.7	1.7	2.0
일본	1.8	3.7	2.0	1.7	1.3
중국	10.2	10.5	9.3	9.7	9.7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2009.11), (2010.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재구성

나. 세계 방송시장 동향

PricewaterhouseCoopers(2010년)에 의하면, 세계 미디어시장 규모는 2009년에 약 1조 3,2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 1조 3,570억 달러, 2014년에 1조 6,9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연평균 약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2009년에 4,63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북미지역은 4,600억 달러의 규모로 6.8% 축소되었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에는 5,58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가장 큰 시장이었던 북미 시장을

2009년부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2014년에 5,81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여 세계 전체의 약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송시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고시장은 방송시장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한편, 광고시장 전체에서 TV광고가 차지하는 부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2008년 TV광고가 세계 광고시장에서 차지한 부분은 약 36%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TV광고 시장규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 광고의 부재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9.5% 하락한 1,4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경제환경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광고시장

1) 출처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4 (PricewaterhouseCoopers, 2010)

〈표 1-2〉 세계 미디어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E	2010년F	2011년F	2012년F	2013년F	2014년F	CAGR (2010-2014)
북미	501	494	460	466	480	504	527	558	3.9%
유럽/중동 /아프리카	462	476	463	472	490	516	548	581	4.6%
아태	322	344	348	366	388	415	444	475	6.4%
남미	44	49	50	53	58	63	70	77	8.8%
합계	1,329	1,362	1,322	1,357	1,416	1,498	1,589	1,690	5.0%

E : 추정치; F : 예측치

출처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4 (PricewaterhouseCoopers, 2010), KAIT 재구성

또한 회복되고 있으며, 최근 고화질(high-definition)TV 보급 확산과 다채널 플랫폼의 확대가 TV광고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TV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에는 1,957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부분(42.8%)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TV광고시장은 크게 방송 TV 광고와 온라인 및 모바일 TV 광고로 구성된다. 2009년

〈표 1-3〉 지역별 세계 TV광고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E	2010년F	2011년F	2012년F	2013년F	2014년F	CAGR (2010-2014)
북미	72.6	72.8	64.9	69.1	70.3	75.6	77.5	83.7	5.2%
유럽/중동/ 아프리카	43.5	44.3	38.6	39.4	40.4	42.4	44.6	47.4	4.2%
아시아/ 태평양	36.4	36.8	34.5	36.5	39.2	42.2	45.7	49.2	7.4%
남미	9.5	10.3	10.5	11.3	12.0	13.1	14.1	15.3	7.9%
합계	162.0	164.2	148.6	156.3	161.9	173.3	181.9	195.7	5.7%

E : 추정치; F : 예측치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4 (PricewaterhouseCoopers, 2010), KAIT 재구성

방송 TV 광고는 1,456억 달러로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상파 TV 광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채널 TV 광고는 지상파 TV 광고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평균 7.9%의 성장을 통해 2014년에는 569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온라인 및 모바일 TV 광고는 29억 달러로 약 2%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TV 광고가 모바일 TV 광고보다 규모는 약 4배 크지만, 모바일 TV 광고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TV광고는 2010~2014년 기간동안 연평균 23.6% 성장하여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구성별 세계 TV광고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E	2010년F	2011년F	2012년F	2013년F	2014년F	CAGR (2010-2014)
방송TV광고	160.5	161.7	145.6	152.7	157.5	167.8	175.0	187.2	5.1%
지상파TV 광고	116.1	115.3	101.7	105.7	107.6	113.9	117.1	124.6	4.1%
다채널TV 광고	38.6	40.7	39.0	42.0	44.8	48.6	52.5	56.9	7.9%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	1.5	2.5	2.9	3.6	4.4	5.5	6.9	8.5	23.6%
온라인TV 광고	1.4	2.2	2.4	2.8	3.4	4.1	5.0	6.1	20.4%
모바일TV 광고	0.1	0.3	0.5	0.7	1.0	1.4	1.9	2.4	23.6%
합계	162.0	164.2	148.6	156.3	161.9	173.3	181.9	195.7	5.7%

E : 추정치; F : 예측치

자료: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4 (PricewaterhouseCoopers, 2010), KAIT 재구성

다. 세계 통신시장 동향

세계 경제가 2009년 말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10년 세계 통신시장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스마트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융합화(convergence), 개방화(open), 지능화(intelligent), 초광대역화(ultra-broadband)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1조 3,72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2010년에는 2.2% 성장한 1조 4,020억 달러로 추정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3.3% 성장하여 2014년에는 1조 5,9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유럽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계 시장의 30.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남미 지역이고, 이어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전 세계 지역별 통신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F	2012년F	2013년F	2014년F	CAGR (2010-2014)
북미	336	345	347	349	352	355	360	365	1.1%
유럽	418	424	416	413	415	421	430	439	1.5%
아시아/ 태평양	371	380	386	399	419	439	459	480	4.7%
남미	109	121	131	141	152	163	174	185	7.0%
중동/ 아프리카	75	85	92	99	107	114	121	128	6.5
합계	1,308	1,356	1,372	1,402	1,445	1,492	1,543	1,598	3.3%

E : 추정치; F :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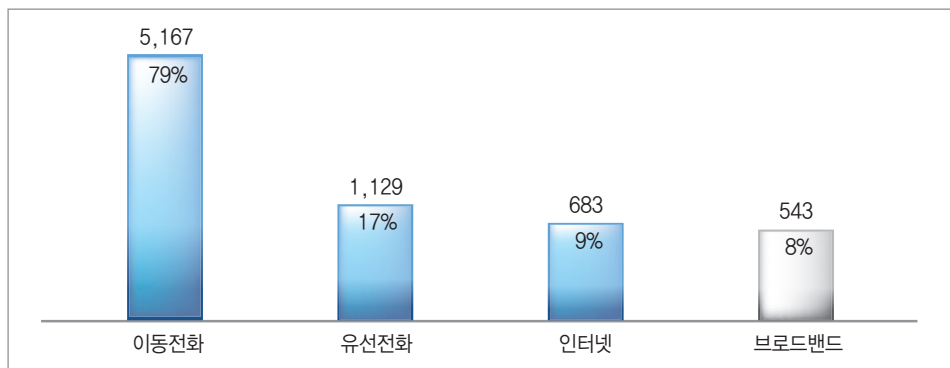
출처 :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IDATE, 2011), KAIT 재구성

2010년 통신서비스 형태별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51억 6,7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선전화, 인터넷, 브로드밴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전 세계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단위: 백만)



출처 :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IDATE, 2011)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을 살펴보면,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11년까지 성장률이 증가하나 차츰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은 7,7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0.6%의 매출액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이동통신시장은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3.8%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9,050억 달러의 매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전 세계 지역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F	2012년F	2013년F	2014년F	CAGR (2010~2014)
북미	151	161	166	170	172	174	176	178	1.2%
유럽	211	220	217	217	220	225	230	235	2.0%
아시아/ 태평양	204	213	225	238	254	267	278	286	4.7%
남미	54	62	70	79	87	95	102	109	8.4%
중동/ 아프리카	53	62	68	75	81	86	91	96	6.5%
합계	674	718	746	779	815	848	877	905	3.8%

E : 추정치; F : 예측치

출처 :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IDATE, 2011), KAIT 재구성

전 세계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으로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케이블 인터넷, DSL이나 브로드밴드 등은 인터넷 서비스 매

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져 2010~2014년 동안에는 연평균 11% 성장하여 2014년에 1,31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전 세계 지역별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F	2012년F	2013년F	2014년F	CAGR (2010-2014)
북미	69	71	74	76	79	83	86	89	4.0%
유럽	80	85	88	92	96	101	106	112	5.1%
아시아/ 태평양	67	75	80	86	95	105	117	131	11.0%
남미	14	17	19	22	25	29	33	38	15.5%
중동/ 아프리카	4	6	6	7	8	9	11	12	14.9%
합계	235	254	267	283	303	326	353	383	7.8%

E : 추정치; F : 예측치

출처 :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IDATE, 2011), KAIT 재구성

2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

2010년 국내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은 급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 방송통신 시장은 트위터, 페이스북, 아이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성장의 가속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스마트폰에서 비롯되었으며,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의 확대와 함께 무선데이터 시장 확산을 이루게 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포화 이후 성장정체에 놓여있던 통신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게 하였다. 나아가 스마트폰이 가져온 스마트 혁명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스마트워크(Smart work), M2M(Machine to Machine),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CT 서비스와 디바이스 발전을 이루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이루게 하였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 속에서 방송통신 정책은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이용자 편의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산업의 변화 및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회복에서 경제성장으로의 흐름 속에서 방송통신의 주요한 정책환경 변화는 성장동력원으로서의 방송통신 산업, 스마트 환경구축을 통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의 녹색사업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가. 성장동력원으로서의 방송통신 산업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ICT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국내 GDP의 11.1%를 차지하였고, 2006~2010년 기간동안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ICT 산업의 GDP 비중 증가는 ICT 산업 성장률이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9.5%의 성장을 이루면서 동 기간 GDP성장률인 3.8%보다 약 2.5배 가까이 상회하는 성장을 이룬 결과이다. 다만, 2009년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 말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010년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약 98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8〉 ICT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성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2010년E	평균 (2006-2010)
GDP 성장률	5.2	5.1	2.3	0.2	6.1	3.6
ICT 산업 성장률	12.6	8.7	6.8	5.3	14.0	9.5
ICT 산업의 GDP 비중	9.2	9.5	9.9	10.4	11.1	10.0

주 : ICT 산업은 한국은행에서 정의한 IT부문 범위인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반도체 및 통신기기)과 정보통신서비스(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관련서비스)를 나타낸 것임

P : 잠정치, E :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료, KAIT 재구성

2010년 국내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성장하여 3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6~2011년 기간동안 연평균 3.4%의 성장을 이루었다.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은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위축되었으나, 경기회복 후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의 증가는 요금인하 정책 및 업체간 유무선 결합 요

금제 인하로 음성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가입자 확대에 의한 무선데이터 매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2010년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액은 20.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은 유무선 대체에 따른 유선전화 매출 감소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9〉 국내 기간통신서비스의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E	CAGR (2006-2010)
기간통신서비스	32,962	34,025	35,566	37,100	37,900	39,000	3.4%
증감율	3.73%	3.22%	4.53%	4.31%	2.16%	2.90%	-
유선통신	14,135	14,099	14,224	17,500	17,200	17,100	3.9%
증감율	2.19%	-0.25%	0.89%	23.03%	-1.71%	-0.58%	-
무선통신	18,827	19,926	21,342	19,600	20,700	21,900	3.1%
증감율	4.92%	5.84%	7.11%	-8.16%	5.61%	5.80%	-

E : 추정치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재구성

2010년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약 722만 명에 달하였으며, 2011년에는 124% 증가한 약 1,618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확대에 인하여 데이터 매출이 증가한 반면, 음성 매출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데이터 매출 비중의

증대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서 모바일웹, 동영상 사용 증가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ISCO(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데이터트래픽은 연평균(2009~2014년)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0〉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E	2011년 성장률
가입자수(만명)	4,561	4,794	5,098	5,374	5.4%
- 일반 피쳐폰	4,561	4,747	4,376	3,756	-14.2%
- 스마트폰	-	47	722	1,618	124.1%
매출액(억원)	214,504	221,324	231,350	247,939	7.2%
- 음성	140,874	145,566	150,868	152,397	1.0%
- 데이터	38,832	42,320	47,960	62,788	30.9%

E : 추정치

참고 : 단말 매출은 제외함

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재구성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안정적 서비스 제공, 다양한 콘텐츠 확보, 결합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가입자가 약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매출액은 4,168억 원에 달한다. 2011

년도에도 멀티스크린 서비스 및 개방형 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가입자수는 약 480만 명, 매출액은 5,3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1〉 국내 IPTV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1년 성장률
가입자수(만명)	174.2	308.6	480	55.5%
매출액(억원)	807	4,168	5,320	27.6%

E : 추정치

자료 : IPTV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재구성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액은 세계경제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9년도에 수출액이 다소 주춤하여 1,2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은 경기회복을 통하여 1,540억 달러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1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ICT 산업 부문의 수출비중이 점차 감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ICT 수출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ICT 산업의 무역수지는 2009년도 590억 달러에서 2010년도 78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며, 전체 무역수지가 41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ICT 산업이 국가 무역수지 흑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1-12〉 ICT 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전체수출	284	325	371	422	364	466
	ICT 산업수출	108	119	130	131	121	154
	비 중	38.0%	36.6%	35.0%	31.0%	33.3%	33.0%
수입	전체수입	261	309	357	435	323	425
	ICT 산업수입	59	65	70	73	62	76
	비 중	22.6%	21.0%	19.6%	16.8%	19.2%	17.9%
전체 무역수지		23	16	15	-13	40	41
ICT 무역수지		49	54	60	58	59	78

자료: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료 재구성

나. 스마트 환경 구축을 통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

2010년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로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 소비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에 따

라 현재의 네트워크로는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 충족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콘텐츠 시장은 소비자 니즈에 부합되는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환경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로 다양한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미래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인터넷 모습은 text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진화할 것이며, 나아가 미디어넷(medianet)으로 진화할 것이다. 즉,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동영상 정보가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기기에 저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생활전반에서 ICT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 스마트 환경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BcN 보다 10배 빠른 Giga 인터넷 시범망의 구축과 50만 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 100Mbps급 광대역망 구축은 미래 수요에 대한 네트워크 고도화 성과라 할 것이다.

스마트 환경의 구축은 웹 시대에서 앱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다. 앱 혁명은 인터넷 혁명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세계 IT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발달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산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가 본격화 되면서 산업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기업은 자체 IT 자원을 구축할 필요없이 필요한 IT 자원만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IT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용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주도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다수 이용자 참여 확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이용환경에 있어서 인터넷 침해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침해대응센터 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예방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전반의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선진의를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그간 BcN 보급 확대, 농어촌 광대역망 확충, Giga 인터넷 도입, 사물지능통신망 시범구축 등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 활성화, 애플리케이션의 확산 등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접근

성을 높이고 있다.

ICT 융합과 스마트화로 인한 모바일 환경으로의 진화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치·문화집단이 출현하면서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스마트화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의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위협도 내재되어 있다. 온라인 익명성을 기반으로 개인·집단 간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표출하는 다양한 의견과 집단심리, 참여 욕구, 이슈 등은 오프라인 문화 혹은 가치와 상충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폰은 위치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에 점차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문제와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회참여의 확대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자정부 고도화, 공공부문의 스마트 서비스 도입 확대 등으로 정부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앱스토

어와 같은 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고 애플리케이션화하여 시민접촉 창구를 다양화하여 정부의 대국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약자도 쉽게 열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라.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의 녹색사업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고 고유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절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발생관리 및 에너지 절감 정책의 필요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 절약 목표 관리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별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는 소관 업무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이 가능한 10개 부처가 대상이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온실가스 절약목표인 400만 TOE를 잠재량과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각 부처에 할당하였다. 그 결과 방송통신분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2010년 에너지절약 목표할당량인 12,000TOE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2011년은 2010년의 30%를 초과하는 15,700TOE를 감축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경제적 활동 이외의 사회발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자원봉사, 기부금, 공익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제대로 하면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실질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공헌을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IC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에 이르는 만큼 방송통신 분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책임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실용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부합된다.

녹색성장은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형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생태공간의 조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제적 기

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녹색성장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녹색사업은 ICT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Green by ICT를 활용한 디바이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도움으로써 개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가령 모바일 기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에너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되고, 이를 위해 휴대용 무선통신망 포터블 기기를 통해 Wi-Fi 신호를 전기에너지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ICT를 통해 버려지는 에너지의 재발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녹색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리사이클링, 재생에너지 확대 등 ICT 활용의 증가가 필요하다. ICT를 통해 에너지산업, 폐기물 관리 및 기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게 하고, ICT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향상 등 스마트화를 병행한다면 녹색사업은 신성장동력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창조의 핵이 될 것이다. 치창조의 핵이 될 것이다.

Ⅱ.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1. 일반현황
2. 2009년 주요 성과
3. 2010년 정책목표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²⁾,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제기구의 특성에 맞춰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부록〉 참조).

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15개로서 다음과 같다(소관 법률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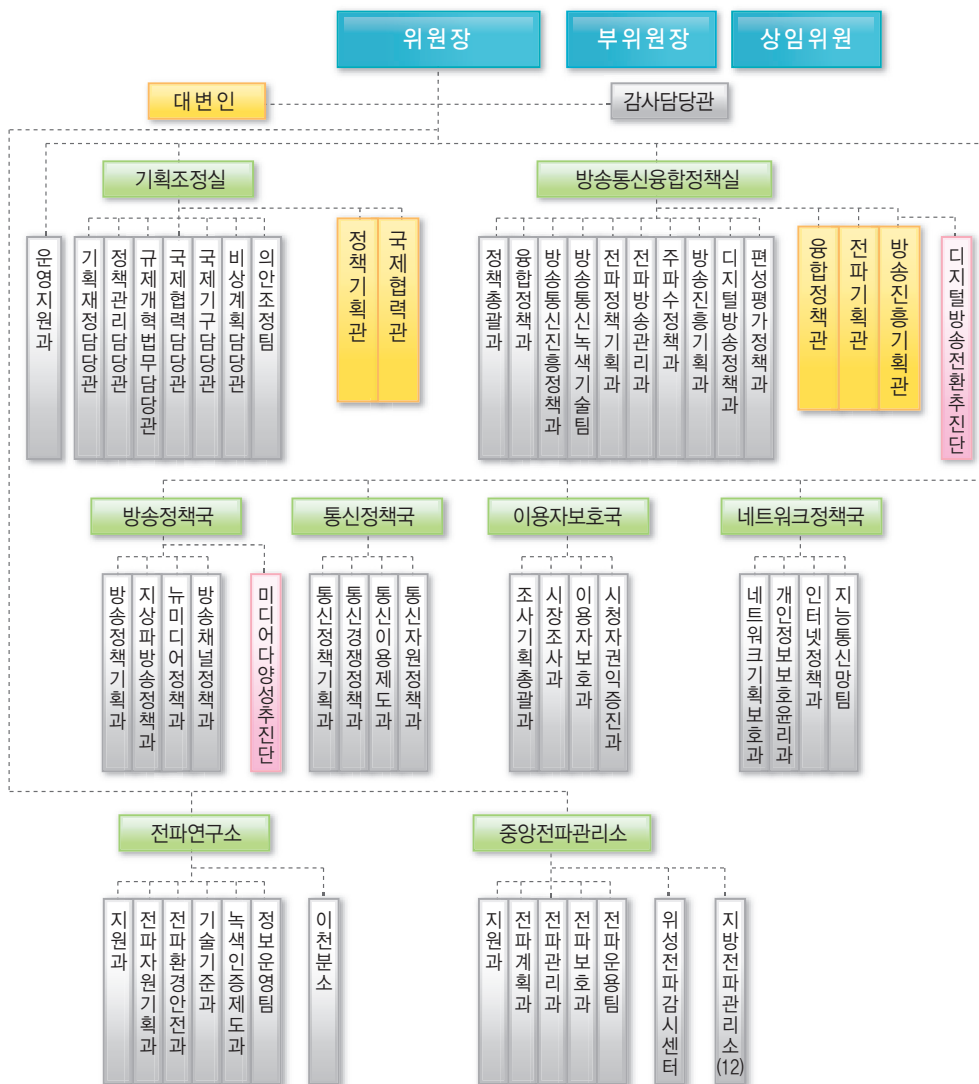
- 근거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융합분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2개
- 방송분야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 통신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 전파분야 : 전파법 1개

2) 3인의 상임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2인은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위원회는 2010년 5월 미래인터넷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하여 위원회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
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일부 직제를 개정
하였다.

〈그림 II-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 ■ 색은 임시기구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의 정보전략팀을 폐지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정책관리담당관실로 변경하는 등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개편하였다.

제2의 인터넷 붐 조성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인터넷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네트워크정책국에 지능통신망을 신설하였다. 방송통신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위원회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의 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정된 위원회 사무조직은 2실 4국 6관 32과 3팀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세부조직은

그림과 같다(부서별 업무 분장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위원회의 2010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983억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256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5억 원, 기금 2,662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방송분야) 2,662억 원, 통신분야 3,321억 원이다. 또한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907억 원, 기본경비 159억 원, 주요사업비 4,286억 원, 내부거래 500억 원, 보전지출 131억 원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역은 표와 같다.

〈표 II-1〉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	증감률
총계 <예산+기금>		5,836	5,983	147	2.5%
재원별	□ 예 산	2,923	3,321	398	13.6%
	• 일반회계	2,912	3,256	344	11.8%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	65	54	502.6%
	□ 기금	2,913	2,662	△251	△8.6%
	• 방송발전기금	2,913	2,662	△251	△8.6%
	※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방통위 소관	2,960	3,158	198	6.7%
분야별	□ 통신분야	3,130	3,321	398	13.6%
	□ 문화 및 관광분야	2,983	2,662	△251	△8.6%
기능별	□ 인건비	896	907	11	1.3%
	□ 기본경비	167	159	△8	△4.8%
	□ 주요사업비	3,862	4,286	701	19.6%
	• 방송통신 융합 촉진과 디지털 전환	1,150	1,132	132	13.2%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	916	984	94	10.6%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	589	948	359	61.0%
	• 이용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257	231	△26	△10.1%
	• 전파방송산업 여건 조성 and 해외진출 지원	694	719	126	21.3%
	• 기타 행정 지원	256	272	16	6.3%
	□ 내부거래(회계간·기금간 전출금 등)	300	500	200	66.7%
	□ 보전지출(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	887	131	△756	△85.2%

주 1. 타 부처 소관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사업 규모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 소관) : 2009년 2,960억원 ⇒ 2010년 3,158억원(연구개발, 표준화 등)

주 2. 증감, 증감률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대한 증감 및 증감률임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별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 근거	설립 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공석)	전파법 제66조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정부 수탁 업무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1년 3월 21일 기준

〈표 II-3〉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 근거	설립 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김인규	방송법 제43조 1항	국가기간방송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

2 2009년 주요 성과

위원회의 2010년도 주요 전략은 방송통신 융합 기반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한 2009년 정책목표 및 성과를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가 2009년에 추진했던 주요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와 차질없는 디지털방송 전환

IPTV 가입자 및 콘텐츠 사업자 확대 등으로 IPTV 산업 시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IPTV 2.0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표준화 대상목록을 선정하여 IPTV 자막방송 등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IPTV의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국방, 교육, 보건의료, 관광, 민원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확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방부문에서는 8개 대대 230개소에 국방 IPTV시범망을 구축하였고 교육부문은 22개교에 IPTV 라이브 교육방송 시범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09년 말 기준 전국 72개소에 IPTV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IPTV 이용요금에 고객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 경쟁환경 조성,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2009.6.3).

국민에게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해 「디지털방송국 구축 의무 등 특별법」 개정(2009.4.), 디지털전환 기본계획 수립(2009.6.) 및 시행계획(2009.12.) 수립, 디지털전환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2009.12.),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계획 수립(2009.12.) 등 법제도 및 정책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강화로 2012년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2008년 34.9% → 2009년 55.8%)와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보급률(2008년 38.7% → 2009년 55.1%)이 향상되는 등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나. 이용자 이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초당 과금방식 도입(2010.3.),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20 ~ 27%),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15.5 ~ 23%), 장기가입자 요금인하 등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2009.9.)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결합상품 요금심사 면제기준 확대로 할인율이 높은 유무선 결합상품과 정액형 결합상품, 전국통일요금제, FMC 서비스 등과 같은 결합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 폭 35% → 50%) 및 차상위 계층(감면폭 35%)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요금감면 신청 및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완료될 수 있는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 및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번호이동 소요 기간이 단축(5일 → 1일)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었다.

알선제도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규정 개정(2009.2.)과 ‘휴면이동전화(개통 후 장기미사용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시행(2009.12.)하였고, 민원처리지침 제정과 민원처리시스템 개선(2009.3.) 등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 향상(89.3% → 99.8%)되는 등 통신이용자의 권

익을 향상시켰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50억 원을 지원하였다.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야구(WBC) 등 국민관심행사 추가 고시(2009.11.)로 중계권에 대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의 방송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도권, 부산·광주권에서 영어FM 방송을 개시하였다.

3DTV와 같은 대용량·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Giga인터넷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2009.4.), Giga인터넷 선도망 구축과 3D VoD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700여 가구에 시범 제공(2009.10.)하였고, 공공분야 ICT 융합 사업과 연계한 사물통신 신규 인프라 시범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IPTV, 인터넷 전화 등 신규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농어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억 원 규모의 망 구축비용 저리용자(2009.6.), LG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따른 BcN 구축 의무화(2009.12.), 50가구 미만

격오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확보(2009.12.) 등 다양한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7.7 DDoS 대란을 계기로 IT강국에 상응하는 보안체계 구축 및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이버 위기 종합대책’을 수립(2009.9.)하였으며,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예방적 대응으로 문자 1일 발송한도 제한(1,000건 → 500건) 및 악성스파머 및 저 신용자에 대한 이동전화 개통 수 제한 등을 통하여 이동전화 및 이메일 스팸을 감소하였다.

다. 방송통신시장 경쟁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8.12.18)하였고, ‘방송통신융합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발굴(2009.1.13)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방송사업에 대한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 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2009.7.)하였고 가상·간접광고 등 신유형 광고를 허용하여 광고시장 수요를 확대하였다.

공적기구(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2009.7.)함으로써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사전심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시 전체 방송 수신료의 25%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SO가 PP(Program Provider)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값을 지불하도록 하여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주제작사는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지상파방송 외주제작비는 전년대비 127억 증가하는 등 외주제작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내용, 편성, 운영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방송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통신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

판매(MVNO) 정책을 마련하여 통신 설비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기기(도난방지 태그 등)에 대한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실내 음영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소출력 중계기의 적용범위를 자가망TRS용 무선기기로 확대하는 등 출력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을 개선하였다.

950MHz대역에서 22개 방송사가 운영중인 FM방송중계용 무선국 48국에 대해 주파수 재배치 계획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과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였다.

라. 방송통신 Korea의 위상을 높이는 해외 진출 추진정책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Friendly Digital Korea)’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 로드쇼, 정부컨설팅 및 방송콘텐츠 해외 쇼케이스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였다.

ITU,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OECD 5명, ITU 14명, APT 4명 등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송통신 국제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방송통신장관회의,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미래 비전 논의, 정책 방향 제시 등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국형 ICT 정책 전파를 위한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활동과 전문가 초청연수를 실시하였고 방송의 해외진출과 한류시장 확대를 위해 극빈국을 대상으로 방송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3 2010년 정책목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일류 방송통신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겉에 있듯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향유케 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를 조직의 임무로 설정하고,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

류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의 산업·경제적 역할 증대, 통신시장 경쟁 및 효율성 증대,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위협 증가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의 확산

과 촉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이용자 편의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 4가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II-2〉 2010년 정책목표



Ⅲ.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제1절 |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1. 방송통신 융합 기반 확충
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4.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5. 방송통신 에너지절감 시책 추진

제2절 |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 정착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2. 방송의 공익성 강화
3. 방송의 다양성 제고
4.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5. 방송의 품질 향상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제3절 | 이용자 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이용 환경 조성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개선 추진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제4절 |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4. 시청자 복지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Ⅲ.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제 1 절 |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1 방송통신 융합 기반 확충

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체계 개선

최근 전송수단의 디지털화·광대역화 등으로 방송통신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되며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케이블TV, IPTV, 스마트TV 등 다양한 융합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미디어 규제도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³⁾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방송통신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2010년에는 방송통신 발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 재난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체계를 단일화하여 2011년부터는 방송통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법」은 2008년 8월 초안이 마련된 이후 1년 반에 걸친 공청회와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2010년 9

3) 수평적 규제 :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영역구분 없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송망(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 등 동일한 기능이나 계층별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체계

월부터 동법이 시행되었다. 「기본법」은 방송 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공공성 및 이용자 편익 증대 등 기본원칙을 규정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시책과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
제3장 방송통신 진흥	급변하는 융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설정·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6장 방송통신 재난관리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

※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원회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전담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 방송통신 표준화,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다.

〈표 Ⅲ-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회 위원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 심의회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 (방송사 분담금) 분담금 징수율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분담금 경감) 방송사의 결손금이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이상인 경우 50%, 자본금의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0% 경감 • (지상파방송사 분담금 징수) 2011년부터 분담금 징수체계를 KOBACO 원천징수에서 KCA에 위탁하여 사후 징수방식으로 변경
전담기관 지정 대상 절차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기반조성, 방송통신 연구·개발,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방통위 의결로 지정
방송통신 표준화	방송통신표준화 대상을 방송통신 기술·설비 및 기자재·망·서비스 등으로 정함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지상파 텔레비전·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게 부과
기 타	방송통신기술지도,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조항 등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서 이관

나. 기금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

민영 미디어랩 도입 추진 등 방송통신 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금재원 관리체계의 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의 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징수·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송사업자별 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3〉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구분			징수율(%)		비고
매체	방송사업자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지상파	KBS · EBS	방송광고 매출액	3.17	현행	○ 현행 유지
	MBC · SBS		4.75		
	지역 MBC		3.37	3.00	○ 10% 수준 인하
	지역 민방		3.37	3.00	
	라디오방송		2.87	2.50	
지상파 DMB	KBS	방송광고 매출액	－	유예	○ 현행 유지
	MBC · SBS		－	유예	
	수도권 (단독 3사)		－	유예	
	지역DMB		－	유예	
종합 유선	(사업자수) 2	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 원 이하	1.00	현행	○ 현행 유지
	8	25억 원 ~ 50억 원	1.30		
	24	50억 원 ~ 100억 원	1.80		
	29	100억 원 ~ 200억 원	2.30		
	37	200억 원 초과	2.80		
위성	일반위성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	현행	○ 현행 유지
	위성DMB		0.00		
홈쇼핑	텔레비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12.00	13.00	○ 사업규모 · 수익성을 반영한 인상안 검토
	데이터		10.00	현행	○ 현행 유지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 매출액	－	－	○ 2011년 검토
종합편성채널			－	－	○ 2011년 검토
IPTV		방송서비스 매출액	－	－	○ 2011년 검토

2011년부터 홈쇼핑 채널(텔레비전)은 사업 규모와 수익성을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 12%에서 13%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역지상파방송의 경우 지역MBC·지역민방은 3.37%에서 3.0%로, 지상파라디오 방송은 2.87%에서 2.5%로 각각 10%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방송이나 라디오방송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보고 10% 수준의 인하를 모색한 결과이다.

KBS·EBS·MBC·SBS 등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과 DMB 방송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 IPTV,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분담금 징수율은 2011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조항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과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제정안에는 지출사업의 이월, 결손처분 사유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과 집행 잔액 반납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방송통신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융합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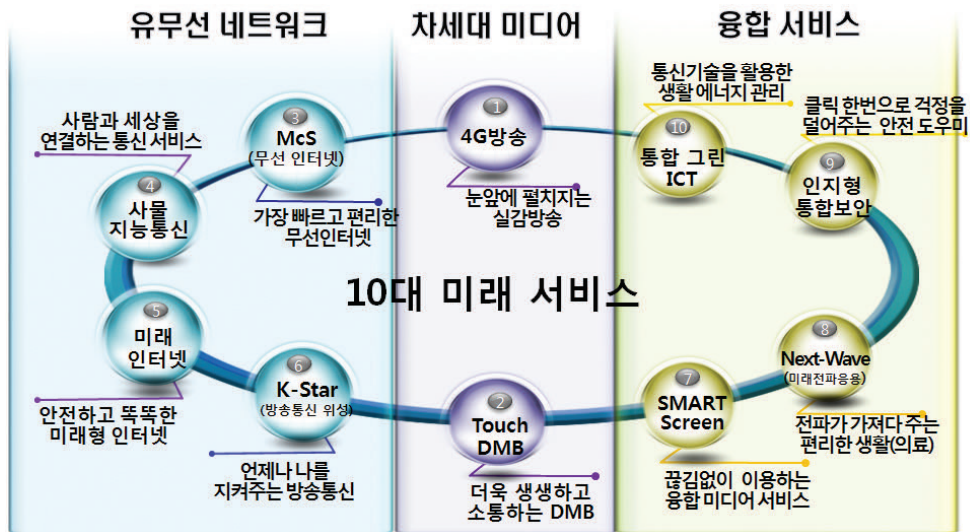
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을 2010년 5월 7일 발표했다. 이 미래서비스 전략은 방송통신 분야의 PM(Project Manager)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약 6개월의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가 단말기 - 장비 - 콘텐츠 등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이므로 10대 미래 유망 서비스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GDP 4만 불 시대를 견인할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일부 시스템, 제품 개발 등 단품위주의 하드웨어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ICT 육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미래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선 유·무선 인프라를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혁신적인 미래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선단적인 해

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미래서비스는 ICT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하여 일자리, 에너지, 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II-1〉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이러한 10대 미래서비스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R&D 체계의 개편도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개념 창조능력이 요구되는 미래기술 R&D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 R&D 체계(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위주의 평가 시스

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장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공개 평가제도 등 연구의 창의성을 극대화해 혁신적인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도 확대하여 글로벌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방송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은 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 분야 최초의 R&D 종합계획이며, 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는 2010년 3월 제정된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10대 미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애플, 구글 등이 주도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장으로 기기 중심의 국내 ICT 성장 패러다임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은 기술혁신, 서비스창출, 기기·S/W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재정립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 수립 외에도 방송통신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2010년 6월에는 4G 시장선점을 위해 WiBro와 LTE 시스템의 표준안을 ITU-R에 제안하였고, 국제표준회의(ITU-WP5D) 국제표준평가 절차를 통과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 국산화 통신위성인 천리안의 개발 완료 및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순수 국산기술로 통신위성의 설계·제작·시험 등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정지궤도 통신위

성을 개발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기존 T-DMB 대비 최대 2배 전송용량 증대가 가능한 Advanced T-DMB 기술의 국내표준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TTA 20핀 휴대폰 충전단자 표준안이 ITU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육성·지원, 국제표준화 기관 간 전략적 제휴 및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ITU-T SG5 WP3(기후변화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를 주도하여 15건의 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9월 예정 SG5 국제회의 한국유치 협의, 그린 IDC, 온실가스감축량 측정법 등 기고서 6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ITU-T의 그린 ICT 의장단에 다수의 전문가가 의장 및 부의장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2010년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은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과 방송통신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PD, 방송작가, 방송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유망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

한 현장인력 역량 고도화 및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업인력 재교육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위원회는 방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부터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기술인 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현업 방송인들을 위해 기획, 제작, 촬영, 편집, 유통, 마케팅 등 방송 전 분야와 3D, 스마트 TV 등의 최신 트렌드 및 선진기술을 교육하여 방송인들이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사업자와 현업 종사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해왔다. 특히, 위원회의 현업 방송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 PD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PD저널리즘을 확립할 수 있는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PD들의 제작능력을 향상시켰고, 방송기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DTV시스템이론, Green방송기술과정 등의 선진기술 실습교육을 통해 방송의 안정적 디지털 전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도에도 엔지니어와 PD, 작가 교육 외에도 방송기자, 아나운서, 성우 등의 재교육까지 확대하여 방송분야 전 업종을 아우르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악한 지역방송 및 비지상파 중소방송사의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미디어문화 정착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술인력 양성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의 지원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가입자망 고도화에 필요한 방송통신망 설비 우수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방송기술인과 디지털 케이블TV 기술인력, 인터넷 사용 등을 교육할 전문강사 등 전파방송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2010년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과 주요내용, 지원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4〉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인력양성 사업 개요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 수행기관	지원대상
방송영상 전문교육 지원	• 방송 전반의 공통교육 및 업종별 맞춤교육	한국전파진흥협회	현업 방송인
전파방송 기술인력 양성	• 디지털방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방송기술인에 대한 전환교육 지원 • 대학정책연구센터의 석·박사급 양성	한국방송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업 방송기술인 예비인력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인력양성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가입자망 고도화에 필요한 방송통신망 설비 시공분야 우수인력 양성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예비인력

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가. 신규 융합서비스 발굴

IPTV, 디지털케이블TV 등 기존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이 각종 서비스 산업과 접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국민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0년 1월 28일 제1차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방송통신 업계와 각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방송통

신 융합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융합서비스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의 방송·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어 2010년 5월 28일에는 ‘녹색방송통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전략에서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상품화 하고, 정부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발굴된 공공분야별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과제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5〉 공공분야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내용

추진 분야		주요 추진 내용
분야별 융합 서비스 활성화	교육	○ 학교망을 현재보다 최대10배(약 500Mbps) 빠른 수준으로 증속(2015년까지) 하고, 방과후 학교 중심의 멀티미디어 교육서비스를 지원 ○ 교사·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직거래장터 구축을 추진(EBS 등)
	공공행정	○ 방문·상담 처리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화상상담 시범서비스 실시 ○ 등산로, 생활법률 등 생활 공공정보들을 IPTV·스마트폰 등으로 제공 ○ 케이블방송의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지원
	교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단위로 확산
	의료	○ 원격 화상을 이용한 의료상담 서비스
	농수산·소상공	○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정보 등을 IPTV·DCA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금융	○ TV를 이용한 Home-ATM 서비스 확산 추진(각종 조회·이체, 공과금 납부 등) ○ 원격으로 화상상담 등이 가능한 무인 금융지점 도입 추진

위원회는 이러한 공공분야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사업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4일 산림, 교통, 민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기관·서비스업체·중소 솔루션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III-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주요 서비스 내용
숲의 On 산림휴양등산 정보 서비스	○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이용한 등산로 안내(목적지 방향, 거리, 소요시간 등) ○ IPTV, 스마트폰으로 산의 역사, 주변 숙박시설, 등산로 거리 및 소요시간 안내
다매체 이동 식품정보 서비스	○ DTV, DCATV에서 제공하는 디지털데이터방송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요리법, 영양성분 등 식품정보 제공
영상기반 농업 경영컨설팅 서비스	○ 농업인에게 경영 및 식물재배 방법 등을 IPTV, 스마트폰, PC를 이용하여 전문가와 영상으로 상담 ○ 병충해 예방, 귀농교육 등의 정보 제공
교육콘텐츠 오픈환경 구현	○ 5,000여개의 교육콘텐츠 및 교사, 학생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오픈환경 마련
SNS 고속도로 교통정보 서비스	○ 스마트폰의 SNS 기능으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통상황 제공(동영상, 사진, 텍스트) ○ 고속도로 내 500개 CCTV 영상, 구간 속도, 체증구간 우회도로 등을 제공
서울시 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 민원발급 및 상담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서비스
다매체 기반의 법률 영상상담 서비스	○ IPTV,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 전문직원)와 영상으로 법률상담 ○ 동영상으로 법률상담사례, 법률상식 등 제공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수요조사(2010.2.16 ~ 3.5) 및 과제공모(2010.5.25 ~ 6.9)

위원회는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10일 방송·통신 업계, 융합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분야별 서비스기관 등 총 19개 기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4차 협의회

에서는 산림청·한국식품연구원·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IPTV교육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이 추진해 온 방송·통신과 타 분야와 연계한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과제들은 2010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0년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과거 단일 매체를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다매체에 연동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융합서비스 확산에 따라 생활의 큰 변화와 혁신이 기대된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장 환경 조성과 민간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며,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타서비스 분야에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 IPTV의 견실한 성장 지원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는 2008년 9월 IPTV 제공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08년 11월 상용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그동안 위원회는 IPTV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0년에는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관련 정부부처와 공동 협력으로 교육·국방 등 공공 분야의 수요 창출을 통한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을 추진하였다. 교육분야의 경우 2009년 학교망 고도화 완료(6월~11월)와 IPTV활용 교육서비스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 IPTV 서비스를 보급하여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38,755개 학급(1개 학교당 1~3개 학급)에 제공되었다. 국방분야의 경우 2009년 230여 개소에 영상면회, CUG (Closed User Group), 교육 및 자기계발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2010년 6월부터 전방부대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29,138개소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2010년에는 IPTV 관련 협회, 사업자, 지자체가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에 IPTV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공부방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 전국에서 913개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 IPTV 공공서비스 예시



[국방부 CUG]



[육군 CUG]



[해군 CUG]



[공군 CUG]

〈표 III-7〉 IPTV 공부방 운영 현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합계
30	108	7	20	10	7	582	19	22	14	33	35	10	1	5	10	913

※ 201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IPTV 서비스는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200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를 이루며 2010년 4월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서비스 2년 만에 300만 명(2010.12.17 기준)을 돌파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실시간 IPTV 가입자는 309만 명이며, Pre-IPTV를 포함한 총가입자는 366만 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각 업체별로 가입자 수는 KT가 약 173만 명, SK브로드밴드는 약 74만 명, LG U+는 약 62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

내 IPTV 가입자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IPTV 가입자 300만 명은 국내 디지털매체의 약 30% 수준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다른 매체가 가입자 300만 명을 넘어서는데 5~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난 IPTV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우 300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데 2005년 2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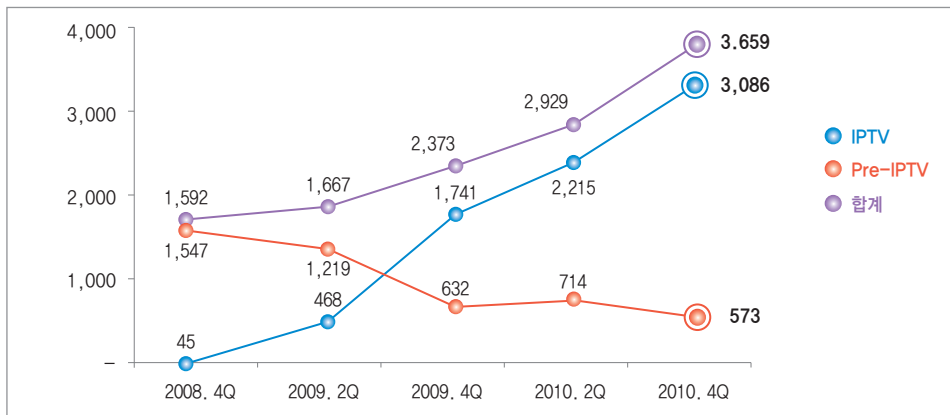
2010년 5월까지 약 5년이 걸렸고, 2002년 시작된 위성방송은 아직 283만 가입자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방송산업실태조사(2010년)에 따르면 평균 5%의 저성장세를 보이던

유료방송시장은 IPTV가 시장에 진입한 2009년 이후 전년 대비 13.6% 성장을 기록했다.

IPTV 콘텐츠는 3사가 지상파 방송, 보도,

〈그림 Ⅲ-3〉 국내 IPTV 가입자 추이

(단위 : 천명)



스포츠 등 핵심채널을 포함 88 ~ 120개의 실시간 채널을 송출 중이며, 2 ~ 8만 여편의 VoD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신고·등록·승인된 IPTV 콘텐츠 사업자도 300개 업체에 달한다. 특히 2010년부터는 IPTV의 장점을 살린 멀티앵글서비스, 3D 전용관 신설 등을 TV에 구현시키며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IPTV는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매체간 상품 결합 및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하며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5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IPTV는 47만 명이 증가하여 약 85%를 차지하였다. IPTV 도입 이후 기존 유료방송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위성방송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 CJ의 Tiving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IPTV 사업자는 2010년 G20 정상회의시 각국 정상 및 수행단에 휴대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WiBro 기반의 무선 IPTV 서비

스를 제공하여 방송통신 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다. IPTV를 통해 참가국의 방송서비스, G20행사 소식, 한국 홍보 동영상과 영화 등의 IPTV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IPTV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허가 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콘텐츠 등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지속 유도하여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둘째, 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동으로 광고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시청률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서비스 및 단말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IPTV 특성에 맞는 킬러콘텐츠를 개발하고 멀티앵글서비스, 클리어스킨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교통, 민원, 교육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확대와 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한 IPTV 공부방 확산 등 공공서비스 추가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 스마트TV 환경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의 확산과 함께 스마트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TV는 일방향 실시간방송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TV에 인터넷 및 PC기능이 추가된 다기능 양방향 TV를 의미한다. 거실 내 TV에 스마트화 바람이 불면서 이를 지원하는 TV일체형과 셋톱박스형의 다양한 스마트TV 관련 기기가 출시되면서 국내외 업체 간 스마트TV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셋톱박스형 애플TV 시제품이 2010년 9월에 출시된데 이어, TV일체형 구글TV가 출시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TV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LG 등도 편리한 UI·자체 플랫폼·TV전용 앱스토어를 앞세운 스마트TV를 국내외에 판매 중이다. 스마트TV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기술발전과 사회적 수용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계속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8〉 스마트TV 관련 기기 현황

셋톱박스형		TV 일체형	
실시간 방송연계형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전용		
	복합기기형		단독기기형
 (1999.3월 출시, 방송녹화겸용 셋톱박스)	 XBOX 360 (누적판매 4,5천만대)	 (2010.9월 출시, 누적판매 백만대)	 (2010.10월 출시)
 (2007.12월) (영국 지상파 플랫폼)	 PlayStation 3 (누적판매 4,2천만대)	 (누적판매 백만대)	 (5백만대 판매 추정)
	 (2010.10월 출시)	 (2010.10월 출시)	 (2011.1월 출시)

스마트TV가 주목받는 이유는 차별적인 시청자 경험 제공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 TV 시청문화와 방송시장의 경쟁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형성에 대한 기대감, 시청자의 전통적 TV시청 형태의 변화, IT 선도기업간 경쟁 및 혁신 노력 등이 향후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 전체, 나아가 콘텐츠와 전송망을

포함한 하나의 큰 생태계 차원에서 이를 분석·검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으로 촉발된 미디어 시장의 변혁이 무선통신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미디어 빅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기,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정부·민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기기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제

조 기업이 평판 패널 등 TV 핵심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글로벌/로컬 콘텐츠 공급사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어 스마트TV 시대에서도 계속 선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광인터넷 등의 보급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도래할 3D 방송, 초고화질 HD방송 등 고품질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플랫폼과 콘텐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분야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분야로 우리의 경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킬러 콘텐츠의 가치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제작 분야는 우리사회 전반의 창의력, 독창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와 제작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유통·배급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등 유통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2010년 9월 스마트TV전략팀을 발족하고, 스마트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구상에 착수하였다.

급변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민관포럼 등을 통해 관련업체간 상생협력의 개방적 혁신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미디어 이용행태 및 시장영향 분석 및 규제체계의 재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는 2009년 6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2010년에는 특히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수 이루어졌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건립 사업 추진,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 기본계획안 수립,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건립

최근 뉴미디어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방송콘텐츠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 콘텐츠 제작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하여 콘텐츠의 제작, 유통 등과 연관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콘텐츠 제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이 방송콘텐츠 제작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4〉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비전 및 시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방송콘텐츠의 제작, 송출,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스튜디오, 편집실, 송출실, 업무시설 등)이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한류월드에 부지 10,702m², 연면적 55,952m², 지상 18층, 지하4층의 규모로 조

성되며, 스튜디오(대형 500평, 중형 310평, 소형 150평 4개), 중계차 1대, 편집실 16실로 구성된다. 이 사업에는 3년간(2010~2012년) 2,276억 원(방통위 1,104억, 문화부 1,172억)이 투입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등이 주요 이용대상이다.

2010년 2월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

의를 통해 일관입찰(틱키) 방식으로 확정하고, 방통위와 문화부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다. 3월에는 조달청을 통해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7월에는 토지공급을 위해 위원회와 경기도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6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방송인프라(장비) 구축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방송인프라(장비) 구축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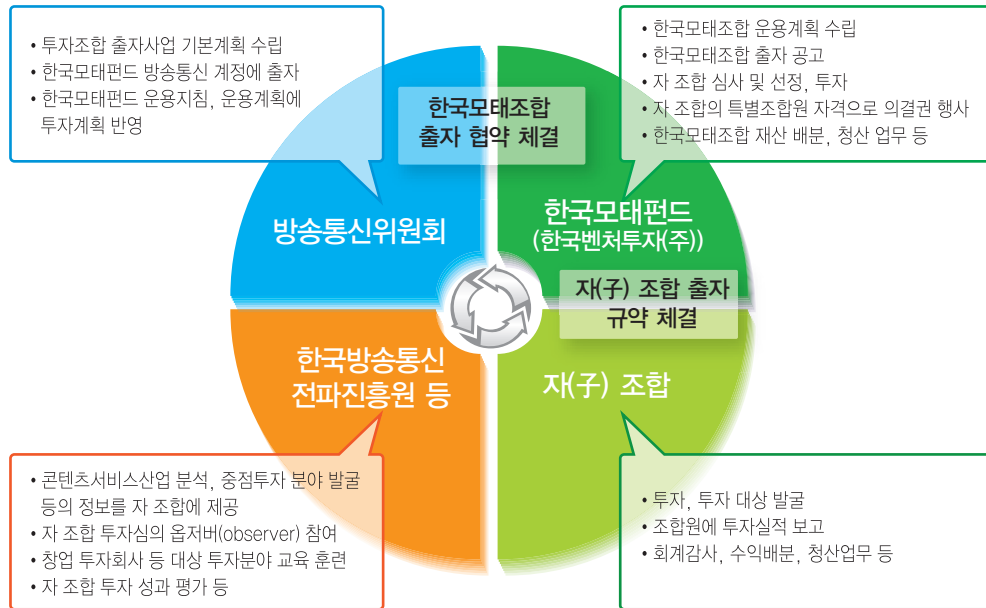
2012년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2013년 디지털방송시대의 개막에 맞춰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과 3D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으로, 시청자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방송통신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 기본계획안 수립

위원회는 방송콘텐츠 부문에 정부 출자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10년 100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드라마 중심의 방송콘텐츠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큐멘터리 등 비드라마 부문의 양방향콘텐츠를 발굴·지원하고, 방송콘텐츠 구현 기술 및 인프라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에 방송통신계정을 신설하고 방송콘텐츠 관련 자(子) 조합에 재투자하였다. 앞으로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을 통해 차세대 유망 방송콘텐츠 생산을 촉진하고 민간의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5〉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 사업 주체별 기능



3)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추진

위원회는 2010년 201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격의 공익적 프로그램, 매체 융합 환경에 적합한 창의적 프로그램 등을 제작·보급하여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사업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0년도에는 한국방송공사의 〈푸른지구〉의 마지막 유산 - 콩고 열대림, 문화방송의 창사49주년 특별기획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에스비에스의 창사20주년 특집다큐 〈최후의 툰드라〉, 한국에이치디방송의 〈대륙의 혼, 중국〉 등 109편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다.

〈표 III-9〉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내용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2009년	2010년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20,540	20,100
- 방송사업자 우수콘텐츠	9,040	9,000
- 공공·공익적 콘텐츠	4,000	3,000
- 수출 전략형 글로벌콘텐츠	-	3,000
- 창의·실용적 융합콘텐츠	6,500	4,000
- 양방향 다국어 자막서비스	1,000	1,100
- 양방향 구인구직프로그램	2,000	-

방송사업자 우수콘텐츠 제작지원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방송사업자의 고품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중앙지상파 3사 쿼터 제한 등을 통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공공·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 자율적인 공급이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으로, 환경·에너지, 저출산, 다문화, 국제협력 등의 공공·공익적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출 전략형 글로벌콘텐츠 제작지원은 글로벌 마켓 공략을 위한 대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충분한 제작기간 부여 차원에서 2년 연속으로 지원하였다. 창의·실용적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서 IPTV, 디지털케이블 등 양방향 매

체에 기반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양방향 다국어 자막서비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한 자막서비스 지원으로 2009년 영어자막 지원에서 2010년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0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의 특성으로는 우선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마켓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전략형 글로벌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신설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방송영상 제작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단순 제작비 지원과는 달리 기획, 제작, 유통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3D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심사 시 가

점을 부여하였으며 지원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도 강화하였다.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가. 디지털 방송 전환 활성화

1)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시범사업 실시

위원회는 시청자, 방송사 등이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04시로

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지역인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의 종료일시도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9월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지역에 디지털 컨버터(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무상제공, 보급형 디지털 TV 구매 보조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여 시범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울진군이 2010년 9월 1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강진, 단양, 제주 지역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차례로 시작되었다.

〈표 Ⅲ-10〉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종료일시	2010.9.1, 14시	2010.10.6, 14시	2010.11.3, 14시	2011.6.29, 14시
종료대상 방송(보조)국명	KBS현종산 제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군동 제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금수산 제2TV 방송보조국 등 10개	KBS제주 제2TV 방송국 등 11개

※ 다만, 시범사업지역의 방송(보조)국 중 KBS-1TV는 미전환자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연장 후 종료

2)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회는 12월 10일 제2기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위원을 위촉하였다. 제2기 추진위는 방송통신위원장(당연직)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차관(당연직) 및 방송사·가전업체·소비자단체 대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추진위원회 안건을 사전검토·조정하는 제2기 실무위는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급, 민간업체 임원급, 변호사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제2기 추진위와 실무위는 앞으로 2년 동안(2010.12.4 ~ 2012.12.3)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1기 추진위와 실무위(2008.12.4 ~ 2010.12.3)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을 심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제2기는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예정된 본격적인 전국

디지털 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1) 공공임대주택 등 공동주택 수신설비 개선사업

‘공시청 설비’란 지상파 방송을 공동의 안테나로 수신하여 각 세대의 벽면 단자까지 분배해 주는 설비로써 실외 안테나, 장치함, 헤드엔드 시스템, 세대 단자함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공시청 설비를 통하여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후하거나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이러한 공동 수신설비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노후 방치되어 지상파 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Ⅲ-11〉 주택 유형별 수신설비 상태

구 분			양호	노후/방치/훼손	계
주택 유형	아파트	사례수	318	339	657
		%	48.4	51.6	100.0
	연립/기타 주택	사례수	48	539	587
		%	8.2	91.8	100.0
	단독주택	사례수	158	1,098	1,256
		%	12.6	87.4	100.0

※ 출처 : 2008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실태조사 보고서(DTV Korea.)

따라서 2012년 디지털전환 이후에도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디지털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공시청설비 개선을 유도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

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총 61개 단지의 노후화된 TV 수신 설비를 디지털공시청 설비로 개선하였다.

〈표 Ⅲ-12〉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 실적

구 분	지 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3개 단지)	경북	대구(7개단지), 구미(1개단지), 김천(1개단지), 상주(1개단지), 경주(1개단지)
	경남	통영(1개단지), 마산(1개단지)
	부산	부산(4개단지)
	전남	광주(2개단지), 목포(2개단지)
	강원	춘천(2개단지)
SH공사(38개 단지)	서울	서울(38개단지)
합 계	6개 지역 (총 61개 단지)	

위원회는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을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추진 현황을 수시 점검하였다.

또한 위원회, 방송사,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간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공동사업 협약’(2010.4.1)을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 결과, 경제적 여건으로 디지털전환 환경 구축이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총 61개 단지 40,518세대 거주자가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에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시청설비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시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2011년에도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구축 및 시범운영

현재 난시청으로 인한 KBS 수신료 면제 가구는 70.8만(2009년 12월말) 가구로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장기적으로 난

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추진반을 구성하여 난시청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자연적·인위적 난시청 해결 방안으로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받는 주파수와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주파수가 동일한 10mW/ Mhz 이하의 저출력 중계기로서 적은 범위의 가시청 권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소출력 중계기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160여 개소 이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14개소(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3개소 포함)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구축이 완료된 지점의 전파환경 조사 실시 결과 난시청 해소 목표 지역에서 방송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중계기로 인한 주변 지역의 전파간섭 역시 없음으로 조사되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가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증되어 추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13〉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설치 및 시범운영 지역

번호	대 상 지 역	세대수	장비타입
1	전북 군산시 미룡동 897-2(주공1차아파트)	600	IF
2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신한수협북부지소)	500	ICS
3	충북 제천시 수산면 내리 829(수산우체국)	248	ICS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장수주공아파트)	733	ICS
5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567(물푸레마을9단지)	3,000	IF
6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1, 2리(연세대미래관)	500	ICS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대변항	400	IF
8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1, 2리(마을정수장)	600	ICS
9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200	ICS
10	전남 강진군 성전면	400	ICS
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377	ICS
1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303	ICS
13	경기도 고양시 고양초등학교	10,135	RF
14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5동	10,025	ICS

3) 농어촌의 아날로그TV마을 공시청설비 개선 및 신설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전국 디지털방송 시청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농어촌 지역의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가구 특성상 소수 독립된 가옥 형태로 인해 유료 방송을 통한 방송 수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별 수신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는 마을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 거주 주민들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마을 공시청시설의 경우 간이 중계소나 디지털 동일채널 소출력 중계기 구축에 비해 설치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일정 이상의 화질을 보장할 수 있어 소규모의 난시청 해소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도에 158개소(154개소 개선, 4개소 신설)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의 506개소 아날로그 방송 마을 공동 수신 설비를 연차적으로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2010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작업으로 16,757 가구의 방송 수신 거주 주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였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

〈표 III-14〉 2010년 전국 공시청시설 현황

권역	개소	세대수	권역	개소	세대수
수도권	53	18,147	경북권	33	10,950
강원권	65	9,932	경남권	78	4,120
충북권	56	4,876	전북권	96	4,435
충남권	23	1,173	전남권	99	11,513
제주권	3	443	합계	506	65,589

4) 절대난시청가구 위성수신기 보급

위원회는 도서·산간벽지 등의 자연적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경제적 이유로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없는 세대에게 위성수신기를 보급하여 지상파 5개 채널(KBS1~2, MBC, 민방)과

공공 3개 채널(KTV, OUN⁴⁾, 국회방송)의 방송을 제공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05~2008년까지는 KBS,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KBS, 지자체, SkyLife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절대난시청 가구에 대한 난시청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OUN (방송대학TV) : 케이블TV, 위성TV, IP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 교육전문 공공채널

〈표 Ⅲ-15〉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가구)

구 분	소요 비용(억원)				난시청 해소 실적 (가구)
	KBS	지자체	방통위	합계	
2005년	7.8	13.1	-	20.9	11,726
2006년	6.4	10.9	-	17.3	10,994
2007년	8.6	12.8	-	21.4	15,871
2008년	6.2	10.2	-	16.4	10,815
소계	29.0	47.0	-	76.0	49,406
2009년	4.6	7.3	6.3	18.3	8,104
2010년	4.5	6.6	-	11.1	5,410
합계	38.1	60.9	6.3	105.4	62,920

다. 디지털 방송 대국민 홍보 및 지원방안

1) 디지털전환 통합 홈페이지 구축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 전환 홈페이지를 통합개편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개편은 그동안 디지털 전환 홍보(www.dtvkorea.org)와 수신환경 정보 제공(www.dtv.org)을 목적으로 각각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www.dtvkorea.org)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디지털 전환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통합된 홈페이지는 ‘디지털방송 체험하기’, ‘우리집 자가진단’, ‘설치영상 가이드’ 등의 정보를 클릭, 시청자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따라함으로써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보급형 디지털 TV, 실내·외 안테나 설치, 리모컨 채널설정 방법 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쉽게 구성되었으며, 일반인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 불편했던 시·청각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통합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검색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노

출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 제고에 적극 나섰다.

〈그림 III-6〉 디지털방송 전환 홈페이지(www.dtvkorea.org)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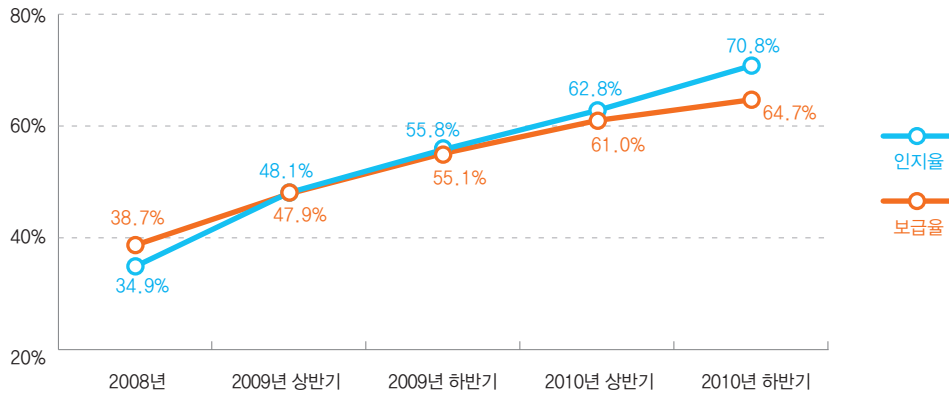


2) 디지털 전환 인지율 제고와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 확대

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개월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5,000명을 개별 면접하여 ‘하반기 디지털전환 인지율 등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 종료 영향에 대한 인지율이 70.8%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말 34.9%에 비해 2배 이상(35.9%p) 상승한 결과였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의 경우 64.7%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의 38.7% 보다 26%p 상승한 수치였다.

〈그림 Ⅲ - 7〉 디지털 전환 인지율과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률 추이



위원회는 2011년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율 90%,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률 80%, 디지털 TV방송의 커버리지 94%를 달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총 4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대국민 홍보, 수신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시청자지원 측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지율 상승을 위해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면대면 홍보 등 전략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형 DTV 조달, 디지털 컨버터의 대형 마트 판매제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3)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날로그 TV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TV방송 수신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상에게는 디지털컨버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 TV 구매시 일부 금액을 보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안테나 개보수 등의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16〉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지원 내용

지원 대상(아날로그TV 직접수신가구)	지원 내용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①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비용 보조(10만원)중에서 선택 ② 필요시 안테나 무상지원 또는 개보수
② TV수신료면제자 중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시각·청각 장애인 가구	
③ 기타(그 밖의 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정한 가구)*	

* 차상위계층으로서 ① 자활근로참가자, ② 본인부담액 경감자, ③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⑤ 장애연금(부가급여)을 지급받는 자 [방통위 고시 제2010-44호]

한편, 위원회는 신청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2011년 초에 고시로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사와 시청자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 일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TV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고품격의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디지털TV

보급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가 12월 24일 의결한 ‘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전환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일부 TV수신료 면제 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7만 가구에 DTV 구매를 보조하거나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지원하고, 소득이 낮은 시각장애인, 난청노인 등에게 화면해설방송수신기(5,000개), 자막방송수신기(8,584개)를 지급할 계획이다.

〈표 Ⅲ-17〉 저소득층 지원대상 규모 추정

지원대상 (아날로그TV 직접수신가구)		지원대상 규모(추정)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16.4만 가구
② TV수신료 면제가구	시청각장애인	3.8만 가구
	국가유공자 등	1.4만 가구
③ 차상위계층		7.7만 가구
합 계		29.3만 가구

또한, 모든 국민이 지역적, 환경적 요인에 관계없이 양질의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EBS와 협력하여 영세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의 노후 지상파 TV수신시설에 대해 무상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4) 보급형 디지털 TV 공급

위원회는 3개 시범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디지털TV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2010년 2월 3일, ‘디지털TV 보급 활성화 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보급형 디지털 TV 선정 공모(총 33개 제품 접수) 및 성능점검 실시와 심사를 거쳐 5월 25일 대우디스플레이(주), 모티브씨앤씨(주), 삼성전자(주) 등 3개사 6개 제품을 보급형 디지털TV로 최종 확정하여 시범지역에 보급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보급형 디지털TV의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판매 대표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선정업체별로도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왔다.

대우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전국 52개 대우일렉서비스에서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였고, 모티브씨앤씨 제품 또한 전국 24개 판매점과 인터넷 쇼핑(지마켓, 옥션)으로도 구매 가능하였으며, 삼성전자 제품은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울진, 단양, 강진)의 저소득층 지원용으로만 우체국을 통해 판매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디지털TV의 가격변동 특성을 감안, 주기적인 가격점검 실시 방침에 따라 9월 8일 시행된 시장가격 점검을 통해 보급형 디지털TV 가격을 조정한 결과 모티브씨앤씨 20인치 제품을 당초 24만 6천원에서 22만 6천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보급형디지털TV의 대국민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홍보영상물(‘굿바이 아날로그’)을 제작, 9월 13일부터 연말까지 EBS, 아리랑TV, 5대 홈쇼핑 채널, 전광판 등을 통해 방영하는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디지털TV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 Ⅲ-18〉 보급형 디지털TV 공급 제품 현황 및 판매실적

제조사명		디스플레이 종류	보급가 (단위 : 원)	판매실적 (단위 : 대)	비 고
대우 디스플레이	42인치	LCD	819,000	523	
	32인치	"	539,000	929	
모티브 씨앤씨	24인치	LED	297,000	1,995	
	20인치	LCD	226,000	1,704	
삼성전자	27인치	"	439,000	39	시범지역 저소득층 전용
	23인치	"	305,000	29	"
계		6개 제품		5,219	

※ 2010년 12월 말 기준

그 결과 2010년말 기준 5,219대의 보급형 디지털TV 판매실적을 나타냈으며, 보급형 디지털TV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 356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해 줄 것과 이 경우 보급형 디지털TV를 활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라. 디지털 전환 관련 방송사 지원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사업자 용자 지원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촉

진시키기 위해 용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자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2010년에는 지금까지의 지원 금액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19억 5,000만 원이 용자 금액으로 지출되었다. 지원을 받은 방송사업자 역시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18개 사업자였는데 구체적으로 SO 11개, PP 5개, 위성방송 1개,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1개의 사업자들이 각각 용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용자 지원 혜택을 받은 방송사업자들은 HD셋톱박스 도입, HD방송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이를 사용하였다.

〈표 Ⅲ-19〉 2010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예 산 (A)	집 행 (B)	집행률 (B/A)	세부 집행 내역			
			부 문	사업자수	용자지원액	비 율
21,950	21,950	100.0%	지역지상파	-	-	-
			SO	11	15,613	71.1%
			PP	5	4,172	19.0%
			RO	1	165	0.8%
			위성방송	1	2,000	9.1%
				0	0	100%

2) 디지털 TV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2001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87개 디지털 TV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85%의 경감을 추진하였다. 이후 3차에 걸쳐 감면 기한 연장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

월 27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세감면 기한이 2012년까지 연장되었다. 2010년 말까지 총 412억 원의 관세경감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방송사들이 제작 및 송신설비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

〈표 Ⅲ-20〉 디지털 TV방송장비 관세 경감액

(단위 : 백만원)

기 간	1차				2차		3차		4차		합계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감면액	4,069	5,110	7,556	5,836	5,276	5,753	3,569	1,950	575	1,466	41,160

〈표 Ⅲ-21〉 관세 감면제도 추진경과

구 분	2001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2008년	2009년~2010년
품목수	87개	68개	53개	36개
감면율	85%	85%	50%	50%

〈표 III-22〉 방송사 디지털 전환 시설 현황

구 분	방송국	제작설비	방송보조국
총 계 (개)	63	880	1,128
디지털 전환시설(개)	63	544	440
전환율	100%	61.8%	39%

4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가. 해외시장진출 기반조성

1)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및 주요 지역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는 세계적인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와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전략에서는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를 5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품목별 총 25개 거점국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VIP순방 후속조치, 고위급 회담, 국제행사(월드컵) 등과 연계하여 5대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협의회는 방송통신 분야 관련 기업, 협회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에 총 5회의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WiBro 장비 수출은 2009년 19개국 7,666억원에서 2010년 22개국 1조 2,317억(추정치)으로 증가하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불가리아·우크라이나에 신규로 진출하였다. DMB는 베트남에 T-DMB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노르웨이와는 국내 업체가 시범용 T-DMB와 DAB 재난방송 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T-DMB 기술의 해외시장 보급이 확대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2010년에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방송통신분야 MOU 체결 등 정·부간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2010년에 추진하였던 고위급 면담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국 대통령, 장·차관급, CEO 등과 총 45회의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면담을 통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방송통신 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우리나라의 정책경험과 우리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의 정책 공조 등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월드뱅크(4월), 가나(5월), 몽골(5월), 이집트(6월), 앙골라(6월), 세르비아(6월), 에콰도르(9월), 우루과이(9월), 러시아(11월) 등과 방송통신 MOU 9건을 체결하였다. 특히 월드뱅크와의 MOU는 월드뱅크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협약을 맺게 된 경우로, 이는 우리나라가 월드뱅크가 인정하는 ICT 발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국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우리의 ICT기술 및 제품, 전략 등이 월드뱅크를 통하여 개도국에 적극 소개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시장 진출에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아·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의체와 포럼개최 등을 통한 방송통신 협력활동도 전개하였다. 8월에는 한·중·일 국제협력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8.26)하여 제

5차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 시기, 한·중·일 협력체제 개편안, 협력약정 개정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주관 제3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협의체(KOAFEC, 9.14 ~ 17)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장관급 한-아프리카 IT협력포럼을 개최(9.16)하였다. 한-아프리카 IT협력포럼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협의체 장관회의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하에 개최되었던 경제협력포럼으로, ‘브로드밴드 확산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수단 과학기술부 장관, 모리셔스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차드 재무장관과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서는 IT관련 국내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한국의 ICT 정책과 한-아프리카 IT협력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아프리카 각국 장·차관 등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는 정책자문, 초청연수 등 아프리카와의 ICT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향후에도 아프리카와의 ICT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WiBro, DMB 등 우리나라 ICT 기술 및 서비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는 한·호·뉴 국장급 회의를 개최(11.10)하여 2011년 제6차 한·호·뉴(KANZ) 통신장관회의 개최방안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표 III-23〉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 안건
1차	1. 12(화)	○ 2010년 방송통신 장관회의 초청 대상국가 의견 수렴 ○ 2010년도 주요 국제행사 소개 ○ 필리핀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계획(안) ○ 터키 로드쇼 개최 계획
2차	3. 16(화)	○ MIPTV 및 NAB 전시회 참가 계획 ○ 한·중남미 협력센터 설립 관련 수요 조사 ○ 2010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최 계획 ○ 방송통신위원장 스페인·인도 방문 결과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정부컨설팅 사업 공모
3차	4. 28(수)	○ 방송통신분야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2010년 방송통신장관회의 개최 ○ 방송통신 국제협력 동향 ○ 방송통신산업 수출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제도(수출보험공사) ○ 수출입은행의 IT분야 금융지원제도
4차	9. 15(수)	○ 2014년 ITU전권회의 유치 및 이사회 6선 추진 ○ 중남미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 2010년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개최 ○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운영 ○ 방송통신 해외정보시스템(CONEX) 개편
5차	11. 23(화)	○ 중남미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활동 결과 ○ 동남아시아 지역 쇼케이스·로드쇼 개최 ○ 2011 ITU 텔레콤월드 참가 ○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 DMB 해외진출 현황 및 향후 방향(DMB얼라이언스) ○ DMB 해외진출 사례 발표(창해에너지어링)

2) 방송통신분야 통상협상 대응

위원회는 WTO, FTA 등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 추진에 있어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통상협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진출 대상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및 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한편, 시장개방 수위가 낮은 국가와의 FTA 협상은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FTA 협상에서 제외되는 방송분야는 문화교류 증진과 국내방송물의 해외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양국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WTO DDA⁵⁾와 관련하여 통신 프렌즈(Friends) 협상 대응, 신규 WTO 가입 희망국의 방송통신 양허안 검토 등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미국, EU, 페루 등 기 타결 국가와의 FTA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 영향분석과 후속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방송통신 시장 및 시장개방현황, 규제제도, 비관세 장벽 분석 등을 통한 협상 의제를 발굴하였으며 한-미 통상협약, USTR(미국무역대표부) 무역장벽 검토보고서, EUCCCK⁶⁾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분석 및 대응 등 각종 통상현안에 대응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 및 통상이슈에 관한 전문가 협의를 위한 ‘방송통신 통상포럼’을 운영하였으며,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와 관련된 조사 자료집을 발간하고, 방송통신 통상환경에 대한 리포트 작성 및 한-중 FTA 대비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3)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위원회는 해외로드쇼 개최, 정부컨설팅 지원,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하여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품목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해외로드쇼는 2010년에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국을 중심으로 총 9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를 대상으로 연초에 실시한 로드쇼의 경우, 장관급 양자회담을 통해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조기화를 유도하였으며, 에콰도르 로드쇼의 경우는 방송콘텐츠 쇼케이스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5)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6) EUCCCK(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유럽상공회의소

〈표 III-24〉 2010년도 해외로드쇼 개최 현황

구분	개최월	국 가(도시)	분 야	비고
1	2월	인도(뉴델리)	WiBro, DMB, IPTV, 브로드밴드, 방송콘텐츠	포럼/시연
2	5월	필리핀(마닐라)	브로드밴드, 전파관리시스템	포럼/시연
3	5월	베트남(하노이)	DMB, IPTV, 방송콘텐츠, 전파관리시스템	포럼/시연
4	6월	이집트(카이로)	WiBro, DMB, 3DTV	포럼/시연
5	6월	남아공(요하네스버그)	WiBro, DMB, 브로드밴드, 3DTV, IPTV	포럼/시연
6	6월	앙골라(루안다)	WiBro, DMB, IPTV	포럼
7	9월	에콰도르(키토)	WiBro, Mobile IPTV, DMB, 3DTV	포럼/시연
8	10월	우루과이(몬테비데오)	WiBro, Mobile IPTV, DMB, 3DTV	포럼
9	12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DMB, 방송콘텐츠, 전파관리시스템	포럼/시연

〈해외로드쇼 포럼 및 시연〉



정부컨설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진출 유망국가에 방송통신 기술서비스 컨설팅(기술 도입의 타당성 조사 및 소규모테스트 서비스를)을 제공하여 우리 기술·서비스의 해외 도입을 촉진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총 6개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 선정 시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세부 지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5〉 2010년도 정부컨설팅 선정과제

구분	대상국가	내 용	해외 파트너	수행기간
1	말레이시아	T-DMB 구축 타당성 조사	DMB Corp.	5월 ~ 8월
2	인도	WiBro 도입 타당성조사	Reliance Comm.	7월 ~ 9월
3	네덜란드	T-DMB 부가 데이터 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	MTVNL	6월 ~ 10월
4	몽골	T-DMB 서비스파일럿 프로그램	UB DMB	9월 ~ 11월
5	앙골라	WiBro 도입 타당성 조사	앙골라 국가정보 기술 위원회	9월 ~ 11월
6	캄보디아	전파관리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9월 ~ 11월

한편 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장르의 다변화, 뉴미디어 서비스(IPTV, DMB 등)와 방송콘텐츠를 연계한 해외진출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송콘텐츠 진출 잠재성이 높은 동유럽, 중남미 지역과 한류 재확산의 계기 마련이 필요한 동남아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드라마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방송콘텐츠의 수출국가와 장르를 다변화하고자 하였으며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및 방송서비스 국제 전시회인 NAB(4월)와 MIPTV(4월)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기술 시연과 상담회를 개최 하여 국

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또한 방송콘텐츠 수출 강국 및 국내 방송콘텐츠 수출 유망국가에 대한 방송콘텐츠 수출입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신규시장 진출 정책수립에 활용하였다.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11년도에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남미, 중동, CIS 등 진출 잠재지역을 중심으로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방송콘텐츠 뿐만 아니라, 채널, 프로그램 포맷, 방송 기술 등 다양한 방송 분야와 연계한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III-26〉 2010년도 방송프로그램 쇼케이스 개최 현황

행사명	참여 업체	추진 내용
NAB (4월 미국)	ETRI 및 시큐라인, 인텍디지털 등 방송통신 관련 10개 업체	방송콘텐츠, 방송통신 융합, 방송장비 3개 테마로 구성된 한국관 운영 및 수출 상담
MIPTV (4월 프랑스)	-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Contents360)을 후원 하여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홍보
DISCOP (6월 헝가리)	KBS미디어, MBC, EBS, 한국HD방송, 대한미디어월드	DISCOP 2010(동유럽 지역의 거래시장)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중남미 (9월 에콰도르, 멕시코)	MBC, KBS미디어, EBS, SBS인터내셔널, 폴라리스	방송통신 협력 포럼, 방송프로그램 상영회, 수출상담회 등 개최
동남아 (12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 허브, CJ미디어 iNET TV, Lian TV	방송통신 협력 포럼, 방송프로그램 상영회,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한류스타를 활용한 한류붐 조성 등 추진

4) 방송통신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위원회는 방송통신 해외정보시스템(CO NEX) 운영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 관련 제도, 시장동향 등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및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2009년 40개국에서 2010년 47개국으로 늘리고 품목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방송통신 거점국가별 시장정보를 한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가능한 ‘국가별 브리핑 페이지’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상담창구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보제공 내용 및 대상 국가와 품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7〉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대상국가 (47개국)		대상품목 (11개)
구분	국가명	
전략국가 (25)	남아공,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태국, 페루, 프랑스, 호주, 가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몽골, 이란	+ 전략품목(5개) WiBro(WiMAX)/ DMB(Mobile TV)/ IPTV/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 기타 핵심품목(6개) 이동통신/유선통신/ 방송서비스/NGN/ 정보보호/ 전파관리시스템
2009년 CONEX 조화상위국(7)	대만, 독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핀란드, 필리핀	
기업 수요조사 선호국 및 2009년 제공국 등 (15)	나이지리아, 스페인, 칠레, 캐나다,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우루과이, 캄보디아	

〈표 III-28〉 해외진출 정보제공 내용

온라인(CONEX) 제공				오프라인 제공
이슈 및 동향	분석 보고서	핵심 보고서	동향보고서	국가별 현황
- 주파수 경매 동향 - 기술 표준 동향 - 양국 간 교류현황 - 수출입 통계 등	-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현황 분석 - 국가별 방송통신 품목 시장 현황 분석	품목별 진출 전략 리포트	매주 1회 발간 (3~4건 수록)	- 년 1회 발간 - 유관기관 및 기업 배포

향후에는 LTE, 스마트 TV, 3D TV 등 신규 유망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CONEX의 온라인 상담창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개별 기업의 해외정보 수요에 대해 맞춤형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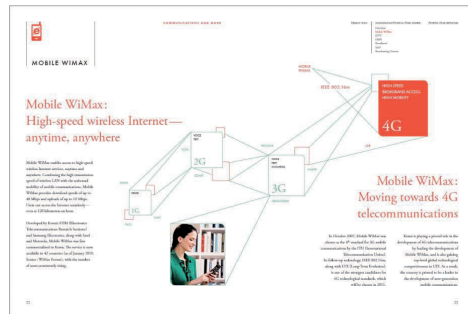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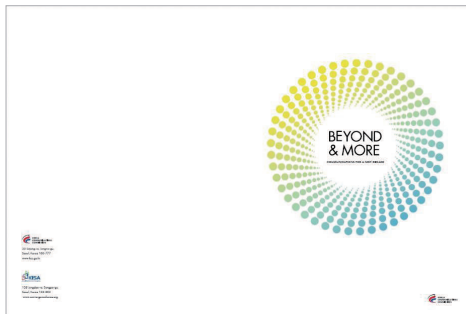
5) 방송통신 국외홍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송통신 서비스 및 관련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방송통신 선도국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0년에는 동영상, 발간물 등 방송통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로드쇼, 쇼케이스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 활동, 국제행사 등에 활용하였다. 특히

방송통신 해외 홍보 발간물 ‘Beyond and More’는 간결한 구성과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국제비즈니스대상(IBA, Interantional Business Awards)’과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방송통신 홍보영상

‘Digital Convergence Korea for You’는 남아공월드컵,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방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해외에 소개하는데 일조하였다.

〈방송통신 해외홍보 발간물 「Beyond and More」〉



위원회는 또한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제품(또는 콘텐츠)의 해외 홍보, 마케팅, 국제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영문 인쇄물 제작, 자료 번역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였다. 2010년에는 총 38개의 방송통신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통신 기술·서비스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였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설치된 북경 한국

문화원 내의 방송통신홍보관을 그간 지속 운영(2010년 11월 운영 종료)하였으며,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서울광장에서 2010년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방송통신 미래체험전을 운영하여 내·외국인, G20 기자단 등에게 첨단 방송통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방송통신 강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G20 주행사장인 코엑스에서 시연된 고화질 3DTV 지상파방송과 G20 대표단에게 제공되어 참가국의 실시간 방송 등을 볼 수 있는 모바일 IPTV 단말기를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G20 정상회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전경〉



나.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협력활동

1) 국제기구 협력활동

위원회는 ITU, APT, OECD, ASEAN, APEC, ESCAP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고 의제에 대응하는 등 국제기구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ITU, OECD, APT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의장단에 진출하고, ITU이사국 6선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은행, ITU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도에는 세계은행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몽골에서 공동 워크숍(10월)을 추진하였다. 초청연수사업으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융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11.17~25)하였으며, 동 워크숍에서는 르완다, 쿠바, 파키스탄 등 17개 개도국의 방송통신 관련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 융합 서비스 정책, 기술 및 성공사례 등을 배우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동 워크숍은 개도국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개도국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수혜국 및 국제기구와의 신뢰도 구축 및 협력 강화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세계은행 이외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새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ITU와는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자문프로그램 운영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UN 산하 국제기구인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에는 전문가를 파견

하여 위원회 ODA사업과의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개도국 정보통신개발 및 확산을 위한 APCICT의 각종 행사를 후원하였다. 한편 동북아 ICT 허브 구축에 기여하고 아·태지역 내에서 방송통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PCICT 상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 송도에서 개최(5.13 ~ 19)되었던 제66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APCICT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기구의 상설화에 합의하였다.⁷⁾ 이번 상설화 결정은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한국의 ICT 발전상 및 경험 등을 적극 소개하고 지역 내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APCICT의 상설화를 통하여 아태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고, ICT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며 미

래 기술 표준화에 우리기술 반영 등을 위해 국제기구의 방송통신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OECD, ITU, APEC, AIBD⁸⁾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방송통신 국제기구의 정책결정 및 표준화 논의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이익 대변을 위해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5월, 8월),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10월) 및 고위관리자회의(10월)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정보통신 정책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 ICCP) 및 산하작업반 회의, 무역위원회(TC) 회의에 참석하여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었던 제18차 ITU 전권회의(10.4 ~ 22)에서 우리나라는 ITU 이사국 6선 피선에 성공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89년 ITU 이사국(임기 : 4년)에 처음 선출된 이후 5회 연속 선출되어 지난 20년간 ITU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

7)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초의 ICT 분야 UN 산하기구인 APCICT는 아·태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 및 인력양성을 위해 2006년 국내(인천 송도)에 설립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2006년 설립 당시 2010년 제66차 UN ESCAP 총회에서 APCICT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PCICT를 계속 연장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8) AIBD(Asia 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위원회는 2010년도에 각종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9.30~10.1)된 제60차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 우리나라 정인억 박사가 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인억 박사가 지난 2007년에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래 2011년까지 5년 연속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단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제 ICT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는 OECD 산하 25개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의의 하나로, 정보통신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OECD 핵심 위원회로서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장관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12.2 ~ 3)된 제29차 정보보호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회의와 제28차 정보경제작업반(WPIE: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정태명 교수(성균관대)와 남상열 박사(KISDI)가 2011년도 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WPISP와 WPIE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의 작업반으로 WPISP는

개인정보보호, 국가 사이버보안전략 등 온라인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WPIE는 정보통신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발전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12.6~7)된 제44차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 작업반(WPCISP) 회의에서 우리나라 이내찬 교수(한성대)가 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WPCISP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의 작업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무선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내찬 교수가 WPCISP의 정책이슈를 조정하는 부의장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ICCP와 ICCP 산하 4개 작업반 전체에 부의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번 의장단 진출을 통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각 작업반의 국제적인 논의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정책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파부문(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및 전기통신개발부문(ITU-D)등 3개 부문 총 21개 연구반(Study Group)에서 14명의 의장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15명의 의장단을 배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치로서 ITU의 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활동 및 영향력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ITU 의장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과의 조화 및 각 연구반 이슈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ICT 기술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었던 ITU-D 부문의 최고 의사 결정회의인 제5차 세계 전기통신개발회의(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KISDI의 서보현 박사가 4년 임기의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TDAG의 주요 임무는 ICT를 통한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전략의 수립, 지역협력 이니셔티브 개발, ICT 선진사례의 공유 및 성과 확산, ITU 개발협력 연구반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 표준화 국제기구의 의장단 진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선진 ICT 기술의 국제적 공유 및 확산, 지역 협력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마카오에서 개최되었던 제34차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 관리위원회(11.30 ~ 12.3)에서는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 위규진 과장이 APT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정부 간

전기통신 국제기구인 APT의 관리위원회 의장에 재선된 것은 아·태지역 ICT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내 전문가들의 APT 등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방송통신 장관회의 및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개최

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장관회의(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 2010, WICS 2010)를 신라호텔에서 개최(5.25)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문화의 확산(Expanding Digital Economy and Culture)”을 주제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의 방송통신의 역할과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몽골, 가나, 에콰도르 등 전 세계에서 총 9개국이 참석하였다.

장관회의는 바람직한 미래사회 창출을 목표로 ICT 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경험과 비전 공유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World ICT Summit”, 2007년에는 “IT Ministerial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각각 개최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위원

회가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라는 이름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2010년 방송통신장관회의는 참가국 장·차관들이 ICT를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 및 국경 없는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각종 침해행위의 등장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 등 각국의 ICT정책 등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장관회의는 2008년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의 최대 IT 전시회인 ‘월드 IT 쇼(World IT Show)’와 연계해서 개최되었는데, 첨단 ICT 장비 전시 및 시연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문화, 방송통신 기술 및 서

비스를 홍보하는 등 경제외교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전시회(5.25 ~ 28)는 국내외 방송통신 전문 업체 500여개사가 참여하여 첨단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미래 발전상을 한 눈에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장관회의 부대행사로 한국과 참가국 간 양자면담 및 협력 MOU체결, 기업 및 기관방문, 네트워크 만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가국간 정책경험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II-29〉 2008 ~ 2010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최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행사명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 2008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 2009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 2010
일자 장소	10.30 (워커히호텔)	6.17 (코엑스)	5.25 (신라호텔)
행사 주제	모두를 위한 미래정보 사회를 향하여	방송통신 융합과 미래혁명-위기속의 새로운 기회	디지털 경제와 문화의 확산
참가	9개국	15개국	9개국
참가국	<u>한국</u> , 베트남, 말레이시아, 터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u>캄보디아</u> , <u>파라과이</u> , <u>과테말라</u>	<u>한국</u> , <u>몽골</u> , <u>태국</u> , <u>라오스</u> ,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폴란드, <u>사우디아라비아</u> , 나이지리아, <u>파라과이</u>	<u>한국</u> , <u>가나</u> , <u>르완다</u> , <u>말레이시아</u> , <u>몽골</u> , <u>에콰도르</u> ,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 참가국 중 밑줄은 장관(급) 참가국

〈2010년도 장관회의〉



한편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 전문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적 최신 정보를 교류하여 왔다. 2010년도에 6회를 맞이하는 2010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를 개최(11.8 ~ 10)하여 “Digital Future of Smart Society”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춰 방송통신사업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Houlin Zhao 사무차장, 국제방송통

신기구(IIC) Andrea Hargrave 사무총장, KT 이석채 회장, 서울대 이병기교수,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Jonathan Levy 등 총 55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스마트 사회의 도래로 예견되는 방송통신분야의 동향과 정책을 분석·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컨퍼런스 첫 날인 11월 8일에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글로벌 미디어 프레스와 국내·외신기자를 위한 프레스 파티를 개최하여 스마트 사회를 맞아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와 소프트웨어, 특히 의료, 교통, 사무실, 가정용 ICT 기술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3D관련 기술 등을 선보였으며 세계 각국 전문미디어들과 국내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구축하여 한국 업체의 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표 III-30〉 2008년 ~ 2010년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개최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행사명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계행사	방송통신장관회의	방송통신장관회의월드IT쇼 (전시회)	G20 방송통신 미래 체험전
논의 주제	컨버전스의 구현-인프라 및 기술,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Media Convergence and After	Digital Future of Smart Society
세션수	11개	13개	12개
참가자	2,023명	2,209명	1,029명

3) ITU 전권회의 유치

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영향력을 확대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었던 제18차 ITU 전권회의(10.4 ~ 22)에서 한국의 2014년 전권회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동 회의에서 ITU가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을 명시하는 결의서를 192개 회원국 동의를 거쳐 공식 채택한 것이다.

ITU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정책결정회의로서, 1865년 ITU가 창설된 이후 19차례(추가회의 1회 포

함) 개최되었으나, 주로 유럽(11회)과 미주(5회)에서 열렸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1994년에 일본에서 개최(교토)된 것이 유일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2014년 ITU 전권회의 유치를 위하여 2010년 ITU 전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엑스포 과달라하라 본 회의장에서 회원국 대표들 중 최초 연설자로 나서 120여개 국가의 장·차관 및 192개 회원국 2,5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설을 통해 전권회의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2014년 ITU 전권회의가 국내에서 열리게 되면 세계 192개국 120명 이상의 장·차관을 포함한 2,500여 명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참석자들에게 ICT 발전상 및 미래비전 등을 보여

주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격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ICT 기업들이 우수한 선진기술을 홍보하고 고위급 정책결정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가간 방송통신 교류 협력

1) 개도국 방송통신정책지원

위원회는 개도국 방송통신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하여 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송통신분야의 해외교류 기반을

(2010년도 초청연수)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2010년도에는 초청연수, 정책자문 등 ODA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초청연수는 2009년 339명에서 2010년 450명을 시행하였고, 정책자문은 2009년 5개국에서 2010년 6개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초청연수 시 해외 거점국가 과정, 방송 분야 과정 등을 마련하여 초청연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였고, 웹 커뮤니티 구축, 웹진 발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ODA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ODA사업기관과의 방송통신 ODA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초청연수는 2010년 21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주요 과정은 APT, AfDB, ADB, ASEA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과정,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체의 고위급 방송통신 핵심인력을 초청하는 고위급 및 정부간 협력 과정, 해외 주요 국가와 위원회와의 협력활동 후속조치로 진행하였던 특별과정,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근 4개국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던 현지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연수생 사후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청연수 졸업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함으로써 정부간 교류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각국의 연수생들을 과정별로 커뮤니티화하고, 한국의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공통의 경험을 기반으로 동문개념을 형성하고 서로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토록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웹진과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뉴스와 연수생들의 동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나라 및 방송통신 연수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정책자문은 2010년도에 총 6개국을 실시하였다. 몽골, 라오스, 에콰도르 3개국에는 일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남아공, 도미니카 3개국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

〈표 III-31〉 2010년도 해외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 추진현황

구분		교육과정명	기간	인원	교육대상
고위급과정		방송통신정책	4.26 ~ 5.1	8	말레이시아1, 몽골1, 베트남1, 인도네시아1, 태국1, 브라질1, 이란1, 가나1
		브로드밴드구조정책	8.30 ~ 9.4	8	라이베리아2, 몽골1, 이라크1, 르완다2, 모잠비크1, 가나1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 융합	11.17 ~ 11.25	17	시리아1, 모로코1, 파키스탄1, 쿠바1, 몽골1, 콩고1, 르완다1, 나이지리아1, 불가리아1, 도미니카공1, 베트남1, 이집트1, 브라질1, 캄보디아1, 모잠비크 1, 아제르바이잔1, 아르메니아 1
기구 협력 과정	APT 협력 과정	디지털 전환 및 통신기술	5.26 ~ 6.3	12	피지1,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2)
		스펙트럼 관리 및 정책	11.22 ~ 11.30	27	몽골, 베트남3, 이라크2, 인도네시아1, 캄보디아3, 부탄, 태국2, 말레이시아2, 필리핀, 사모아, 카자흐스탄3, 스리랑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세르비아2
	ASEAN 협력	그린ICT워크숍	4.5 ~ 4.10	22	라오스2, 캄보디아2, 미얀마 2, 브루나이4, 말레이시아 2, 베트남2, 인도네시아3, 태국1, 필리핀2, 싱가포르1, 아세안사무국1
		Digital Futures & ICT인증	5.9 ~ 5.15	19	필리핀1, 말레이시아2, 인도네시아1, 태국3, 브루나이2, 베트남4, 라오스3, 캄보디아3
		농촌지역 와이브로 응용기술	10.14 ~ 10.22	12	미얀마2, 베트남2, 태국1, 인도네시아 2, 필리핀2, 라오스2, 말레이시아1
	AfDB 협력	차세대 통신기술 및 브로드밴드	3.24 ~ 4.1	14	감비아1, 우간다1, 잠비아1, 카메룬1, 나이지리아1, 가나3, 기니아1, 라이베리아1, 남아공3, AfDB1
		이동통신 및 디지털전환	9.8 ~ 9.16	14	세이셸1, 바브웨1, 탄자니아2, 부룬디1, 코트디부아르1, 케냐2, 말라위1, 모잠비크1, 르완다1, 지부티1, 나이지리아2
	ADB 협력	차세대통신기술 및 브로드밴드	10.27 ~ 11.4	17	베트남9, 미얀마1, 라오스4, 캄보디아3
	AIDB 협력	디지털 전환 및 융합정책	7.6 ~ 7.14	23	방글라데시2, 부탄2, 캄보디아1, 인도2, 인도네시아2, 라오스1, 말레이시아3, 몰디브1, 모리셔스1, 몽골1, 미얀마1, नेपाल1, 파키스탄1, 태국1, 베트남3
	IIC 협력 과정	브로드밴드 및 방송기술	10.14 ~ 10.22	16	브루나이2, 피지1, 인도네시아2, 라오스1, 말레이시아3, 미얀마1, 스리랑카2, 태국1, 통가1, 베트남2
		디지털 전환 및 방송통신 정책	11.3 ~ 11.11	20	브라질2, 캐나다1, 캄보디아1, 칠레1, 독일1, 가나2, 홍콩1, 인도네시아2, 자메이카1, 말레이시아2, 페루1, 남아공2, 태국1, 트리니다드토바고1
	ODA협의체 협력과정	ICT 교육센터 건립운영 교육	7.29 ~ 8.6	28	우즈베키스탄10, 카자흐스탄5, 우크라이나10, 키르기즈스탄1, 타지키스탄2
	업체협력 과정	방송통신 및 브로드밴드	8/23 ~ 8/31	23	캄보디아1, 인도2, 인도네시아3, 말레이시아2, 몽골2, 모잠비크1, नेपाल3, 니카라과1, 파키스탄1, 페루2, 세르비아2, 베트남3
	현지과정	초고속 정보망 구축 운영	6/7 ~ 6/11	77	인도네시아3, 라오스22, 베트남11, 태국10, 캄보디아31
방통위 후속과정		이동통신 및 브로드밴드	10/26 ~ 11/3	22	가나4, 남아공6, 잠비아1, 르완다2, 페루2, 나이지리아3, 에콰도르4
		방송통신 및 융합서비스	12/7 ~ 12/15	28	에콰도르4, 이디오피아1, 가나4, 나이지리아3, 페루4, 부룬디2, 말라위4, 세이셸2, 르완다2, 우루과이1, 코트디부아르1
		전파관리 및 시스템 운영 기술	2/19 ~ 2/26	20	라오스5, 베트남5, 태국5, 인도네시아5
		디지털전환 및 HD방송제작기술	3/5 ~ 3/12	23	캄보디아20, 베트남3
21개 과정				450	72개국

2) 방송협력협정 이행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

위원회는 방송관련 자유무역협정(FTA) 및 방송협력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분야 협력 사항 이행을 통해 국가간 방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에 근거하여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과 협정체결국과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

가간 방송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FTA를 기 체결한 ASEAN과 CEPA, 기 체결국인 인도와 별도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FTA 협상 중인 뉴질랜드와 FTA 협정문 부속서 형태로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FTA 대상국을 상대로 방송콘텐츠 공동제작협정 체결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캄보디아 방송사와 국내 3개 방송사간의 공동제작물 4편의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표 III-32〉 2008년 ~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실적

구 분	방송사명	제작프로그램	공동제작국
2008년	KNN	○ 아시아의 야시장	싱가포르 / Off The Fence Singapore
2009년	한국 HD방송	○ 아시아 관광허브 - 테마파크로 열다 - 1부 : 그들만의 세상, 아시아 테마파크 - 2부 : 관광아시아, 꿈을 설계하라	싱가포르 / Oak3Film
		○ 아시아의 미래, 바이오(BIO)를 주목하라 - 1부 : 新골드러시,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가다 - 2부 : 바이오(BIO)유토피아, 아시아를 바꾸다	싱가포르 / Ochre Picteres
	온미디어	○ 트렌드 메이커스	싱가포르 / Oak3Film
	EBS	○ 백색열전 - 불타는 북극 - 1부 : 원시북극의 위기 - 2부 : 남획의 그늘 - 3부 : 신 냉전의 그림자 - 4부 : 영토 분쟁의 서곡 - 5부 : 북극항로를 향해	노르웨이 / NRK
	디지털 조선일보	○ 프로젝트 글로벌 인턴십, 싱가포르&코리아	싱가포르 / Red Dawn
2010년	푸드TV	○ 예비 셰프들의 한·싱 음식문화 체험기	싱가포르 / Kaiten Coom,
	EBS	○ 신들의 도시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 TVK
		○ 크메르 제국, 앙코르 톨의 부활	캄보디아 / TVK
	폴라리스 방송	○ 여행의 발견, 캄보디아	캄보디아 / BAYON TV
	한국HD방송	○ 미로(米路)	캄보디아 / TV Ch 3

한편 위원회는 UN지정 극빈국 중 방송 관련 FTA 또는 방송협력협정 체결국에 카메라

등 방송장비를 무상 지원하여왔는데, 2010년에는 2개국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표 III-33〉 극빈국 방송장비 지원 실적

연 도	수혜국	지원내용
2010년	캄보디아	HD급 카메라 등 1식
	라오스	SD급 카메라 등 1식
합 계	2개국	2식

그리고,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전환(Digital Switchover)’를 주제로 2010 한-아세안 방송협력 워크숍을 개최(11.29 ~ 12.3)하였다. 워크숍에는 국내의 방송·통신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아세안 9개국 방송·통신 관련기관 담당자 32명이 참석하여 방송분야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남북 방송통신 현안을 분석하고 교류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류협력 활성화 및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2010년도에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의 산업·경제적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와 ‘남북 방송교류 중장기로드맵’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 방송교류협력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담당하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산·관·학·연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남북 방송통신 포럼’을 운영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개선과 관련한 남북실무접촉에 참가하여, 인터넷·이동전화 제공과 통신센터 건설문제를 협의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북한주민들도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남아공월드컵 북한 중계 지원도 추진하였으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중단되었다.

5 방송통신 에너지절감 시책 추진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은 ‘부처별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소관 업무분야 에너지절약 시책이 가능한 9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별 소관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절약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개최(2009.3.) 이후 지난 1년간 방송통신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 경과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5월 28일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에서는 방송·통신·케이블·인터넷업계 CEO 및 정부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녹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위원회와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

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초 2010년 방송통신 분야에 서 분담하기로 한 감축량(12,000 TOE⁹⁾)을 30% 초과하는 에너지 절약 목표(15,710 TOE)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목표는 2010년 절약 목표에서 5%, 10% 상향하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의지를 밝혔다.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녹색 방송통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통신사는 2011년까지,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사는 2013년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¹⁰⁾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온실가스 목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IT자원 절감에 기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및 사물지능통신 확산 사업, 현재의 네트워크 효율을 1,000배 개선하는 그린 ICT 기술 개발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녹색 방송통신 정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에너지절약 주요 이행 방안으로 그린 IDC 구축, 국사 광역화, 2G망의

9)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kl, t, m³,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m³에 해당됨. TOE는 최근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10) 인벤토리 : 기업(또는 지자체)의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파악, 기록, 분석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시스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축잠재량 분석에 활용됨

조기 철거, 가상스튜디오의 활용, 파일 기반의 제작시스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KT는 그간의 자체적인 그린 인프라 노력의 결과 2009년 최초로 통신시설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대비 5.1%감소했고, '2013년까지 연간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KBS는 연내에 본관 옥상에 5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방송용 LED 조명기구를 국산화 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MBC와 SBS 또한 환경다큐 '남극의 눈물(MBC)', '사하라의 눈물(MBC)', '툰드라(SBS)' 등 교양 다큐멘터리 기획을 통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SK텔레콤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SK그룹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예정이며, 녹색융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차원의 에너지 효율적인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UUC(Urban Utility Center) 사업을 추진 중이다. 케이블 업계는 멀티채널 변조기 도입 등 기기·장비를 저전력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주기적인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거나 전자 청구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10년 9월 '방송통신 분

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 사업자별 전력사용량에 대한 목표량 설정방안,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기기 및 시스템 관련 절감방안, 절감방식별 장단점, 실제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 탄소 인벤토리 구축 및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방송통신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4개사(유선 - KT, 무선 - SK텔레콤, 지상파방송 - KBS, 케이블방송 -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 방문조사와 탄소 인벤토리 구축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는 방송통신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담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하는 등 탄소 배출 절감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제 2 절 |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 정착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가. 방송법령·법제정비

최근 방송·통신 시장 내 경쟁 증가와 융합시장 활성화의 결과로 규제 완화가 늘어나면서 사후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사전 규제 위주였으나, 법규의 변화가 기술 발달과 시장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적인 금지행위만을 규정하고 행위 발생 이후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후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위원회는 6월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 주관으로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융합분야별로 사후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복잡·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의 통합 가능성, 신규 융합 서비스시장에서의 사후규제 및 발전

방향,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립의 필요성, 융합 환경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적인 사후규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의된 의견을 향후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사후규제 세미나와는 별도로, 2010년 8월 19일 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시 사후규제 방안을 포함하는 「방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사업의 소유·점영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방송시장의 경

쟁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신설 사후규제 방안으로서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 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신설, 제52조 4항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각 사후규제 항목에 대한 적용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신설, 제52조 5, 6, 7항). 시청점유율 산정 시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였다(신설, 제52조 3항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특히 사후 규제 조치명령의 적용 기준으로는 시청점유율 30%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 신규 추가 진입이 금지되며, 방송광고시간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방송시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방송사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할 때는 전년도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 초과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로 그 매각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라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채널의 방송광고를 6개월부터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월 하루씩 금지하도록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신설, 제52조 5항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양도의 경우는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주채널에서 주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최소 1/30이상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설, 제52조 6항 방송시간 일부양도). 한편,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그 참여를 배제한다(신설, 제52조 7항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표 III-34〉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일자	주요 내용
6.15 ~ 25	관련 부처협의
6.17 ~ 7.7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7.22, 8.12	규제심사 의결
9.13	법제심사 의결
9.16	차관회의 의결
9.20	국무회의 의결
10.1	시행

나.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1)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할인 기준 마련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원회는 2010년 3월 「SO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규제방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에 비해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방송수신료 수익이 줄어들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2010년 중 총 99개 SO 중 25개에서 방송을 통신에 비해 5~

7배 더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합상품 규제방안에서는 SO가 운영하는 결합상품의 방송·통신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로 정하도록 하되, 결합상품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였다. 단, 규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과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의 방송상품 할인율이 통신상품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로모션 행사기간 동안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무료 제공하는 경우는 파악이 어려워 회계처리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모션 등의 할인행사 약관도 신고하도록 하였다.

〈표 Ⅲ-35〉 결합상품 규제방안 적용 사례

구분	약관 요금	결합 할인율	현행 (할인율로 배분)	개선안 (방송요금 : 통신요금 = 1 : 2로 배분)
방송	10,000원	40%	6,000원	8,000원
통신	20,000원	10%	18,000원	16,000원
방송·통신결합	-	-	24,000원	24,000원

이 결합상품 규제방안은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직접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에 따른 요금인하나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한

하지는 않으나, 유료방송 시장에서 결합상품의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공정거래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PP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두 정책의 취지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 규제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결합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할 때 SO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PP 프로그램 사용료가 감소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 경우 방송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위 끼워 팔기 관행 때문에 콘텐츠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규제방안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2010년도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2) SO-PP 콘텐츠 거래관계 개선

방송 수신료 중 프로그램 공급대가가 PP에게 명확히 지급될 수 있다면 콘텐츠 제작 기반은 물론,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하고 명확한 프로그램 공급대가 거래관행은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복지 증진과 방송 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미 2009년 12월

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연속선상에서 2010년에는 SO-PP 채널 제공 및 PP의 콘텐츠 공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후속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2009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케이블TV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나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규제방안을 마련한 것도 공정한 프로그램 공급대가 거래관행의 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서 2008~2009년에는 PP 사용료 지급실적과 관련하여 모두 74개 SO에 대해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2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2010년에는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제18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

정금을 부과(제19조 및 제109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도에도 역시 나머지 25개 SO에 대해서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며, MSO 계열 19개사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와 다른 PP를 차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한 결과, 채널 제공과 프로그램 공급 전반에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됨은 물론, 케이블TV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6〉 SO - PP간 콘텐츠 공급 거래관계 개선방안 및 시책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SO의 재허가 조건 부여 (2008 ~)
- 「케이블 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9.12.)
- 「SO 결합상품 규제방안」 (2010.3.)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2010.5.~)
- SO-PP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2010.4.~)

3)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실시

현재 방송 매체 및 사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방송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자간 경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쟁 규제 정책을 마련할 때 체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시장 내 경쟁 상황의 정확한 평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에서 위원회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2008년도부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해왔으며, 2009년도에 방송시장 경쟁상황 시범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착수하였다.

2010년 5월에는 방송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

고하였으며,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플랫폼(가입자 확보)시장, 채널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에 대해 실시되었다. 특히,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는 지상파 역외 재송신 정책을 위한 시장상황평가와 연계되어 실시하였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등 경쟁정책을 입안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물론, 요금 규제, 콘텐츠 또는 네트워크 접근, 결합서비스 규제, 인수합병 심사 등 관련 규제 개선 및 정책추진의 합리적·체계적 근거가 될 것이다.

다. 신규 방송채널 활성화

1)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정책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홈쇼핑 채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12월 13일 기존 홈쇼핑 PP의 중

소기업 지원 정책개선안을 포함하여,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상반기에 1개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새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입방안에서 중소기업 홈쇼핑 PP의 사업자 수는 1개로 정하였으며, 동일인이 복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채널 운영과 채널 소유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전용의 특성을 살려 채널 운영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 시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지분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도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사업권 획득이 유리하도록 하였다.

심사사항은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 사항과 세부항목 20개로 구성하였으며, 납입자본금은 1,000억, 최소 출연금 규모는 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심사 배점의 기본틀은 2001년도 홈쇼핑 PP 선정 당시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서 심사배점의 차이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

현가능성에서는 2001년 홈쇼핑 PP 심사 당시 기준에 비해 심사배점을 5점을 높였으며, 신규 방송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항목에서는 심사 배점을 10점 낮추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홈쇼핑 PP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재승인 심사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정액수수료 방송의 축소, 납품업체의 민원처리기구 마련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홈쇼핑 PP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및 판매 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수료 개선, 표준거래계약서의 도입, 홈쇼핑 맞춤형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등 중소기업에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2) 종편·보도 전문 신규 채널 승인

위원회는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 종합편성채널은 KBS, MBC 등 지상파방송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드라마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로, 신규 보도전문 채널과 함께 케이블 가입을 통해서 시청가능하다.

이번 신규채널 선정에서 매일경제티브이, 채널에이, 에이치유비, 케이블연합 종합편성 채널,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의 총 6개 법인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선정된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 순으로, 매일경제의 매일경제티브이 동아일보의 채널에이, 조선일보의 씨에스티브이, 중앙일보의 제이티비씨이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신청법인은 굿뉴스, 머니투데이 보도채널, 서울뉴스, 연합뉴스TV, HTV의 5개 법인이며, 이 가운데 연합뉴스의 연합뉴스TV가 선정되었다.

선정 결과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은 7개 분야별 전문가 14인을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외부 추천은 한국방송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심사사항은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 사항과 세부항목 19개로 구성하였으며, 보도전문 채널의 심사점수에 차등을 두었다.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편성 채널과 보

〈표 III-3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 기준

심사분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75점	210점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75점	140점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40점	175점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40점	105점
5. 방송발전을 위한 자원계획	70점	70점

〈표 III-38〉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 주요 경과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보고 (5.18)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의결 (9.17)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중편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의결 (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 (11.10) 및 설명회 (11.12)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류 접수 (11.30 ~ 12.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류 보정자료 접수 (12.2 ~ 12.8)
- 승인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12.2~ 12.15) 및 시청자 의견청취 (12.3 ~ 12.16)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의결 (12.8)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12.23 ~ 12.31)

위원회는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에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경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보도채널 MBN의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경우 승인장 교부 시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들은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1년 하반기 중 종편·보도 채널을 개국할 예정이며, 신규 방송채널의 출범은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 개선노력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재 「방송법」 제78조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KBS1, EBS는 의무 재송신 대상이며, 나머지 지상파방송(KBS2, MBC, SBS)은 해당 규정이 없어 사업자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먼저 2010년 2월에는 OBS의 역외재송신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요청에 대해 심의하였다. 역외재송신이란 지상파방송사가 자신이 허가받은 권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지칭하며,

현재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인 지역방송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역외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월의 심의는 OBS의 역외재송신을 승인 받은 서울지역 13개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승인유효 기간이 2010년 2월 18일자로 만료되고, 추가로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재송신 수요를 제기함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기존에 OBS의 역외재송신 승인을 받았던 13개 SO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2013년 2월 18일까지 3년간 재송신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외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14개 SO에 대해서는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재송신 허용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결정에 의거하여 OBS는 이 14개 SO에 대한 재전송 승인을 2011년 중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4월에는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과 티유미디어(주)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요청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은 OBS-TV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재전송이 허가되었고, 티유미디어(주)는 YTN News FM, tbs FM, tbs eFM의 전국 재전송이 가능해졌다.

〈표 III-39〉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방송

구 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티유미디어(주)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OBS-TV	YTN News FM, tbs FM, tbs eFM
재송신 유형	동시재송신	동시재송신
재송신 방송권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국

2010년 하반기에는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하여 지상파 측과 케이블 측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적극적인 협상 중재역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지상파 및 케이블 측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와 동시에 사장단, 실무단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 결과 10월에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종합유선방송(SO)은 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케이블측이 계획했던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방송계 초유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지상파측은 재송신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운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은 방송정책국 주관 하에 위원회의 관련 실국 과장 6인, 방송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의 주요 임무는 2010년도 정책 연구과제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무적 정비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및 분쟁 해결 방안 등 제도 전반이 논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의무재송신 대상 지상파 방송의 범위 확대 여부, 재송신 관련 해외사례 및 의무제공 제도 등 도입 여부 이슈와 함께, 재송신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 중재 등의 도입, 중재 권한 범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현행 분쟁 조정 과정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며, 쌍방의 합의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게 되어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 전담반은 2010년 12월 말까지 5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 재송신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장기적으로 뉴미디어를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방송의 공익성 강화

가.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8항에 따르면 유료시장 내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방송을 통한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6조(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의 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 위성방송사업자가 각 분야마다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익성 채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원회에서는 2005년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공익채널 분야와 공익채널 방송사업자를 선정해왔다. 2009년 하반기에는 분야별로 다수 채널을 선정한 결과, 채널 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의무전송채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어 실질적인 공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성 방송 분야를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기존의 6개 공익채널 분야(시청자 참여, 사회적 소수 이익 대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등)를 3개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로 통합하였으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최소 6개씩 송출되던 공익채널 수를 3개로 축소하였다.

〈표 III-40〉 2006 ~ 2010년 공익채널 현황

연도	규정	분야	채널
2006	8개 분야 이상 1개 채널 이상 의무전송 (10개)	한국문화(한국어)	KBS코리아
		한국문화(영어)	아리랑 국제방송
		수능교육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DU TV
		초·중등교육	EBS 플러스2 중학직업
		사회적 소수자 대변	RTV, ABS 농어민방송, 복지TV
		환경·자연보호	환경TV
		어린이·청소년	어린이TV, JEI 재능방송
		과학·기술	-
		순수문화·예술	예술TV Arte, CEM TV
		역사·다큐	CTN, 휴먼TV, 히스토리채널, NGC
2007	분야별 1개 채널 이상 의무전송 (8개)	한국문화(영어)	아리랑TV
		수능교육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DU TV
		순수예술	예술TV Arte
		교육	EBS 플러스2 중학, EDUON
		시청자 참여	RTV
		장애인 시청 지원	복지TV
		환경·과학	환경TV, 마운틴TV, NGC
		사회적 소수자 대변	ABS 농어민 방송, 실버TV, 육아방송, EBS 플러스3
2008	분야별 1개 채널 이상 의무전송 (6개)	시청자 참여, 사회적 소수자 이익대변	RTV, 복지TV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	육아방송, 실버TV
		문화·예술진흥	예당아트, 예술TV Arte
		과학·기술진흥	사이언스TV, 환경TV
		공교육 보완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사회교육 지원	EBS English, JCBN
2009	분야별 1개 채널 이상 의무전송 (6개)	시청자 참여, 사회적 소수자 이익 대변	복지TV, 법률방송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	육아방송, 실버TV
		문화·예술진흥	예당아트, 아리랑TV
		과학·기술진흥	사이언스TV
		공교육 보완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사회교육 지원	JEI English, JCBN
2010	분야별 1개 채널 이상 의무전송 (3개)	사회·복지 분야	복지TV, 육아방송, 법률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	아리랑TV, 사이언스TV, 극동아트TV
		교육 지원 분야	EBS잉글리쉬, EBS플러스1수능전문, EBS플러스2 중학/직업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 역시 3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별로 3개의 채널들이 선정되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육아 및 어린이, 노인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두 번째로,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들이 방영된다. 특히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환경, 저탄소녹색성장 등 과학기술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 분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지역 및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는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인터넷 윤리교육 등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위원회는 공정한 채널 선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공익채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방송분야 적합성,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현황 등을 바탕으로 총 22개 채널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방송 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였다.

심사 결과 2011년도 공익채널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한국직업방송(워크TV), 복지TV, 육아방송, 과학·문화 진흥분야에서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예술TV 아르테, 교육지원분야에서는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잉글리시, EBS 플러스2 중학·직업의 9개 채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채널들은 2010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과 (주)아르테의 예술TV 아르테 등은 새롭게 선정된 채널이다. 이번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표 III-41〉 2011년도 공익채널 방송분야 및 채널선정 결과

방송 분야	선정 채널	전문편성내용
사회·복지	한국직업방송, 복지TV, 육아방송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육아·어린이·노인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는 방송 프로그램
과학·문화 진흥	아리랑TV, 사이언스TV, 예술TV 아르테	각종 예술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진흥 및 홍보를 돕고, 이공계 및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와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교육 지원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을 보완하며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및 일반 국민 대상의 사회 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010년 중 이루어진 재허가 심사는 KBS, MBC, SBS 등 거의 모든 지상파 방송국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3년마다 이루어지는 방송국 재허가 주기 상 위원회 출범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재허가 심사였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는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길어졌으며, 7월부터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심사점수가 낮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 유효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0년 중에 이루어진 재허가 심사 대상으로는 전체 47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337개 방송국 중 (주)경인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등 4개 사업자를 제외한 43개 사업자의 330개 방송국이 해당되었으며, 2011년도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포함되었다. 그 외에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 6개, 위성 DMB 사업자 1개,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1개에 대한 재허가도 심의하였다. 지상파 DMB 사업자로는 안동MBC, 지역민방 5개사 (KNN, 대구, 광주, 제주, 강원)가 해당되었으며, 위성DMB 사업자로는 티유미디어(주), 일반 위성방송사업자로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가 재허가 대상이었다.

먼저 2월에는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에이치씨엔 등

2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허가 심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는 재허가를 하되, 특정 항목에서 40%에 미달일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허가를 거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재허가하기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재허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6월에는 2010년 9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티브로드강서 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1개 사업자에 대하여 재무구조 불안정의 이유로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2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효기간을 부여하였다.

23개사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허가 조건은 PP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사업허가 기간 동안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울러, 매 분기별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도 요구하였다. 복수종합유선방송(MSO) 계열의 19개 사에 대해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PP와 다른 PP를 차별하여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나머지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 제공한 대여금 상환, 부채비율 축소,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조건을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다.

〈표 Ⅲ-42〉 2010 ~ 2011년 중 MSO별 재허가 대상 사업자수

MSO명	티브로드	CMB	CJ	씨앤엠	HCN	개별	합계
사업자수	9	6	2	2	1	5	2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이어 2010년 11월에는 20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3개사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심사결과 점수가 낮은 일부 방송국의 경우 2년 이내에

서 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실제로 「방송법」 위반이나 허가조건 미이행, 불안정한 재무상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5개 방송사 12개 방송국은 3년의 허가유효기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방송, 기술, 회계, 법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방송국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편성·제작, 경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2010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법」의 근간이 되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시청자 권익보장과 지역적·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지역 사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매년 수행되는 방송사업자 평가와 중복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항목과 배점을 구성하였다. 또한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대비하여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특히 2010년도 재허가 심사에서는 시청자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시청자 의견청취를 강화하였다. 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각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여 시청자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의견청취 기간도 4주로 늘려서 실시하였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2008 ~ 2009년 동안 경기악화로 인해 해당 방송국들이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과도한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미디어랩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KBS, MBC, SBS의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 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말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금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상향 등을 TV 방송국에 대한 공통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번 재허가시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아울러 지역 MBC, 지역민영방송, 라디오 전문편성 사업자 등에 대해 미디어랩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통으로 권고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여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방송사별로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개별 조건과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여 이행토록 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한 지적과 권고 등은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공·공익방송 인프라 지원

위원회는 2010년 핵심 과제로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의 확보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의 품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공익적 방송프로그램의 지원을 표방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으로 2000년도 이래 지속되어 온 EBS 교육 프로그램과 국악 라디오 등 공익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과 방송

설비 개선에 대한 지원 등을 계속하였다.

2010년 중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먼저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EBS를 대상으로 노후 방송장비와 시설의 개선 및 디지털 전환용으로 289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0년 말 현재 EBS의 디지털 전환률은 75%에 이르렀다.

KBS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의 송출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는 14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KBS 대외방송의 해외 현지방송 시간이 2009년 2,569분에서 2010년 2,957분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낳았다. KBS 대외방송 외에도 해외 방송인 아리랑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도 2009년에 비해 22억 원 증가한 269억 원 규모로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그 외 2009년에 비해 축소된 규모이긴 하지만 국악방송, 디지털 케이블 TV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과 영어 FM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에서 44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I-43〉 공익사업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일반회계〉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4,347	4,477	4,477	8,557	민간경상보조
EBS 방송인프라 개선	-	8,000	2,500	5,000	민간자본보조 자본금출자(2008년)
〈방송발전기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056	6,237	6,237	6,237	민간경상보조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17,260	17,812	18,865	23,839	민간경상보조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22,195	23,832	24,722	26,909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영어FM 라디오방송 지원	2,585	2,734	2,801	2,269	민간경상보조
국악방송 지원	3,021	3,283	2,229	1,666	민간경상보조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사업	-	-	1,000	500	출연
계	55,464	66,375	61,831	74,477	

3 방송의 다양성 제고

가.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

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지난 2009년 7월에 개정된 「방송법」은 신문 등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 방지 및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 법정위원회인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구성

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방송법」제35조의 4, 「방송법 시행령」제21조의 4와 동조의 5). 이어 2009년 11월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추가 직무로써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방송 종사자 대상 미디어 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방송의 여론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법률,

〈표 Ⅲ-4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

-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 12. 31까지 완료)
-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 그 밖에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출처 : 방송법 제35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21조의4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위촉안과 더불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위원회 규칙(「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성 및 대표성 확보를 원칙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임기는 2012년 3월 30일까지 향후 2년이며,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논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분과 위원회를 5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10년 중 주요 활동으로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심의하였으며, 이 계획안은 7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7.8)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TNmS(주)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 27일부터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에 관한 정책 초안을 마련하여 업계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각 계의 의견들을 검토·수렴하여 9월 17일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최종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고시 제정안은 10월에 의결되었으며,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는 이후 2012년 말까지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을 위한 기초 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 진행할 예정이다.
고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표 III-4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주요 업무추진 경과

일자	주요 내용
3월 31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4월 ~ 9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논의 (정기회의 16회, 분과위원회 17회, 워크숍 2회)
6월 17일	시청점유율 조사 관련 시청률 조사회사 의견 청취
6월 28일 ~ 7월 2일	시청점유율 조사 관련 방송사업자 의견 수렴
7월 1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7월 8일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 의결
7월 13일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관련 방송·신문업계 간담회
8월 19일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8월 27일~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및 본조사 실시
9월 7일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월 17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심의
9월 24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보고
10월 1일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제52조의3 시행
10월 14일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의결

2)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0년 3월 말부터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기준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시청점유율 조사의 대표성·신뢰성·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시청률 조사회사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심의 (7.1)를 거쳐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조사 계획안을 제40차 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7.8).

이후 공개 입찰 및 기술능력 평가 심사를

통해 TNmS(주)를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전국 총 33,000가구를 대상으로 TV시청가구의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TV시청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3,300가구(12월 기준)를 대상으로 가정 내 TV수상기를 통해 시청가능한 모든 실시간 방송채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합리적인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문·방송업계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 9월 중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안)」을 위원회 제60차 회의에서 의결하고 최종 확정하였다(10.14).

이 고시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등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고시와 함께 위원

회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도 의결하여 공표하였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에서는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하고 매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연도별 매체교환율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한 결과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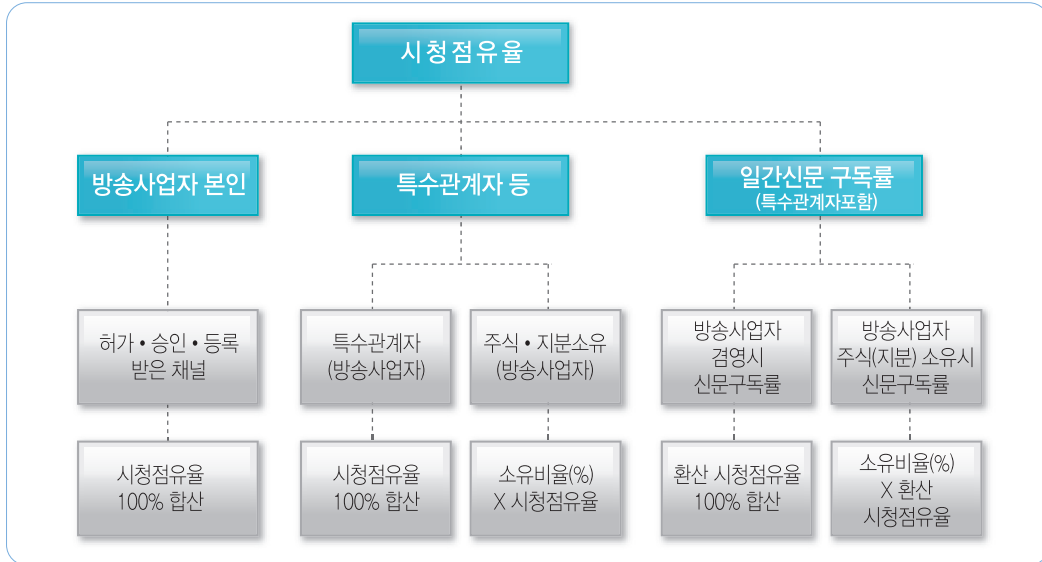
시청점유율 산정 대상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포함하는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이며(제5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로 하였다.

〈표 Ⅲ-46〉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식

○ 제 1 단계 : 【일간신문 구독률】 × 매체교환율 = 【시청률】

○ 제 2 단계 : $\left\{ \frac{\text{【시청률】}}{\text{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 \right\} \times 100 = \left\{ \text{시청점유율} \right\}$

〈그림 III-8〉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나. 지역방송 지원체계 구축 확대

위원회는 신규 경쟁 매체의 증가와 함께 광고 매출액 감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의 경영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왔다. 이미 2008년 8월 지역방송과 관련된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방송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방송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대표단체

로 고시된 단체의 위원 추천인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3년의 임기로 선정하게 되어있다(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6호 제3, 4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역방송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및 시책의 심의, 평가를 담당해왔다. 2010년 중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지역방송 관련 회의를 12회 개최하여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등 지역방송 정책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표 Ⅲ-47〉 2010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심의 내용

회차	구분	의 안 제 목
제19차(1.26)	보고사항	가. 2010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2009년도 지역방송 연구과제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20차(2.23)	보고사항	가. 해외 지역방송제도 연구 나. 지역방송에 대한 시청자 및 방송인 의식 조사
제21차(3.23)	안건	가. 2010년도 지역방송 정책 아젠다에 관한 사항
제22차(4.27)	안건	가. 2010년도 지역방송 정책 아젠다에 관한 사항(제2차)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 현황
제23차(5.27)	안건	가.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관련 현황
	보고사항	가. 지역방송 정책 연구반 구성 운영 및 계획
제24차(6.29)	안건	가. 미디어렐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발전 방안
제25차(7.20)	안건	가.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화 지원 방안에 관한 건의문(안)
	보고사항	가. 지역방송 정책 연구반 1차 회의 결과
제26차(9.7)	안건	가. KBS 지역방송 자체편성 비율 제고 방안
	보고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 나. KBS 경인 제1TV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제27(10.20)	안건	가. 지역방송 평가 지표에 관한 건
	보고사항	가. KBS 지역방송 자체편성 비율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나. 방송법 개정안(의원입법)에 관한 사항 다. 지역방송사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
제28차(12.1)	보고사항	가. 지역 지상파DMB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방송법 개정안(의원입법)에 관한 사항 다. 2010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010년 중에는 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 방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방송 편성규제 개선과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년 12월말 현재 지역방송 편성규제 개선과 관련된 의원발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방송법」이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과 편성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표 III-48〉 지역방송 편성 규제 개선 관련 의원발의 방송법 개정안

구분	의원발의 방송법 개정안 현황
의원 발의 개정안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의무비율을 자체제작 의무비율로 전환(2009.6.12 허원제의원, 2010.10.8 김을동의원)
	외주제작 의무편성 대상 사업자에서 지역방송을 제외(2009.12.4 이용경의원, 2010.10.8 김을동의원)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에서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제외(2009.12.4 이용경의원, 2010.10.8 김을동의원)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발의 6개 법률안이 2010년 12월 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법률안은 지원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히

중소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지역방송 지원방안 제도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표 III-49〉 미디어렐 관련 발의 법안별 중소방송 지원방안

한선교의원	진성호의원	김창수의원	이용경의원	전병헌의원	이정현의원
방송법 개정안 (2009.5.15)	방송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2009.11.3)	방송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2009.9.25)	방송법 개정안 (2009.12.4)	방송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2009.12.14)	방송법 개정안 (2009.12.15)
- 허가시 조건 부과 - 대행사 지정 - 재정 지원 - 종교방송 광고할당 - 광고매출 배분 조정	- 허가시 조건 부과 - 대행사 지정 - 재정 지원 - 종교방송 광고할당 - 광고매출 배분 조정	- 허가시 조건 부과 - 대행사 지정 - 재정 지원 - 방송사 광고매출 점유율 제한	- 기금징수 한도 1%상향 - 취약매체 광고할당 (위탁액15%) - 방통위가 광고매출 배분 정함 - 기금 지원	- 방송사 광고매출 점유율 40% 제한 - 재정 지원 - 중소방송 광고할당	- 허가시 조건 부과 - 대행사 지정 - 기금징수 한도 1% 상향 - 광고매출 배분 조정 - 기금 지원

한편,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2011년부터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도 인하기로 의결하였다. 2010년 12월 2일 의결한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방송사의 분담금 징수율은 「기본법」제25조와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공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되,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현행 분담금 징수율인 3.37% 보다 약 11% 낮은 3%로 인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현행 징수율인 2.87% 보다 13% 낮은 2.5%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인하하였다. 지역 지상파 DMB 방송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 기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영어FM방송 확대

국제적 행사의 국내 유치에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어 FM 방송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미 2008년 3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에 대해 영어 FM방송국을 허가하여 방송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2012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역인 여수권의 영어 FM 보조방송국 설립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특히 여수권은 2012년 세계 박람회 기간 중 100여개 국가 3개 국제기구 16개 지자체 등으로부터 800여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어 FM 방송 보조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4월에 여수세계박람회 및 여수시와 영어 FM 방송 보조국 설립 지원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에만 방송되고 있는 광주 영어 FM 방송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여수권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보조국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 3억 4천 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다. 이 결과 여수 영어 FM 방송보조국이 2011년 중 설립되어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표 III-50〉 영어FM방송 설립 현황

구 분	수 도 권	부 산 권	광 주 권
사업자명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재) 부산영어방송재단	(재) 광주영어방송재단
채널명	tbs-eFM	Busan-eFM	GFN
주파수	101.3MHz	90.5MHz	98.7MHz
허가일자	2008. 7. 23	2008. 12. 3	2008. 10. 24
방송구역	일원 : 서울특별시 일부 : 인천시, 경기도	일원 : 부산광역시 일부 : 김해시, 진해시	일원 : 광주광역시 일부 : 나주시, 9개군

4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가. 방송광고 규제제도 개선

1) 방송광고 건수 규제 완화

위원회는 방송광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송광고 건수 규제를 완화하였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은 지상파방송(TV·라디오)의 토막광고, SO·PP·DMB의 토막광고 및 중간광고의 건수와 시간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었다. 방송프로그램 전·후에 편성되는 방송프로그램 광고에는 시간규제만 있고 건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도한 규제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법령에 규정된 허용시간·횟수 범위 내에서 방

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상의 건수 규제를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들이 동일한 시간 내에 다양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현재보다 짧은 광고의 등장이 가능해졌으며 틈새시장이 형성되는 효과 또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신규 방송광고 도입

위원회는 1월 26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 간접광고는 교양·오락분야에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송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출 시간, 노출크기, 광고 금지품목 등의 세부적인 지침들이 정리되어 있는 ‘가상·간접광고 편성·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 이후에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수도권 지역 방송사업자(지상파 TV·라디오, SO, PP, DMB)를 대상으로 7월 22일에 ‘협찬고지와 신유형 광고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0년 가상 및 간접광고 매출액은 총 113억 원(가상광고 54억, 간접광고 59억)으로 방송광고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속적인 매출액 확대가 기대된다.

3)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위원회는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방송 광고규제를 완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하에 진행된 이번 조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최근 변화된 기부 문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제외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여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허용하되, 금지 행위(허위 사실의 적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한 기부

강요 등)를 설정하고, 중요 정보(모집 목적, 모집 주체, 모집 기간, 모집 금품의 사용처 등)를 표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행위는 방지하고자 했다. 기부금품 모집광고의 제한적 허용으로 향후 기부문화 선진화 및 기부활성화,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경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방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인물 주인공 및 만화 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광고 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방영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본 조치로 인해, 방송사업자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이용을 통한 교육 및 학습 효과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나. 방송편성 및 외주제도 개선

1) 방송편성 규제 완화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제작물 1개 국가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10월 1일자로 개정하였으며(제57조제4항, 제58조제1항 및 제3항), 그 후속 조치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12월 31일에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이를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이며, 향후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신규로 편성할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하는 가산제를 도입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규제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주로 평일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어 주시청대상인 어린이들의 시청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니메이션제작자 협회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규제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간의 합의를 유도,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편성시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31일 시행하였다(제10조제2항). 이번 조치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될 수 있게 되어 국내 애니메이션제작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51〉 가산제 적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시간

구 분	시 간 대
평 일	7시 ~ 9시, 17시 ~ 20시
주말 및 공휴일	7시30분 ~ 11시, 14시 ~ 20시

3)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통한 제작산업 활성화

11월 15일,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기자, 스태프 등의 출연료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가 건실한 외주제작사를 선정하고 외주제작사가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등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방안’에 합의했다. 이 날 지상파3사(KBS, MBC, SBS)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참관하였다. 이 날 합의에 따라, 방송 3사는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실한 제작사를 선정’해야 하며, 드라마제작사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 발생시 방송사와 합의한 출연료 등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5 방송의 품질 향상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가. 방송광고 법규 준수 및 관리 감독

위원회는 시청자 권리 및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광고 방송 시간 규칙 준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방송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광고의 종류에 따라 방송광고의 허용 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는 사업자들에게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의해 2010년 한 해 동안 총 4 차례(6.11, 8.9, 9.16, 12.17)에 걸쳐 ‘방송광고시간’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24개 채널

이 ‘방송광고시간’을, 1개 채널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위반하였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 4,000만 원이었다.

나. 방송 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1) 방송평가 수행

위원회는 11월 10일 ‘2010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2010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총 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2010년 방송평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 역시 방송사업자가 방송평가 관련 규정을 미리 인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개정, 공표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번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송평가지원단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표 III-52〉 2010년 방송평가 대상 방송사업자

	지상파			SO	위성		PP		합 계
	TV	Radio	DMB		일반	DMB	보도	홈쇼핑	
사업자 수 (채널수)	48개 (TV 63개, Radio 153개, DMB 19개)			96개	1개	1개	2개	5개	153개 (340개)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위원회는 2001년부터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허가 심사 자료의 보완 등을 위해 방송평가 규칙을 제정하여 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해왔다.

본 규칙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프로그램 질 평가, 전문가에 의한 운영평가 등) 및 신규매체 도입 등으로 인해 3차례(2.10, 5.12, 7.12) 개정되었다. 최근 소출력 라디오, 데이터방송, DMB, IPTV가 도입되며 방송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경과(2008~2010년)〉

-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서울대 강남준 교수 외 6인, 2008.9.~12.)
-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2009.7. ~ 8.)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2회, 2009.11.11 / 11.26)
- 관련 부처 및 방송사업자 개정안 의견 수렴 (2009.11. ~ 12.)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안건 상정 (2회, 2009.12.30 / 2010.1.29, 의결보류)
- 방송평가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지상파TV / R, SO · 위성, 보도 · 홈쇼핑PP, 지상파 · 위성DMB) (2010.4.27 / 5.27)
- 평가규칙 개정에 대한 매체별 사업자 의견수렴 (2010.7.19 ~ 24)
- 방송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0.10.29)
- 평가규칙 개정 관련 방송평가위원회 워크숍 개최 (2010.11.11)
-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사업자 의견수렴 (2010.11.19)
-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2010.12.9)
-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방송평가위원회 의결 (2010.11.25)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위원회 보고안건 상정 (2010.11.25)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2010.12.2 ~ 13)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 및 공고 (2010.12.24)

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시행령 개정으로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등 산업적,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평가제도를 재정립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평가규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사업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등 다차원에 걸친 검토 끝에 12월 24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12.2 ~ 13)

과정에서 제시된 방송사업자 의견을 반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항목의 명칭과 평가방법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의 명칭을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로 변경하고,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와 시청자 의견의 프로그램 반영결과 등을 정성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동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

- 방송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평가항목 31개 → 11개, 세부 평가척도 69개 → 34개)
- 〈경영의 적정성〉과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 항목은 삭제하고, 〈재무의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확보〉항목은 통합하여 재허가 심사항목과 차별화
-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영역별로 정성평가 방식 도입
 - ※ 내용·편성 영역 : 자체심의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정성평가)
 - 운영영역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정성평가)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신설(SO·위성·PP) 또는 강화(지상파TV)
-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여부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종합평가 항목 신설
- 기존 홈쇼핑PP의 운영영역 배점을 확대(250점 → 300점)하여,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3) 수용자 평가 조사

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용자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수용자 평가는 「방송법」

제3조와 방송평가에 대한 규칙에 근거, 시청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수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II-53〉 수용자 평가조사 개요

평가 대상 프로그램	5개 채널(KBS1, KBS2, MBC, SBS, OBS)
모집단 정의	전국 13세 이상 남·녀
평가 방법	웹 설문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평가 기간	5, 7, 9, 11월 (5주차씩 4개월 진행)
조사 내용	프로그램평가지수(매일) : 만족도 평가 / 질적 수준 채널평가지수(월1회) : 방송채널평가
패널 구성	주간 2,400명 / 월간(5주) 12,000명 / 연간 48,000명

* 보고서 상에서는 OBS조사 결과 제외

본 조사는 연 4회(5, 7, 9, 11월), 매월 12,000명씩 온라인 패널을 구성해 이루어졌다. 평가는 방송 프로그램 평가와 채널 평가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먼저, 방송프로그램 평가는 지상파 5개 채널(KBS1, KBS2, MBC, SBS, OBS)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SI)와 품질(QI)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채널 평가는 7대 영역(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별 방송사 이미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에는 추가적으로 지수 산출 프로세스의 재정립, 지수 안정성 평가, 3사 프로그램 평가지수 비교 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다. 우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시상 및 지원

위원회는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한 해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방송대상은 위원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정부의 방송분야 대표행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기간 동안 출품 접수된 작품은 총 308편으로 이번 시상식에 대한 방송제작인들의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1편, 우수상(창의발전·지역발전·문화다양성·사회공헌·뉴미디어·시청자제작 프로그램) 6개 부문 12편과 특별상(공로상) 1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표 III-54)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및 수상자

시상부문		수상	분야	프로그램명
대 상		KBS1	TV	인사이트아시아 누들로드 <미라의 만찬>
우 수 상	창의발전 프로그램	KBS창원방송총국	TV	습관 2부작
		(주)KNN	TV	호모 스크리니쿠스 <스크린에 갇힌 인간>
	사회공헌 프로그램	EBS	TV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TBN대구교통방송	R	300일의 기록 <선하씨의 특별한 도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부산MBC	TV	<섬마을 아이들, 희망을 연주하다>
		SBS	TV	희망프로젝트 <우리들의 행복일기>
	지역발전 프로그램	대전MBC	TV	다큐뉴스 <하늘동네 이야기>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SO	남도의 멋, 세계의 꿈 4부작
	뉴미디어 프로그램	(주)보라존	PP	<新 한중일 도시락 삼국지>
		TJ미디어	DMB	<미디어 선진국을 위한 월드텔레비전 바이블>
시청자제작 프로그램	한국케이블TV 대전방송	SO	여자가 된걸 축하해	
	KFN국군방송	PP	우리들의 병영이야기 3부작	
특별성(공로상)		송 해	방송인	-

라. 저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지와 방송 언어 순화

1)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강화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막말의 등장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0년 4월 지상파방송의 주말 드라마(24회 분)에서 사용된 언어를 분석한 결과, 총 429건의 저품격 표현¹¹⁾이 지적되었다. 지상파 3

사의 예능프로그램(1박2일, 무한도전, 패밀리가 떴다 11회분)에서도 출연자 대사(436건), 자막(408건) 등 총 844건의 저품격 언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격이 낮은 언어들이 방송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먼저, 1월에 시청자 사과 등 제재조치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드라마 방영 초기에 모니

11) 비속어(71%), 차별적 표현(24%), 인격모독(2.6%)이 높은 비중

터링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자체적 자율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업무협력 체결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지상파 3사와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 업무협력 협약을 10월 8일 체결했다. 협약 체결은 욕설·폭력·선정성 등 유해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유익한 방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양기관과 방송3사는 이를 위해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방송 제작자, 출연자 등 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송언어의 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언어순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청소년 언어순화와 인성 함양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을 기점으로 방송 3사는 청소년 언어순화를 위한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한글날부터 일주일간 청소년 주시청시간대 청소년 인기프로그램에 언어순화 문구를 자막 고지하는 등

청소년 언어문화를 선도해 나갔다. 한글날을 앞두고 체결된 협약은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욕설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정부와 방송사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막말방송, 막장드라마 퇴출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향후 방송언어에 대한 일관성 있고 명확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마.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1)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위원회는 방송매체 이용자의 현황을 담은 ‘2010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이용행태 변화에 관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조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이 전국 3,438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남녀 6,40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 매체 보유와 이용량 ▶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이용행태 ▶ 유료 방송(유선, 위성, IPTV) 이용행태 ▶ 시간대별 매체 이용(Media Diary) 분석 ▶ 해외 방송 프로그램 이용행태 ▶ DMB 이용행태 ▶ 스마트폰 이용행태 ▶ 인터넷 방송 이용행태 ▶ 어린이 방송매체 이용행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및 학계의 연구 수행시에도 가치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청률 조사 검증 실시

TV는 가장 많은 광고비가 집행되는 매체로 TV 광고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시청률 데이터는 미디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시청률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미디어 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 방침에 따라 시청률 데이터는 광고비 산출만을 위한 데이터를 넘어 미디어를 통한 다양

성의 구현을 위한 규제 목적의 데이터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청률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은 광고계와 방송계간의 합리적 거래의 근간을 제공해주는 것 뿐 아니라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민간 시청률 조사 업체가 시청률 데이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위원회는 양 조사회사의 시청률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이 업체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 상반기 시청률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을 보다 세밀하게 하기 위해 본 조사는 ‘검증질문지 응답내용분석’, ‘패널 대표성 평가’, ‘양사 시청률/점유율 비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 보다 나은 시청률 조사방식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본 검증 작업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시청률 조사 검증은 조사 검증의 불모지인 한국의 여건에서 가장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시청률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검증작업은 시청률 조사회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시청률 데이터 사용자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광고회사·

광고주·학계에 국제적인 신뢰 수준의 시청률을 활용하게 하여 방송광고영역의 질적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시청률과 관련한 실무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시청률 조사 검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본 검증 활동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시청률 검증 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업계나 학계, 조사업계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여섯째, TV 시청률 조사회사에 타당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시청률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위원회는 2010년 SBS(서울방송)의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경기에 대한 독점중계로 불거진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위원회는 3월 15일에 지상파방송 3사(SBS, MBC, KBS)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3사 대표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3월 17일)에서는 지상파방송 3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고한 사항은 첫째,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둘째, 방송 3사간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방송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셋째, 남아공월드컵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남아공월드컵이 공동중계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위원회는 제22차 전체회의(4월 23일)에서 지상파방송 3사에게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법」 제76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지상파방송 3사 공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2010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구체적 판매와 구매 희망가격을 4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4월 30일까지 협상에 최대한 성실하게 입하여 그 결과를 5월 3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 ~ 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8월 31일까지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10년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3사간 자율적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위원회 제45차 전체 회의(7월 23일)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BS에 대해 「방송법」 제76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6에 의거, 과징금 19억 7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위원회의 중재노력으로 지상파방송 3사는 9월 20일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공동·순차중계 원칙에 합의하고 SBS가 보유한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등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 3사가 보유 중인 중계권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코리아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포츠발전협의회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위한 세칙을 협의하고 있다.

제 3 절 | 이용자 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이용 환경 조성

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¹²⁾ 위원회는 저렴한 요금수준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와 경쟁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였다. 기간통신 역무통합을 통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이용약관 인가대상 역무인 경우에도 그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인가대신 신고만으로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가계통신비 부담, 특히,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정책 방안으로는 이동전화 초당 과금제 도입 및 확대, 결합할인을 확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경감 방안 마련,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무료 등이 있다.

먼저, 이동전화 과금단위를 기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변경한 초당과금제를 도입하였다. 초당과금제는 SK텔레콤이 2010년 3월부터 도입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KT와 LG U+도 도입하여 이동전화 3사 모두가 시행하고 있다.

둘째,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확대하였다. 지난 2007년 7월 지배적사업자의 인가대상 역무를 포함한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허용한 이후, 요금적정성 심사 간소화 기준 할인율을 점차 확대(초기 10%에서 20%, 30%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다.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7년 12월 198만 가구에서 2010년 9월에 882만 가구

12) 시내전화 보급률은 114.0% (2010년 7월기준), 이동전화 보급률은 103.9% (2010년 12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98.2% (2010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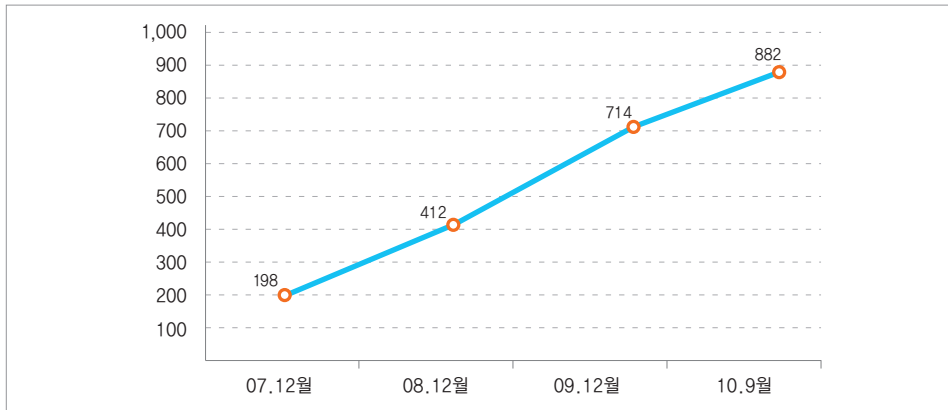
(결합상품 가입율 45.4%)로 증가하였다. 결합상품 이용 가입자수의 증가와 결합할인을 상승에 따라 가입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할인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및 모바일인터넷 이용 확산에 대응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활용에 특화된 요금제 출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이부 요금제¹³⁾와 달리 월 정액의 기본료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 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 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제는 기존의 종량제와 달리 월정액형태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모바일인터넷 이용에 효과적이다.

〈그림 III-9〉 결합상품 가입자수 추이

(단위 : 만가구)



넷째, KT와 LG U+가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CID : Caller identification)¹⁴⁾ 서비스

를 2010년 9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하도록 하였다. KT와 LG U+는 2006년 이후 신규

13) 정액요금인 기본료와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통화료로 구성된 요금제

14)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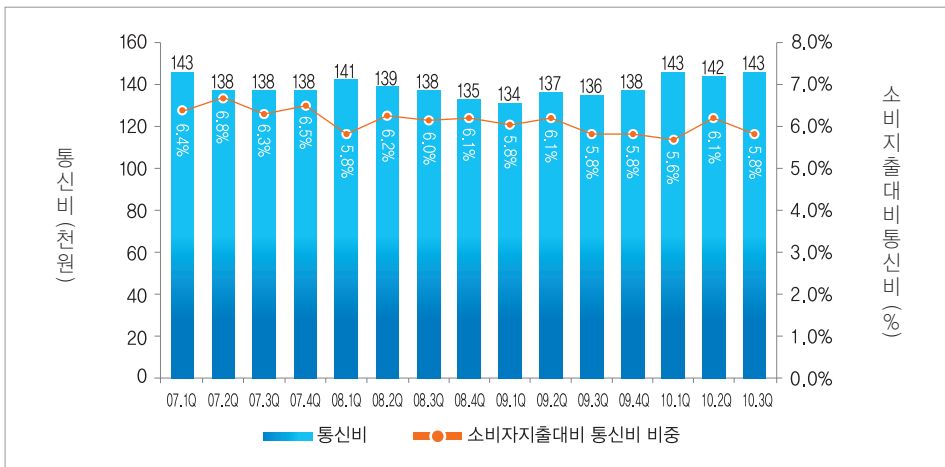
가입자에게는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무료로 제공했으나, 그 이전 가입자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각각 월 1,000원과 2,000원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동전화 3사 모두가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은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현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139,395원에서 2009년

136,303원으로 2.2% 감소하였으며,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09년 5.9%로 0.6%p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9년 4/4분기 이후에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10년 3/4 분기에는 142,821원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계통신비의 증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사용량 증가와 모바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지출 증가가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Ⅲ-10〉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분기별 가계통신비 추이(명목)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나. 소외계층 통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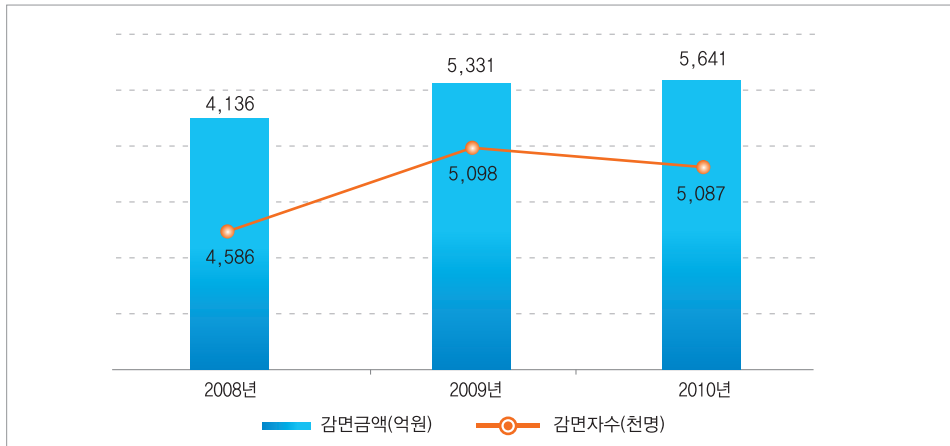
위원회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의무로서 통신요금을 감면해 오고 있다.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는 2000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2008년 10월에는 저소득층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18세 미만·65세 이상)만 감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 폭 35%→50%) 및 차상위 계층(감면폭 35%)까지로 확대(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기존과 같음)되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 1년마다 동일한 절차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감면절차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8월에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감면대상자가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인터넷(oklife.go.kr)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 증명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였다. 또한, 2009년 9월 1일에는 보육료 지원기준 확대에 의해 제외되었던 영유아

및 유아교육 관련 감면대상자에 대해 복지부가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재감면을 시행하였다. 한편, 2010년 4월 1일에는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및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2010년 4월 1일부터는 유선통신 요금감면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기존 : 18세 미만·65세 이상 →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9년 8월 11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2010년 4월 1일부터 유선통신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절차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통신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약 235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약 157만 명), 차상위계층(약 240만 명, 추정) 등 63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유·무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연간 508만 명에 대하여 5,641억 원(2010년)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감면자수도 제도개선 및 대상자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9년 9월부터 감면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Ⅲ-11〉 통신요금 감면자수 및 감면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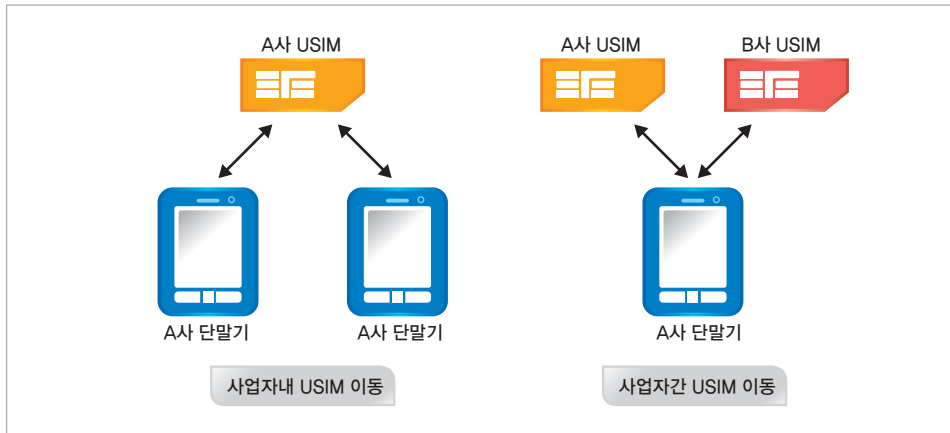
다. USIM 제도 개선

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에 3G에 대해서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갈아 끼우면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도 이용할 수

있는 UISM 개방제도¹⁵⁾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및 중고폰 재활용, 단말기를 이용한 과도한 가입자 유치 및 고착화 해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종속적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15) 2008년 7월, 위원회는 3G 단말기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하고, KT와 SK텔레콤이 USIM 개방을 발표하여 사업자 내부 USIM 이동, 사업자간 USIM 이동을 모두 허용.

〈그림 III-12〉 USIM 이동 유형



주 : 사업자내 USIM이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가능하나, 사업자간 USIM 이동은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이 필요

그러나 비교적 자리를 잡고 있는 같은 사업자내 USIM 이동과는 달리 사업자간 이동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USIM 이동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SK텔레콤과 KT에 대해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6.10)하였다. 즉, SK텔레콤과 KT가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USIM Lock 설정 행위 등을 통해 이용자의 USIM 이동을 제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의 이러한 시정조치는 2008년 USIM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 취지에서 벗어난 WCDMA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USIM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라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USIM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

〈표 III-55〉 USIM 이동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사간	SK텔레콤	31,000	229,000	812,000
	KT	84,000	427,000	1,250,000
	계	115,000	656,000	2,062,000
타사간	SK텔레콤 → KT	61	402	11,000
	KT → SK텔레콤	45	194	17,000
	계	106	596	28,000

주 : 1. 자사간 이동은 2008년 4월 이후, 타사간 이동은 2008년 7월 이후 시작

2. 자료는 누계로 표시

3. SK텔레콤 → KT : SK텔레콤 단말에 KT USIM을 장착하여 사용한 것을 의미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선불통화 보증보험 제도 개선

선불통화 보증보험은 국제전화 선불카드 등 선불통화서비스¹⁶⁾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태로 인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 금액을 배상하기 위해 선불통화 발행총액¹⁷⁾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과도한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하고 선불통화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

16) 선불통화서비스는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7) 사업자가 일정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사업자는 발행총액 범위 안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서비스를 재발행할 수 있음.

험' 가입금액을 합리화하였다. 2010년 12월 24일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기준(고시)'를 제정하면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지정하고, KAIT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 보험금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특히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무조건 발행금액의 100%를 보험으로 가입해야 했던 것을 선불통화사업자의 자산규모, 선불통화서비스 발행규모 등을 고려해 선불통화서비스 발행예정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면서, 재무 건전성 등이 좋은 사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 부담을 낮췄다.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 개선 추진

가. 통신시장 규제완화

1) 진입규제 완화(역무 통합)

종전에는 기간통신역무를 세분화하여 이중 특정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가 다른 역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은 역무별 변경허가제도는 개별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통신시장에 존재하는 사업자의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통신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통신망의 광대역화, All-IP화 등에 따라 역무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역무별 변경허가제도는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지연시키고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기간통신 역무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분화된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역무 3가지로 통합·축소한 바 있으며, 이들 모두를 하나의 기간통신역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허가만을 획득하면 모든 기간통신서비스를 추가적인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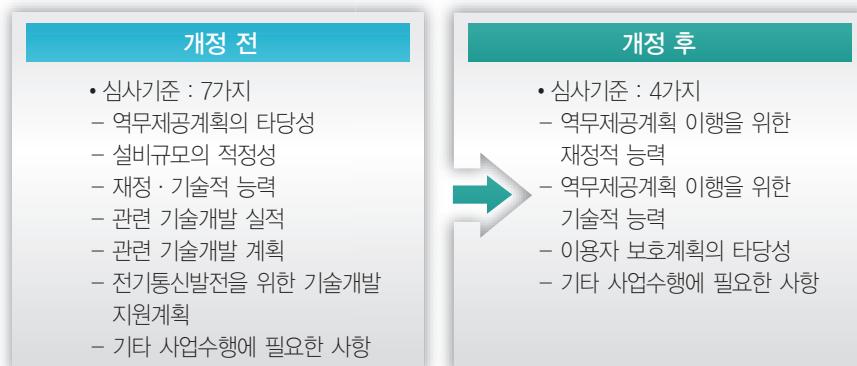
〈그림 Ⅲ-13〉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개정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심사 기준을 종전의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등에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등으로 정비하였다.

〈그림 Ⅲ-14〉 허가심사기준의 변화



이처럼 기간통신사업 역무통합 및 허가단위의 단일화는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허가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확립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2) 이용약관인가 규제(요금인가제) 완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요금 및 조건을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 민간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사적 계약임을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과점이 발생하기 쉬운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부당한 요금이나 조건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통신이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운영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장규모가 위원회가 정한 시장규모를 상회하는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는 KT와 SK텔레콤을 이용약관의 인가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부당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가제도가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책정과 이를 통한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인하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서비스에 해당하여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금인하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인가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요금인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 간 차등 해소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여 시장진입 절차,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의무 등에 있어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이 갖는 국가적 중요성과 공익성 등으로 인하여 별정통신사업자나 부

가통신사업자에 비하여 진입,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등에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한편,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대가에서 원가 기반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IP화의 진전 및 정부의 통신 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른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자간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외국 사업자의 국내 진입 시 별정 및 부가통신 등 서비스 기반 사업자로 진입이 용이한데, 네트워크 접근은 중요한 진입 조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접속조건의 공개와 투명화, 서비스기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접속조건의 적용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표 Ⅲ-56〉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간 차등 해소를 위한 법개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사업법 (법률 제9919호) 제29조 5항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삭제
상호접속기준고시 제47조 (접속이용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의 IWF, PDSN, GGSN에 접속하는 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접속제공사업자의 IWF, PDSN, GGSN에 접속하는 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이에 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 간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에 따른 차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3월에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5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 상호접속기준 고시의 제47조(접속이용사업자)가 개정되는 등 하위

법령안 정비도 일부 이루어졌다.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하위 법령안의 정비가 예상되며, 설비제공,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등 통신 규제 제도 운용에서도 실질적인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될 것이다.

나. 상호접속제도 개선

12월 28일 위원회는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요율을 확정 발표하고, 이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상호접속료 결정과 접속료 정책의 주요 내용은 2013년부터 이동전화 단일 접속료 적용, 유선 부문의 차세대망 구축 유인 부여,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 등으로 동등경쟁 여건 조성으로 요약된다.

먼저,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 동안 시행해 온 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 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이동통신 선후발 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 정책은 후발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반면,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 여건이 나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일 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2011년 적용되는 이동통신 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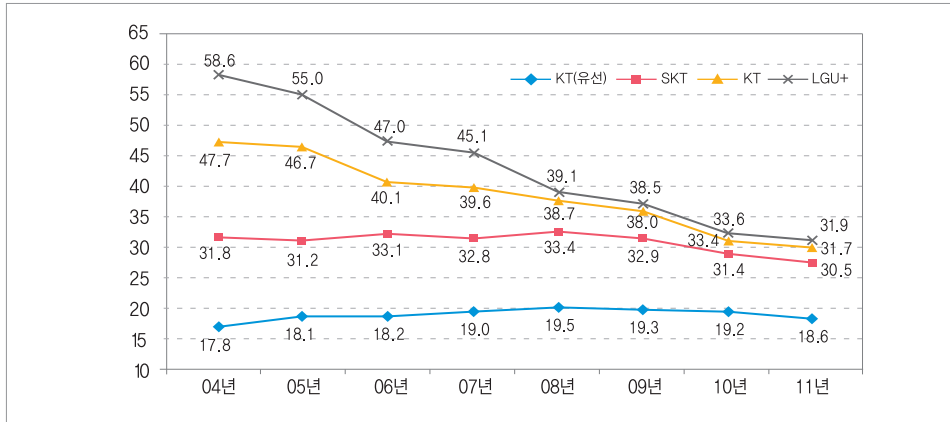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로 유선전화 사업자간의 접속료 부담은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다음으로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하여 소폭 인하되었다. 또한,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접속료를 산정하였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2009년 7.7원에서 2010년에 10.5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전화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에 대한 단일접속료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림 Ⅲ-15〉 국내 유무선 접속료 변화 추이

(단위 : 원/분)



한편, 위원회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9.23)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등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 도매제공(재판매) 제도 도입

통신서비스의 경우 필수설비, 매물비용, 규

모 및 범위의 경제, 망 외부효과, 전환비용 등 구조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됨으로서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을 통해 진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현행 별정통신사업 제도 하에서는 설비나 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관련 설비의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설비나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매제공 도입을 추진하여 도매제공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2010년 3월 22일 공포되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도매제공 제도 시행을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과 재판매사업자의 진입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전년도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매제공을 받아 재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한국케이بل텔레콤,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에스로밍 등 4개 사업자가 MVNO로 등록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2010년 11월 23일 MVNO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매제공 대상을 지정하고 도매제공 협정 체결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기준(고시)을 제정하였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도매제공 의무대상으로는 2G와 3G를 모두 포함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데이터, SMS)를 규정하였으며, 도매대가는 MVNO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가 SK텔레콤 및 MVNO와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조건과 관련하여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소비를 제한하였으며,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SK텔레콤이 허용토록 규정하였다. 한편, SK텔레콤은 도매제공 대가,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MVNO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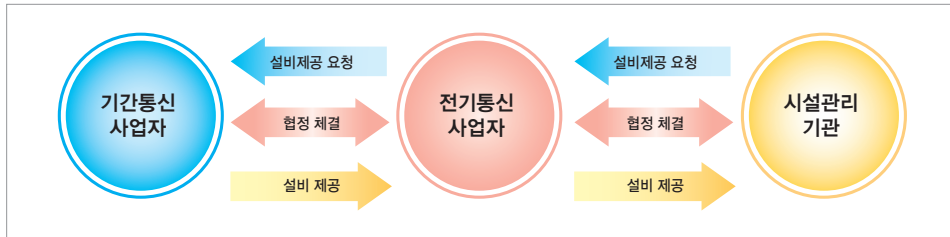
위원회는 MVNO(재판매)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MVN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MVNO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량구매할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설비제공제도 개선

설비제공제도는 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통신설비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일부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관련고시를 2003년 11월 개정하여 설비의 필수성 및 애로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지정하였다. 이에 따

라 KT에게 전주, 관로, 가입자구간 케이블 등에 대하여 제공의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림 Ⅲ-16〉 설비제공 개념도



한편, 위원회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의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시설

관리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전주, 관로 등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

〈표 Ⅲ-57〉 설비제공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설비제공자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제공대상설비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 및 국사 등 시설관리기관 시설
의무제공대상 사업자(기관)	KT	KT,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공기업,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3)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앱스토어 합의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스토어(App store)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

는 가운데, 애플·구글 등이 앱스토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콘텐츠 부족과 뒤늦은 대응으로 앱스토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보다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개별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동통신 3사, 삼성·LG전자간 논의를 통해 구축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통합 앱스토어는 단일화된 운용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별로 등록하지 않고 콘텐츠 등록·인증·검수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개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의 안드로이드(구글), 윈도모바일(MS), 바다(삼성) 등 모든 개방형 OS(Operation System)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WAC(Wholesale App Community)¹⁸⁾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준을 국내 통합 앱스토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편리한 개발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통신사 및 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가. 와이브로 사업 이행계획 점검

와이브로(WiBro : Wireless Broadband Internet)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독자기술표준을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기술로서 2007년 6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가 개시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3G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와이브로는 WCDMA 등 다른 3G 기술표준과 경쟁을 통해 해외 3G 이동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기술진화를 통해 4G 기술표준 획득도 가능하게 되었다.

WiBro 서비스는 초기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하여 점차 5대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0월에는 위원회가 2008년까지의 WiBro사업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허가조건을 이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WiBro 사업자가 새로 제출한 이행계획은 2010년 2월에 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아울러 WiBro 활성화 정책방

18)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도매시장을 의미한다. SK텔레콤과 KT, AT&T, Verizon Wireless, Sprint Corporation, China Mobile, NTT DoCoMo, Softbank Mobile, Vodafone, France Telecom, Deutsche Telekom, Telefónica 등 전세계의 24개 주요 통신사들과 삼성전자, LG전자, Sony Ericsson 등의 제조업체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

안(2009년 10월 발표)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추세 및 장비조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폭의 변경(8.75MHz → 10MHz)이 허용되었으며,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자의 희망 주파수 대역(2.5GHz)에 대한 우선 할당 등도 추진되었다.

WiBro 사업자의 2010년 투자 금액은 총

4,300억 원 규모로 2010년 말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총 1조 8,471억 원이다. 2010년 말까지 WiBro 투자 이행계획 상의 투자 목표 금액의 대부분은 이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행계획에 따라 2011년 상반기까지 투자가 완료되면 최종 이행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58〉 국내 와이브로 투자 실적

구분	2006년~2009년	2011년	누계	비 고 (2011년 이행목표)
KT	7,323억원	3,100억원	10,423억원	10,431억원
SK텔레콤	6,849억원	1,199억원	8,048억원	8,250억원

주파수 대역폭 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KT는 2010년 상반기에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한 관련 장비 교체를 본격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5대 광역시 및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에 대한 WiBro 서비스 망 구축을 완료하고 개통하였다.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망을 구축하고 있는 SK텔레콤은 2010년도에 5대 광역시 커버리지 확대를 중점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WiBro서비스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움직임도 있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2010년 6월

에 WiBro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심사 결과 법정 기준 점수 미달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모바일인터넷은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여 2010년 11월에 또다시 허가를 신청하였다.

2010년 말 WiBro사업 이행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2011년 상반기 전국 82개시 망 구축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면 WiBro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마케팅비 상한제(투자활성화)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 U+)는 3월 1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0년 마케팅비를 유선과 무선 부문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당초 CEO 합의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5월 13일 KT, SK텔레콤, LG U+,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 마케팅비 절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첫째,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을 분리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둘째,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1,000억 원까지는 유무선을 이동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를 고려했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셋째,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한다.

넷째,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2010년 주요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마케팅비 집행실적은 연간 기준 7.5조 원(광고선전비 제외)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유선부문 마케팅비 비율은 평균 11.7%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할 것으로 가집계 되고, 무선 부문의 마케팅비 비율은 25.1%로 기준을 초과하였다.

무선부문에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못한 주원인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이 가속화되고 이동통신의 신규 가입자가 2009년 대비 28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마케팅비에 대한 절대적 비용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도입 이전(1~5월) 무선부문 마케팅비 비

율은 26.4%이었으나, 도입 이후는 24.3%로 2.1%p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마케팅비

절감 가이드라인 설정이 마케팅비 상승 억제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59〉 2010년 통신사별 유·무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실적

구 분	SKT群	KT	LG U+	평균
무선 부문	24.2%	26.6%	25.6%	25.10%
유선 부문	17.2%	8.5%	16.9%	11.70%

한편, 2010년 통신4사의 연간 투자규모는 6조 4천억 원으로 당초 투자계획(5조 9,628억 원)의 107.4%를 투자 집행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은 특히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및 초고속인터넷 품

질향상 등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였다. KT는 3G, WiBro 네트워크 및 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3조 57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SK텔레콤은 1조 8,450억 원, SK브로드밴드 3,345억 원, LG U+는 11,645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표 Ⅲ-60〉 통신사업자별 2010년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 U+	합계
투자계획	2010년 투자계획	28,000	17,500	3,000	11,128	59,628
투자실적	2010년 투자실적	30,572	18,450	3,345	11,645	64,012
	(연간계획대비)	(109.2%)	(105.4%)	(111.5%)	(104.6%)	(107.4%)
* 2009년 투자실적		29,587	17,690	5,399	12,456	65,132

다.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지원

1) FMC 단일번호 부여 (070 → 010)

FMC(Fixed Mobile Convergence)는 유·무선 융합서비스로 하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동전화망 지역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되, 무선랜(Wi-Fi) 지역에서는 이동전화 대신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FMC 서비스 이용자는 이동전화(010)로 걸 때와 인터넷전화(070)로 걸 때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특히, FMC 서비스 이용자가 무선랜 지역을 벗어나면 인터넷전화로는 수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8월 20일 FMC단말기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때,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되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번 ‘FMC 단일번호 서비스’ 시행으로 FMC 서비스 이용자는 이동전화 번호(010)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무선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FMC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전화 통화비중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약 2만2천원의 통신비가 절감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전화 사용여건이 개선되어 통화비중이 늘어나면 통신비가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기존처럼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010 번호통합

지난 2004년 구 정보통신부는 ‘010 통합비율이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010 번호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 010 이용률이 80%를 넘어섬에 따라 그간의 번호정책, 변화된 정책여건,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9월에 2G 종료시점에 010 번호통합을 추진하기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1X 이용자도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상 문제 등으로 01X번호 유지를 희망하던 이용자들도 010번호로 이동했을 때의 불편을 상당 부분 덜게 되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용자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01X 이용자도 조속히 3G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01X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2G에서 3G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 것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표 Ⅲ-61〉 사업자별 010전환율

(단위 : 천명, %)

구분	계	비율	010가입자	비율	01X가입자	비율
계	50,767	100	43,402	85.5	7,365	14.5
SK텔레콤	25,705	100	20,477	79.7	5,228	20.3
KT	16,040	100	15,418	96.1	622	3.9
LG U+	9,022	100	7,507	83.2	1,515	16.8

* 2010년 12월 말 기준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010 번호통합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2010년 2월에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12월말 현재 01X이용자가 737만 명에 달해 현 시점에서 강제 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매년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약 370만 명 수준으로 2G망 서비스 종료 시점에는 대부분의 01X 이용자가 010으로 전

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3G와 4G 등 진화된 서비스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시기를 2018년 경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허용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통신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01X이용자는 3G로 전환할 때 2개 서비스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01X 번호의 010변경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01X 이용자의 식별번호는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010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최대 3년 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G로의 번호이동

은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위해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 이용자가 3G로 전환한 시점부터 3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는 일부 부가서비스를 010 번호로 이용해야 한다.

〈표 III-62〉 01X 3G 번호이동과 01X번호 표시서비스 비교

구분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01X번호 표시서비스
대상	3G 전환 01X 이용자	
제공 기간 (사업자)	- KT 2G 종료 기준(3년) - 차기 사업자 2G 종료 기준(2년)	2011년 1월 1일 ~ 2G 종료시점
이용 기간 (이용자)	상동	3G 전환시점부터 이용자별로 3년 간

이번 010번호통합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010 번호통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01X 이용자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보급과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010 번호통합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는 번호통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010 번호통합의 장점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 앞으로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들은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이동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무선이 통합된 통신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와 하나의 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동통신망의 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G망을 이용하는 01X 이용자의 번호변경 부담이 완화돼 3G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2G 서비스를 일찍 종료하면 해당 망 유지비용을 4G 등 차세대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가. 차세대 주파수 배정 및 4G 국제표준화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는 2008년 28만 대에서 2010년 약 680만 대로 2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역시 2009년 대비 100~3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한 무선 트래픽 급증은 주파수에 대한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신규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2005년 이후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 대역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환경에 대응하여 위원회는 첫째로,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신규 할당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2월,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과 그에 따른 주파수 할당공고 및 할당대가 산정·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800/900MHz 및 2.1GHz 대역에서 이동통신 용도로 총 60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신규 주파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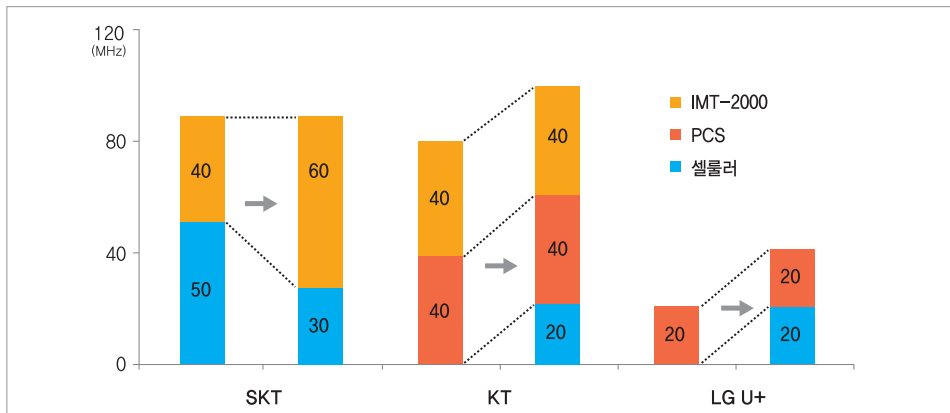
〈표Ⅲ-63〉 신규 주파수할당 주요 내용 및 선정결과

구 분	주요 내용
할당대상 주파수	- 800/900MHz 대역 : 839~849MHz / 884~894MHz (20MHz), 905~915MHz / 950~960MHz (20MHz) - 2.1GHz 대역 : 1,920~1,940MHz, 2,110~2,130MHz 중 각 10MHz (20MHz)
할당에 관한 사항	- (할당방식)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 (이용기간) 800/900MHz 대역 : 2011.7.1 ~ 2021.6.30(10년), 2.1GHz : 할당절차 완료 후 즉시 ~ 2016.12.31까지 -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일정비율
할당조건	- (기술방식) 3G이상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 4G 기술방식은 승인요건에 무관하게 활용 가능 - (커버리지) 동일대역의 평균 기지국 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 망 구축 의무부과 및 미 이행시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예정
선정결과	- 800MHz 대역 : KT, 900MHz 대역 : LG U+, 2.1GHz 대역 : SK텔레콤

이처럼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를 적기에 신규 할당함으로써, 기술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방식과 관련해서는 3G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을 허용하고 있으며, 4G 기술방식은 승인요건에 무관하게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무선트래픽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차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파수 특성이 우수한 800/900MHz 대역이 후발사업자에게 할당되었다는 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신규 주파수 할당에 따른 할당대가 부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17〉 신규 주파수할당에 따른 사업자별 주파수 현황



둘째로, 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일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제표준

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관련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ITU의 4G 후보기술 평가와 표

준안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미국의 전기전자 학회 등 국제표준화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TU의 이동통신 국제 표준회의(2010.6.,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해외표준화 기구와 함께 제안한 차세대 이동통신 후보기술(LTE-Advanced, IEEE 802.16m (WiBro-Evolution)) 모두가 4세대(4G) 이동통신 국제표준 평가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써 향후 ITU의 국제표준 절차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세부 표준규격을 개발한 후, 2012년 2월에는 4G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ITU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내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9월, 제9차 아·태지역 무선통신 포럼(AWF, Asia Pacific Telecommunity Wireless Forum) 회의¹⁹⁾를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 정책에 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아·태지역 공동의 입장으로 반영하여 ITU 등 국제기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전파관리 업체의 아·태지역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Ⅲ-64〉 아·태지역 무선통신 포럼(AWF) 회의 개최

구 분	주요 내용
일시 및 참석자	- 2010년 9월 12일 ~ 16일, 대한민국 서울 - APT 34개 회원국 및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 등 250여 명 참석
내용	- 아·태지역의 ITU-R 대응과 무선통신 전반에 걸친 표준화 및 주파수 이용 협력 기능을 수행 - 스펙트럼 공유, IMT 기술, 유무선/방통 융합 기술, 최신 위성·ITS 기술 등에 관한 연구 진행
효과	- 우리나라 주파수 이용 정책을 아·태지역 공동 입장으로 적극 반영하고, 향후 아·태지역 전파관리 및 방송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선도 - 주파수자원분석 시스템,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등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국내 기술 홍보로 아·태지역 수출기반 확대

19) AWF는 아·태지역의 국가들의 무선통신 기술 협력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음.

나. 차세대방송 기반구축

최근 디지털 방송시장은 IPTV, 스마트폰·태블릿, 3D·스마트TV의 등장으로 전파방송에 기반한 전통적인 TV 개념을 바꾸고 있으며 차세대 방송은 실감화, 모바일화, 양방향화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방송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학·연과 협력하여 3DTV 등 차세대방송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2009년 12월,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실시 및 국내 3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DTV 실험방송 추진단’ 구성하였고 산하에 ‘3DTV 실험방송 TF팀’을 두어 고화질 3DTV 방송의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년 2월에는 ‘3DTV 방송 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3DTV 방송 관련 기술규격·제품 서비스 동향,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하고 있으며 5월에는 ‘3D 방송 체험관’을 과학기술회관에 오픈해 누구나 3D 방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DTV 실험방송 추진단 출범 및 3DTV 방송진흥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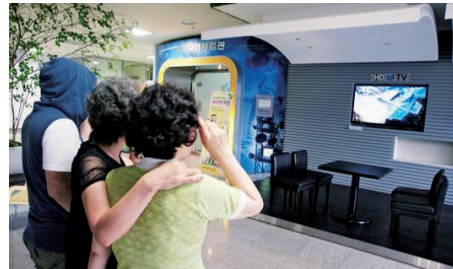
이와 같이 3DTV 방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2010년 10월 세계 최초로 HD급 3DTV 방송기술을 개발하여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HD급

3DTV 방송기술은 추가 주파수 필요 없이 기존 방송 채널에서 HD급 3D 방송과 2D 방송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국제 표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동안 코엑스 주행사장에 ‘3DTV Pavilion’을 개관하여 세계 최초 HD급 3DTV 실험방송을 선보였으며 각국

정부관계자와 외신기자 등 1,000여명이 참관하여 한국의 앞선 3DTV 방송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세계 최초 3DTV 실험방송 개시 및 G20 정상회의 3DTV Pavilion 개관〉



또한, 위원회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3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3D 시청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 5월, 3D 분야 산·학·연, 공학, 심리학 및 의료계(안과, 신경과, 정신과) 등 각 계 전문가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3D 영상의 생체적 불편감 유발 요인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전문적 지식 기반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국내에서 처음 ‘3D

영상 안전성 세미나’를 개최하여 3D 안전성에 관한 각 계의 관심을 높였으며 12월에는 그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는 3DTV 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3D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D 영상 안전성 세미나 및 3D 영상 안전성 권고안 발표〉



세계 3DTV 시장은 2010년 320만 대에서 2014년에 9,000만 대로 약 28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3D 방송 산업에서 콘텐츠, 방송장비·기기, S/W,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기존 지상파 DMB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동일 채널에서 전송 용량을 최대 2배까지 증대시키는 차세대 지상파 DMB(AT-DMB; Advanced Terrestrial DMB) 기술개발을 마치고 2010년 11월 대구 앞산에 송신시스템을 설치하여 AT-DMB 실

험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AT-DMB 실험방송 검증 및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10년 5월에 국내 DMB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AT-DMB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방송사와 가전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고 있다. AT-DMB가 상용화될 경우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결합하여 고품질 모바일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n e-seg, DVB-H, FLO 등 해외 방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DMB 방송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T-DMB 추진 협의회 및 대구 앞산 송신사이트〉



아울러, 위원회는 국산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수요창출 및 차세대 방송장비 시장 선점을 위해 2010년 11월 국내 방송장비의 품질을 검증하는 전문인증기관인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였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는 ‘기술협의회’를 통해 전체 센터운영 및 인증대상 방송장비를 선정하고, 산하에 시험규격을 개발하는 ‘시험규격개발 위원회’와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인증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주요 업무는 시험장비 및 전문 시험인

력을 지원하는 개발 지원 시험, 방송장비 간 호환성을 확인하는 상호 운용성 시험, 우수 제품과 성능을 비교하는 벤치마크 시험, 방송장비의 표준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시험 등이 있다. 인증센터 개소를 통해 HD 방송장비에 대한 품질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3DTV, AT-DMB,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 등의 차세대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시험인증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 및 내부 시설〉



다. 전파자원의 이용활성화 및 산업 활성화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미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용주파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미래 전파수요에 대비하고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주파수 신규분배 및 무선설비 규제 완화를 통해 전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위성 주파수 및 관련 기

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같은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는 먼저 전파 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산업체 등의 신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수요조사 창구 (www.spectrum.or.kr)를 통해 수시로 제·개정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주파수 및 기술 정책연구반을 운영하여 주파수 분배·할당방안 및 기술기준 개정방안을 마

련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Wi-Fi와 같이 누구나 TV, PC 등을 선 없이 연결하여 고속 데이터 통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력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유럽 등 해외기준을 고려하여 UWB(Ultra Wide Band) 대역의 간섭회피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비면허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Wi-Fi보다 10배 이상 빠른 Gbps급 통신 환경과 선 없는 홈네트워크 구축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표 III-65〉 주파수 분배, 할당 및 기술기준 제·개정 건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2	2	4	6

둘째,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WiBr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G 및 WiBro용 주파수를 확대하였다. 2.1GHz대 잔여주파수 할당 및 2.5GHz대 WiBro용 주파수 신규분배 등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위성망 조정회의, ITU 국제등록을 통하여 방송·통신 위성용 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하고 미래 위성용 주파수 이용에 대비하였다. 무궁화 위성 등 현재 운용 중인 위성망을 보호하고 신규 위성망의 원활한 국제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혼신이 예상되

는 위성망과 간섭 분석 및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정 회의 또는 서신을 통해 사전 혼신을 제거하였다.

넷째, 일반 국민의 전파이용 및 국방·외교 목적 등의 용도로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파수지정 및 사용승인을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 및 무선국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0년에 15건의 주파수 지정을 하였다. 국방·외교·국제행사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에 55건의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였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일반적인 주파수 이용 허가절차와 달리 주파수 분배현황을 고려하여 이용가능성 및

용도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인접 주파수간 혼·간섭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는 주파수 수요증가에 적기에 대응하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파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F1 등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문화행사와 국가안보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되는 주파수를 공급하여 무선설비 이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Ⅲ-66〉 주파수 지정, 사용승인 및 국제등록·조정 건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파수 지정 건수	10	10	16	15
주파수 사용승인 건수	50	45	47	55
국제등록 및 조정 건수	47	40	54	55

또한,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여 국산 위성통신 시스템의 기술을 검증하고, 위성항법 지상국시스템 및 차세대 탐색구조 단말기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2010년 6월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3DTV, UHD TV 등 차세대 위성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자원인 Ka(20~30GHz) 대역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신위성의 설계·제작·시험 등 전 과정을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세계 10번째로 정지궤도 통신 위성 자체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과 6개 산업체가 협력해 통신 탑재체 부품의 81%를 국산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통신위성의 기술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통신 위성 1기의 부가가치는 자동차 290대 제작에 해당함).

통신위성 기술은 극저온, 고온, 고진공 등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고난도 기술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중국 등 만이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천리안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위성방송 수신기(STB, Set Top Box)와 위성통신 단말기(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등 관련 제품 수출이 기대되며, 20GHz 이상의 초고주파 부품 및 전송 시스템 등 제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져 전자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천리안위성은 각종 검사와 보정작업을 거쳐 향후 국내최초 실험위성으로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Ka대역의 전파특성에 적합한 전송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베드용으로도 개발해 3DTV, UHDTV, 위성방송 수신기 등의 전송시험과 성능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성서비스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

회는 앞으로도 차세대 위성 서비스 및 관련 기술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지상파DMB는 2007년 12월에 ITU 표준으로 채택되어 해외 3개국 본방송과 8개국 실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적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2009년도 지원 대상국이었던 캄보디아 정부(공보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지상파 DMB 방송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주관방송사에서 상용방송으로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10년에 지원 대상 후보국인 멕시코, 남아공 등 11개국의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모바일TV 환경, 지상파 DMB 관심도 및 도입의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소·방송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국으로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을 선정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지상파DMB 시범서비스 개시를 기반으로 한국의 지상파DMB 기술이 베트남의 모바일방송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지상파DMB 상용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국내 관련시스템·장비 및 단말기의 동남아 시장진출 확대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4인치(35.56cm) 정도의 넓은 화면에서 고화질의 TV 방송을 시청하면서 방송 장면에 대한 정보검색도 가능한 차세대 지상파DMB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0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1993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국 특허청과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출원된 차세대 지상파 DMB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전체 492건의 특허 중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특허가 44.5%(219건)

를 차지하고, 이어 일본 35.7%(176건), 미국 12.6%(62건), 유럽 7.1%(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상파 DMB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지상파DMB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해외확산을 통해 국내 방송 산업의 성장 및 장비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67〉 차세대 지상파 DMB 관련 특허 현황

국가	전체특허(건)	국가별 점유율(%)	국내기업과 연구소의 특허(건)	점유율(%)
한국	219	44.5	204	93.2
일본	176	35.7	10	5.7
미국	62	12.6	21	33.9
유럽	35	7.1	18	51.4
합계	492	100	253	51.4

출처 : 특허청 (2010년 10월)

더불어 방송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라디오 비교실험방송 및 DTV 분산주파수망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디지털라디오 4개방식(HD Radio, DRM+, DAB, DAB+)에 대한 실험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실험방송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비교실험 결과 등을

기초로 향후 국내 디지털라디오 기술방식 결정 등 라디오(FM)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분산중계기를 디지털TV 방송망에 적용할 때 필요한 기술적 고려요소 도출,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한 활용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DTV 분산주파수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파환경 분석 및 기존

방송망과의 서비스 품질차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라. 전파자원 재개발 및 손실보상

주파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미사용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존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활용되고 있다. 5GHz 이하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은 이미 이동통신, 공공목적 및 소출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를 타 대역으로 이전 시켜야 하는데, 이 때 이에 따른 손실보상이 동반된다. 요컨대 4G 등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주파수 회수·재배치²⁰⁾ 및 손실보상 등과 같은 기존 주파수 대역의 재개발 기반구축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원회는 먼저 기존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주파수 수요 및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역의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절차를 거쳐서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에 이미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주파수 분배표,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실제 회수·재배치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공공업무 및 FM방송중계용 등으로 사용 중인 900MHz대역의 20MHz폭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950 ~ 959MHz대역 중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를 1.7GHz 대역으로 재배치하는데 따른 손실보상이 진행되었다.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950 ~ 959MHz대역에서 운영 중인 무선국 시설로서 KBS, MBC, SBS 등 전국 22개 시설자가 운영 중인 총 48개 무선국이 해당하였다. 900MHz 대역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보상금 지급은 재배치 이행확인을 한 이후에 지급하였다.

20) 주파수 회수·재배치란 특정한 용도로 사용 중인 주파수를 국가에 귀속(회수)시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용도를 변경하여 가용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표 III-68〉 900MHz 대역의 손실보상 현황

주파수 대역	시설자 현황	재배치 주파수	재배치 완료일
950~959MHz	22개 시설자 (48개 무선국)	1.7GHz 대역	2011년 3월 31일

※ 시설자 : KBS, SBS, TBN, TBS, 경남방송, 극동방송, 대구방송, 14개 지역MBC, 공공용

한편 위원회는 산업용 무전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대역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6GHz 이상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 조사·확인 자료를 기초로 국내외 주파수 수요, 재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주파수 자원 재개발 기반 구축은 주파수 수요를 고려한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향후 주파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 자료를 기초로 중점관리 대상 주파수 대역을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신규 이용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주파수 확보 및 보상금액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가. 전파법령 정비를 통한 시장기반 규제체계 마련

위원회는 2010년 7월 「전파법」 개정으로 시장 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파수 할당 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에는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준에 맞는 무선국에 대해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넷째, 환경 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시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유인 혜택을 마련하여 전파이용 환경 보호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정부주도형 강제인증 중

심이었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를 시장 및 이용자 주도형의 국제 추세에 맞도록 재편하였다. 여섯째, 특별재난지역의 복

구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발생 지역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I-69〉 2010년도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경매제 도입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시장 기능을 통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 근거 마련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전파 혼·간섭 우려가 적은 무선국은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DMB용 무선국 신고제 적용	-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 자연환경 및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 기업친화적·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체제로 개선 · 인증관련 법령 전파법으로 통합, 절차 간소화 및 잠정인증제 도입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 유형을 재분류
전파사용료 감면	-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나.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제도는 기간통신사업, 전송망사업 등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과 심사를 통해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서비스의 변화 등을 정부가 예측해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점차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위원회는 「전파법」 개정을 통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시장기능을 통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파수 할당제도는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산정기준의 법제화, 주파수 임대 허용 등 지속적으로 개

선되어 왔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라 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 기반 조성에 기여할

〈표 Ⅲ-70〉 주파수할당제도 개선 현황

2000년	2005년	2010년
- 주파수 할당제도 도입 · 대가할당(예상 매출액의 3% 부과) · 심사할당(할당대가 없음) - 대가할당의 경우 주파수 양도 가능	- 대가할당 산정기준 법제화 및 이용권 확대 · 해당 서비스 전체 주파수 및 전파특성 고려 · 예상 및 실제 매출액 고려 - 대가할당은 주파수 임대 허용	- 주파수 할당제도 다양화 · 가격경쟁 방식의 대가할당 제도(경매제) 도입 · 경매 할당 시 별도의 심사 기준 규정 없음 · 최저경쟁가격 설정 규정 신설

국내 주파수 할당제도는 크게 심사할당과 대가할당으로 구분되고, 대가할당은 다시 기존의 행정적 방식과 시장기반의 경매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동통신 등과 같은 기간통신 사업용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향후 이동통신 등 사업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우선 주파수 경매방식 적용을 추진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적 방식에 의한 대가할당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 Ⅲ-71〉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제도 현황

구분	심사할당	대가할당	
		행정적 방식	경매 방식
개념	- 할당신청의 경우, 이용대가 부과 없이, 심사를 통해 적정 이용자 선정	- 할당 신청의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이용자 선정 및 이용대가(정부 산정) 부과 - 기존 대가할당 방식	- 할당 신청기간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정 이용자 선정 및 이용대가 결정 - 2010년 신규 도입
이용기간	10년 범위 이내에서 결정	20년 범위 이내에서 결정	
주파수 임대	허용하지 않음	주파수 할당 이후 일정기간(3년) 경과 후 허용	

대가할당 관련 심사기준은 기존 심사할당의 심사기준²¹⁾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파수 경매방식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파법」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위하여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파수 경매방식 적용의 경우에도 기간통신 사업자의 자격, 독과점 방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가격의 하한을 의미하는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유사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경매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은 큰 의미가 없으나, 경매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가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하

는 국가에서는 해당 서비스 시장규모, 기존 주파수 경매가, 회수·재배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가 아닌 기존의 행정적 방식의 대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반으로 대가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부진할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짐으로 주파수를 단순 보유하여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재할당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주파수 대역과의 형평성 및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향후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시장기능에 의한 사업자의 진입 및 주파수 할당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가할당 산정기준의 개선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할당대가가 낮게 책정되는 점을 방지하고, 서비스별 또는 대역별로 할당대가가 산정되므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더불어, 위원회는 2011년 6월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셀룰러, PCS), 주파수공용통신, 무

2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선호출 등 9개 서비스 용도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주파수 재할당 관련하여 주파수의 회수, 할당방식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셀룰러와 PCS 주파수는 2011년 6월 재할당 당시 기존의 심사할당에서 대가할당으로 변경되고, KT의 1.8GHz 대역의 40MHz폭 중 최소 20MHz폭을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파수 공용통신, 무선호출, 무

선데이터 등 나머지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 방식을 유지하게 되나, 심사할당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짧게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하여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1년 3월에 재할당 신청을 받고, 재할당 심사를 거쳐 재할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표 Ⅲ-72〉 2011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현황

서비스명	대상 주파수 대역	사업자
이동통신(셀룰러, PCS)	800MHz 대역	SK텔레콤
	1.8GHz 대역	KT, LG U+
주파수공용통신(TRS)	800MHz대역	케이티파워텔, 티온텔레콤, 파워텔TRS, 대성글로벌네트웍, 케이비텔레콤, 제주TRS
무선호출	320/900MHz대역	서울이동통신
	160/320MHz대역	리얼텔레콤
	320MHz대역	아이즈비전, 센티스
무선데이터통신	900MHz대역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가입자회선(BWLL)	25GHz대역	KT, SK브로드밴드, LG U+
위성휴대통신(GMPCS)	1.6/2.4GHz대역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1.5/1.6GHz대역	AP시스템
	138/150MHz대역	코리아오브컴
해사위성통신(INMARSAT)	1.5/1.6GHz대역	KT
무궁화위성	11~30GHz대역	KT
선박무선통신	200MHz대역	KT

이러한 위원회의 재할당 정책방향에 따라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 등 틈새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분간 심사할당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틈새서비스 가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T의 1.8GHz대역 20MHz폭을 회수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7월 「전파법」 개정을 통해 추가할당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을 적용하여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처럼 추가할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파수 수요증가에 따라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중점 추진한 사안으로는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정비, 무선국 표본검사 제도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위원회는 전파관리 비용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및 비영리 방송국,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사용료 규정은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으며, 2010년에도 전파사용료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환경 친화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계수를 신설하였다. 이는 사업자의 무선국이 자연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의 비율에 따라 1~10% 범위 이내에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친화 감면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통신사업자는 연간 약 64억 원 정도의 전파사용료 감면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둘째로, 위성휴대통신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다. 위성휴대통신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해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타 가입자 대상의 기간통신 역무는 가입자당 분기별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대상 기간통신 역무의 산정기준 일원화를 위하여 위성휴대통신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분기별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공공복리용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우선 산발 등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 및 소형 생계형 어선의 조

난방지를 위한 156MHz대역 선박 무선국 등을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넷째로, 전파사용료 징수기간을 타 공과금 납부일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기존 전파사용료는 매년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기간은 가입자 증가분 확인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분기 종료 후 2개월 중순(7일 ~ 20일)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공과금은 매월 하순에 납부함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납부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파사용료 징수기간을 타 공과금 납부일과 유사하게 납부 해당월의 하순(18일 ~ 31일)으로 개정하였다.

〈표 Ⅲ-73〉 2010년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산정기준 정비	- 무선국 시설자가 환경 친화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 환경 친화적 무선국 비율을 고려한 감면계수 신설 - 위성휴대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기준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단가 : 가입자당 500원(분기별) · 데이터 서비스 단가 : 가입자당 80원(분기별)
면제 대상 확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선된 위성방송보조국 -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국 - 소형 생계형 어선의 조난 방지를 위한 선박 무선국(156MHz 대역)
부과절차 정비	- 전파사용료 징수기간을 타 공과금 납부일과 유사하게 변경

2)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방송통신기자재 성능 및 품질 향상, 다양한 융·복합기기의 출현,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 무역협정(FTA)/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시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도입 요구 등 기존의 적합성평가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① 「전기통신 기본법」상의 유선기기(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인증관련 조항을 「전파법」으로 통합하고, ②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파 혼·간섭, 망 위해성, 인명안전 등의 위해 여부 및 기자재의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기기별로 구분되어 있던 인증유형(형식등록·형식검정·형식승인·전자파적합등록)을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으로 재분류하였으며, ③ 복잡한 적합성평가·절차(시험 및 인증)를 간소

화하였다. 그 결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인증 기간 단축 및 인증 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특히,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적합성평가체계로부터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된 민간 주도의 선진국형·시장 친화형 규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④ 적용할 만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응용 기기에 대해 잠정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파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만을 확인한 후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평가기준이 제정된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함께 묶으로써, 잠정인증에 따른 기기 안전의 우려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표 III-7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법령체계	-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으로 일원화
인증유형	- 형식승인 (유선기기) - 형식검정 · 형식등록 (무선기기) - 전자파적합등록 (정보기기)	- 적합인증 (위험정도가 높은 기기) - 적합등록 (위험정도가 낮은 기기)
적합성 평가절차	- 지정시험기관 시험 ⇒ 인증심사 ⇒ 인증서발급	- 적합인증 · 지정시험기관 시험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적합등록(절차 간소화) · 지정시험기관 시험 ⇒ 결과등록 · 자체시험 ⇒ 결과등록
소관업무	- 방송통신위원회 : 관계법령 제 · 개정 - 전파연구소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지정시험기관 : 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 - 중앙전파관리소 : 미인증 기기 조사 · 단속	- 방송통신위원회 : 관계법령 제 · 개정 - 전파연구소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인정기관 : 시험인증기관 평가 - 지정시험기관 : 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 - 중앙전파관리소 : 미인증 기기 조사 · 단속
특징	- 모든 기기는 강제인증 대상 - 대상기기를 용도 · 품목별로 분류 - 시간 및 비용의 많이 소요 - 이중인증을 받는 기기 존재	- 민간자율규제 개념 도입 - 정보기기 등에 SDoC(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등록)도입 - 인정기관 (전문심사기구) 도입 - 잠정인증제도 (신제품) 도입

3)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무선국은 전파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에 의하여 혼신이나 간섭 등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전파발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성능,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디지털화의

진전, 무선설비의 성능향상 등으로 전파 혼신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엄격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원회는 무선국 전수검사 등 전파이용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

안으로 표본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표본검사 적용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 혼·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기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본비율을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고,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불합격률과 상관없이 표본으로 추출되어 검사받은 무선국 중에서 검사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준공검사를 받은 광중계대상 기지국을 기준으로 볼 때, 표본검사 적용으로 시설자는 연간 약 40억 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단파대 수신용 공중선 대체 등 전파감시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장비 및 비품을 보강하고 대체하며, 전파음영지역 해소 및 전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파방송탐지시스템과 안테나를 구축하는 등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생산·유통, 현장조사·단속, 사이버 공간의 유통·판매 감시, 기술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부적합 방송통신기기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연구 지원

방송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파이용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불법무선국·불법정보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에 대한 단속 활동 및 주파수이용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WiBro, DTV, DMB 등 신규 통신서비스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파감시 시설을 고도화하고 이동전파종

제 4 절 |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가. 인터넷상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인터넷상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회적 재난이 예측되는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대규모 국민 생활편익에 관계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사전진단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

1)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방송통신 정보보호 분야 정책자문기구로 2009년 발족한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는 안전인터넷분과, 개인정보보호분과, 클린인터넷분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는 인터넷 정보

보호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외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을 선도하고 주요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을 평가하며 대내외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0년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는 4월 분과위원장 회의를 거쳐 분과별 연간 연구과제와 연구일정을 논의하고, 6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제를 채택하였다. 11월까지 분과별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11월 연말총회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차기년도 업무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0년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모바일 보안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올해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로 모바일 보안 이외에 SN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주제로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를 2회 개최하여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표 III-75〉 2010년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

세미나 명	일자	주요 내용
스마트폰 활성화 방안 및 정보보호	3월 10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심층논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법제	6월 30일	소셜 미디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소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인터넷 관련 법적 이슈를 논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I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날로 진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IT서비스 의존도는 매우 높아져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시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어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하 DDoS) 등 사이버침해로 인해 일시라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14개 관리기관 31개 기반시설이며, 이는 2009년도에 지정한 KT, LG U+, SK브로드밴드 등 3개 사업자의 IPTV

서비스 부분을 포함한 현황이다.

특히 2010년도 G20 정상회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31개 기반시설의 2009년도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지정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등 체계적인 보호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행점검 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을 관리기관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합리적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기타 예산 등이 수반되는 부분은 경중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위원회는 소관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개최하여 침해사고발생시 정부와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채용 및 예산 투입 확대를 통한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2010년 예산(851.3억)에서 12.3%(104.4억)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스텍스넷²²⁾ 악성코드,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당시, 이란 등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스텝스넷’이란 악성코드의 출현으로 국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까지 위협 및 정상회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그리고 14개 관리기관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 하에 스텍스넷 악성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반시설 관리 기관 전 직원 PC 점검, MS 윈도우와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및 USB autocue 기능 제

거 등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공하였다.

3) 신규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보호 사전진단

정보보호 사전진단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IT서비스의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mobile-RFID 서비스(2006년)를 시작으로 u-City(2007년), RFID/USN 확산사업(2008년), u-BcN, Giga인터넷(2009년), IP-USN(2010년) 등 신규 IT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로 매년 사전진단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취약점에 대해 평균 91%의 조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76〉 연도별 정보보호 사전진단 시행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정보보호 사전진단 시행 사업 수	2개	3개	6개	15개	6개	32개

4)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1.25 사태 이후 사이버침해 및 DDoS 공격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

설사업자(IDC), 쇼핑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를 위하여 2004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22) 스텍스넷(Stuxnet) : ‘슈퍼 산업시설 바이러스 웜’을 뜻하며 폐쇄 망으로 운용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기법으로 원자력, 전기, 철강 등의 주요산업 제어시스템에 침투해 오작동을 유도하는 명령코드를 입력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킨

동안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매년 수검 받도록 하여 검증된 정보보호체계를 유지해 왔다.

2010년에는 국회 등 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고 정보보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사이버 침해 관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정보보호 안전진단 연말 쏠림현상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0년 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는 272개 업체로 2009년(247개)에 비해 10.1% 증가하였으며,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안전진단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보안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을 통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시행초기(2004년)에 39%에 머물던 안전진단대상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2009년 평가결과 95%로 개선되었다.

〈표 Ⅲ-77〉 안전진단 수검 업체 수

분류	수검 업체 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13개	12개	12개	15개	15개	11개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63개	69개	90개	93개	102개	11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6개	79개	105개	124개	130개	148개
합 계	142개	160개	207개	232개	247개	272개

5)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업의 자율적 신청에 의하여 기업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본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10년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취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2009년(19건) 대비 15.8% 증가한 22건의 정

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이버침해사고도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ISMS 인증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 일

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인증취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매년 인증심사를 통해 발견된 결함보고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취약점 목록을 조치 방안과 같이 배포하여 인증취득기관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취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였다. 2010년의 경우 695건의 결함사항을 발견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다.

〈표 Ⅲ-78〉 ISMS 인증서 발급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증서 신규 발급(건)	4	8	12	19	22
인증서 발급 누적(건)	38	46	58	77	99

6) 융합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인터넷전화(VoIP), IPTV, 스마트폰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침해사고의 위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VoIP, IPTV, 무선랜 등에 대한 정보보호 기반마련과 대응체계

구축에 주력하였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호를 위해 VoIP 침해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3개 사업자(KT, LG U+,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화에 특화된 공격(전화폭탄 등)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Ⅲ-79〉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입자(누적)	32만 명	61만 명	248만 명	666만 명	914만 명

둘째, 급변하는 인터넷전화 침해사고의 유형 및 고도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학계, 보안전문가, IT업체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침해사고 예방·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안통신, 도청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상대적으로 인원 및 장비가 열악한 24개 인터넷전화 별정사업자들의 보안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 발굴 및 보안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별정 사업자 스스로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였다.

넷째, IPTV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IPTV의 경우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미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콘텐츠, 금융거래 등의 주요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문제소지가 있어 소규모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험을 통해 보안위협요소를 발굴, 보완조치 하였다.

끝으로 무선랜 활성화에 따라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등 발생 가능한 정보보호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온라인에서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118.or.kr>) 내에 무선랜 보안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오프라인 홍보로는 반상회보 게재, 위클리 공감 등 잡지 기고, TV 방송,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무선랜 보안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무선랜 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무선랜 보안 안내서”와 무선랜 보안 리플릿을 개발하여 전국 246개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기업 운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순회강연회 및 실습교육 시 무선랜 보안 교육을 포함하여 4,600여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7) 암호이용 활성화

국내에서는 1999년 국산 암호 SEED²³⁾ 개발을 시작으로 정보주권 확립에 필요한 전략 기술로 국산 암호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DB 해킹에 의한 주민번호 도용이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암호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수년간 암호 기술 및 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

23) SEED는 메시지를 특정 크기로 나뉘서 암호화하는 블록암호 알고리즘의 하나로, 1999년 KISA 및 국내 암호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 국내 정보보호의 씨앗이 되라는 의미에서 ‘SEED’로 명명됨

진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내 최초로 암호알고리즘인 SEED를 개발(1999년)하고 ISO/IEC, IETF 국제표준을 제정(2004년)하는 등 국산암호 활용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암호기술 적용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국산 경량암호

기술인 HIGHT²⁴⁾를 ISO/IEC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현재 암호기술이 탑재된 보안제품의 수출입시 국제표준 제정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 현재 국산 암호기술인 SEED, HIGHT는 국내·외에서 1,869건을 보급하고 있다.

〈표 Ⅲ-80〉 SEED 및 HIGHT 국내/외 보급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SEED	국내	1,076	480	675	632	1,117	1,363	5,343
	국외	86	25	38	13	33	7	202
HIGHT	국내	-	-	-	-	166	499	665
총계		1,162	505	713	645	1,150	1,869	6,044

또한, 2010년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국산암호기술인 SEED, HIGHT 등을 최적화 구현한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파일 암호화 앱과 패스워드의 안전성 진단을 위한 앱을 개발하여 안전한 스마트폰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 결과는 앱 스토어에 등록하여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인터넷망의 고도화 및 인터넷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신규 악성코드 출현, DDoS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도 DDoS 공격은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국가 기반시설을 노린 스틱스넷 악성코드, 스마트폰 보안위협 증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악성코드 등 다양한 인터넷 위협이 출현하였다.

24)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 : 모바일용 64비트 블록 암호화 기술. 2010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보안 분야(ISO/IEC)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1)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상황관제시스템 노후시설 교체 및 전문 인력 보강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2003년 센터 개소 이후 운영해왔던 침해사고대응지원 운영시스템의 노후장비들을 2010년 전면 교체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고도화하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상황실을 종전에는 단위 분야별로 수집·분석데이터를 관리 운용하던 것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통합 분석을 통해 신속한 관제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에 의해 DDoS 공격, 좀비PC, 악성코드, 웹 취약점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3D 화면 및 지도와의 연동을 통해 입체적 인터넷 보안위협 현황 및 상관관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등 이상 징후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여 침해사고 인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합상황실은 기존 업무공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하였으며, 상황관제 모니터링 화면도 18개로 늘리고 상황실 관제인력을 최대 18명까지 동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인터넷침해대응 시스템 보강뿐만 아니라, 침해대응 실무인력의 전문역량 또한

대폭 강화하였다. 공모를 통해 침해사고 관제시스템 운영, 민원상담 및 기술지원, 웹 취약점 점검, 악성코드 분석 분야 등에 30여명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신속한 분석능력 및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2) 국내외 침해사고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는 국내외 인터넷 침해사고 협력체계 및 공동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8조의4에 의거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다. 2010년에는 81개 기관 171명이 참석한 일반인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안 담당자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제3기 전문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전문가 82명을 새로이 선정하고, 10월에 위촉식을 가졌다. 아울러 제14회 해킹방지워크숍을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와 공동으로 11월 23~24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약 197개 기관 7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은 국제 침해사고대응협력을 위해 FIRST(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APCERT(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등 침해사고 관련 국제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FIRST에 가입하여 꾸준히 FIRST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10년에는 ECSC(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와 금융ISAC(Korea Financial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의 FIRST 가입심사활동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APCERT 운영위원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2010년 3월에는 태국에서 개최된 APCERT 연례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재 선임되었으며, 2011년 3월 개최예정인 APCERT 연례총회 및 컨퍼런스를 제주도에 유치한 바 있다. 또한 2010년에도 개발도상국 및 우리나라의 국제 침해사고 공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5개국 23명을 초청하여 아태정보보호교육(APISC)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추진해온 ‘대학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한해 동안 전국 37개 대학 40개의 우수 정보보호동아리를 선정하여 정보보호 실습교육 기회 및 세미나, 학습 기자재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제5회 ‘공개 S/W 취약점 찾기 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동아리에는 해외 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3) DDoS 사이버대피소 구축 및 운영

최근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융복합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수준이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에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를 계획하고 2010년 6월에 DDoS 공격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DDoS 공격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 환경구축은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DDoS 사이버대피소 시스템 및 운영실을 갖추었다. 서비스를 위한 환경 구축 후에는 약 3개월간 서비스 절차 확립, 시스템 최적화, 한계용량 측정 및 개선, 모의 DDoS 공격방어 훈련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민간 중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DDoS 사이버대피소에 서비스를 신청한 기관은 총 53개 기관이며, 서비스 개시 후 약 3개월간의 서비스 기간 동안 총 25건의 DDoS 공격을 방어하였다. DDoS 공격방어를 통해 확보한 좀비 PC의 IP와 공격명령서버에 대한 치료 및 차단 등 후속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 재발방지 효과도 거두었다.

2010년의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2011년에는 본격적인 DDoS 공격대피소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DDoS 공격방어에서 나아가 DDoS 공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신지 위조 트래픽을 제거하여 유해트래픽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국내외 DDoS 공격대응 유관기관 및 정보보호전문업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DDoS 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함께 DDoS 공격의 근본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향후 스마트워크 환경, SNS 등의 인터넷 융복합 서비스의 보안수준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망 연동구간에서 DDoS 트

래픽을 신속하게 탐지·제거하여 DDoS 공격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ISP·MSO 등 사업자의 보안인식 제고와 정보보호 투자유도를 위한 DDoS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7일 발생한 DDoS(이하 7.7 DDoS) 침해사고 후 DDoS 공격의 신속한 탐지 및 대응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도에는 7개 ISO/MSO 사업자로 확대하였고 향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표 III-81〉 인터넷망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사업자수	사업자명
2008년	3개	LG 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2009년	4개	KT,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온세텔레콤
2010년	7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HCN

4) 이용자 및 웹사이트 보안수준 강화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감염을 유도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파악하

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자동점검시스템(MC-Finder)을 구축하여 하루에 100만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대해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일어난 악성코드 관련 사고 처리건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82〉 악성코드 유포지/경유지 사고처리 건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0년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유포지	1,731	36	62	169	119	123	105	305	140	98	81	89	1,725	3,052
경유지	5,621	52	130	202	172	201	119	842	435	187	748	427	107	3,622
합 계	7,352	88	192	371	291	324	224	1,147	575	285	829	516	1,832	6,674

공격자는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에 해킹 서버 재접속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해킹 프로그램인 웹셀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백신 프로그램에서 탐지가 어려우며 일반 웹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탐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자체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휘슬(홈페이지 해킹통로 탐지 도구), 캐슬(홈페이지 보안 강화도구) 등 점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연간 각각 768건, 4,949건이 보급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2005년부터 방문하는 웹사이트 내에 악성코드 은닉여부 등을 알려주어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고, 신규 취약점 및 웹·바이러스 관련 예방 및 대응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웹체크 툴바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1월부터는 웹체크 프로그램의 버전(v3.0)을 배포하여 이용자 중심의 보

안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5) 대국민 정보보호 예·홍보 기능 강화

7.7 DDoS 사고 이후,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면서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TV 등)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보호 예·홍보 기능을 강화하였다.

평시에는 교양정보,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정보보호 홍보와 인식제고를 목표로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는 긴급뉴스나 자막방송을 통해 대국민 대응요령 등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예보체계 구축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TV로 송출된 방송영상은 ‘다시보기 서비

스'를 제공하여 보호나라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경로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편성을 위한 자문회의 및 방송사와의 실무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6개월(7월~12월) 간 다양한 정보보호 주제를 가지고 지상파 3개사(KBS, MBC, SBS), 케이블방송 2개사(YTN, MBN)를 통해 방송(총43회)을 실시하였으며,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담은 정보보호 캠페인광고(506회)도 송출되었다.

특히, KBS1 TV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좀비PC, 당신을 노린다”에서는 좀비PC의 실태와 실제 피해사례, 대처방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범국민적 정보보호 인식 확산 및 예방실천을 촉구하였다.

TV를 통한 홍보효과는 8월 27일 KBS 2TV의 ‘스핀지제로’에 “얼굴 없는 공격자, 좀비PC”편 방송 후 각종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방송직후 보호나라 방문자 수가 평소대비 약 130배 증가 및 e-콜센터 118로도 좀비PC 관련 전화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좀비PC확인법’이 네이버 검색 순위 2위(8.28)를 차지하였다.

6)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시범구축

지난 2009년 발생했던 7.7 DDoS 사고는 감염PC에 대한 치료만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었던 사례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치료하여 사이버공격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PC 이용자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고 악성코드 치료용 맞춤형 전용백신을 보급하는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4월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ISP(MSO 포함) 1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KT,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등 3개 ISP를 우선 구축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축 대상 ISP의 망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구축범위 및 구축방안에 대한 상세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ISP의 역할을 정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을 통해 시스템 구축 사업자 및 백신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치료체계 통합운영 시스템 및 전용백신 보급시스템, ISP 3사의 86개 중앙/지역 라우터에 감염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스텝스넷, G20위장 이메일 악성코드, DDoS 유발 악성코드 등 총 41건의 맞춤형 전용백신을 개발·보급하였다.

2011년에는 DNS 싱크홀²⁵⁾ 및 DDoS 사이버대피소 운영, DDoS 침해사고 신고접수를 통해 확보한 좀비PC에 대해 치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고위험 악성코드에 대한 맞춤형 전용백신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좀비PC를 신속하게 치료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목적 외 이용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1)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도록 2008년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10월)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2011년 1월 완료) 작업을 통해 법규 위반 목적, 위반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하게 활용하여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이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039개 웹사이트(2009년 6월 공시)에 대한 점검 및 위반사업자 시정명령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모두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토록 하였으며, 2010년 6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의 신규 도입의무 대상으로 330개 웹사이트를 추가 공시하였다.

또한 아이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통해 아이핀 발급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아이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0년 8월 아이핀 부정발급 확인시스템을 개설·운영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G4C 등 공공 시스템에서 아이핀을 용이하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함께 공공분야 아이핀 연계 시스템

25) DNS 싱크홀(DNS Shinkhole) : 봇에 감염된 PC가 해커와 연결을 시도할 때 해커의 시스템 대신 싱크홀 서버로 연결하도록 하여 더 이상 해커로부터 악용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2월 기준으로 1,286개 민간 웹사이트가 i-PIN을 도입하였고 3,035,430건의 i-PIN이 발급·이용되고 있다.

2006년 9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서버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문을 포함한 범부처적인 보안서버 확산 기반을 마련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 보안서버 보급을 확대하여 왔다. 2010년에는 홍보 강화 차원에서 보안서버 필요성, 관련법률, 구축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안서버 동영상 홍보물과 브로셔를 제작·배포하였으며, 12월에는 영세한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무료 보급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다.

2) 개인정보 유·노출 등 사고 대응

위원회는 2006년부터 구글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국내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삭제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를 통해서만 발견하지 못하는 노출된 개인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2009년 11월 구축)’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8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있으며, 노출 발견 시 즉시 삭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술부족 및 인력부

재로 노출 개인정보 삭제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서 현장방문 및 원격 기술지원을 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기업에는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성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대량 유·노출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핫라인을 2009년 포털, 호스팅 협회 등 55개사에서 2010년에는 금융, 채용관련 사이트, 이동통신사 등 103개사로 확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한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의 개인정보보호기구 등과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웹페이지 삭제를 위한 실무 채널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발견 시 조속히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외 사이트에서의 노출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국외 노출 검색 주기를 중국은 월2회에서 주1회로 주기를 단축하였으며, 기타 언어의 경우 년 45개 언어 1회 검색에서 년 61개 언어로 확대 검색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1년에는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인정보 자율 환경 조성

위원회는 우선 사업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개인정보의 관리 수준을 점검받고 이를 인증받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 획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통제항목을 경량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개발된 통제항목을 가지고 기업규모별 모의인증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8월에는 2009년도부터 준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체계 및 통제항목에 대한 공청회를 시행하여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공식 도입(방송통신위원회 의결, 11월 15일)하였고, 12월에는 대량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를 통해 2011년도 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상세히 동 제도를 설명하여 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4월에 ‘i-PIN 전환 캠페인’, 7월에는 이통사와 함께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 10월에 ‘201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등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1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에서는 23개

주요 인터넷기업이 참여하여 1,300만개 이상의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21,000여건의 주민등록번호가 i-PIN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촉진

정보통신 설비로 수집한 위치정보 중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활동 영역을 유추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제정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등 모바일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를 위한 「위치정보법」 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였다.

1)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권 부여를 위한 법률 정비

현재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 한정되어 있다. 납치나 실종이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자 등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종합하여 경찰이 범죄 상황에서 구조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법안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향후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이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LBS 산업 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마련

무선인터넷 활성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LBS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위원회는 6월 국내 LBS 산업 발전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이라는 비전 아래 ▶ LBS 산업 육성 ▶ 사회안전망 고도화 ▶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법·제도 개선, 산업지원 기능 강화, 측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LBS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 ▶ LB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위치정보 DB를 공동 구축하고 이동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 ▶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LBS 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안전망 고도화 측면에서는 ▶ 범죄상황에서 피해자는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긴급구조체계 마련 ▶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이동전화 사용자가 출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AP를 장착하는 방안 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 GPS On/Off 기능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한 위치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긴급구조 기관에 적용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효율적인 위치정보 사업자 규제

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시행하여 사업자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춰 위치정보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사업자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마.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게시판, 댓글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최소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성실하고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윤리 연구체계 확립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이용문화의 자율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1) 본인확인제 시행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기능이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9년에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월 본인확인 조치 의무적용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형의 제한없이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인확인제도의 확대시행 기준에 따라 2010년에는 총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16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다.

〈표 Ⅲ-83〉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 공시 결과

(단위 : 개)

교육	금융	언론	비즈니스	생활레저	쇼핑경매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서비스	포털	계
1	8	42	9	11	33	28	18	17	167

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이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이용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적인 제도 개선 방향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하여 제도의 개선·보완 방향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이용자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 인터넷 리터러시(소양) 교육 시행

위원회는 교과과정 개편에 유연하게 대처

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는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 학급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아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여 유치원과 초·중·고교별 대상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2010년에는 240개교 9,41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교실’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터넷의 주 이용계층인 학생들이 이를 통하여 자발적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인터넷 사회의 진입단계에서부터 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형 교육인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을 전국단위로 개최하여 전문가 강연과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윤리의식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표 III-84〉 2010년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교육인원(명)	5,928	3,483	9,411
학교수(개)	161	79	240

〈표 III-85〉 2010년 인터넷 순회강연 운영 현황

구분	수도권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계
교육인원(명)	1,951	1,066	230	117	1,083	1,434	810	520	423	7,634
교육학교(개)	9	5	1	1	6	6	4	2	2	36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 및 교육 종사자 923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접점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상

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진단하고 취약점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표 Ⅲ-86〉 2010년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초등	75	17	92	125	36	203	315	285	239	167	156	174	1,884
중·고등	72	8	140	32	19	208	55	242	308	45	155	101	1,385
대학	427	38	516	275	265	2,553	112	176	156	77	44	762	5,401
계	574	63	748	432	320	2,964	482	703	703	289	355	1,037	8,670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6월에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창설하여 네티켓

리더 캠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탐방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선도에 앞장섰다.

〈표 Ⅲ-87〉 한국인터넷드림단 1기 단원 구성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학교수(개)	201	103	304
교육인원(명)	493	338	831

3) 인터넷 리터러시(소양) 제고 홍보활동 전개

위원회는 인터넷 생활질서를 정착하여 사이버 권리침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캠페인 추진 및 인터넷 윤리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의 범국민적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포털사, 민간단체 등 총 55개 인터넷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이 참여한 ‘아인세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아인세’ 캠페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주간(9.6~10)행사기간 중 세미나·컨퍼런스, 온·오프라인 행사의 동시 추진으로 총 14,383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아인

세 범국민협의회’를 활용한 참여채널 확대를 통해 범국민적 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6월과 11월에는 인터넷 윤리의식 강화를 소재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 지상파 및 케이블 TV 등을 통해 송출하였으며, 신문광고도 병행하여 게재하였으며,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기획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KBS를 통해 방송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인터넷 소양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올해 ‘환경 구축기’를 시작으로 ‘의식 확산기’ 등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TV, 라디오, 신문, 포털 등 다양한 매체별 광고 송출은 물론 인터넷윤리에 대한 다양한 사회현상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인터넷 윤리강화를 위한 의식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나갈 예정이다.

〈표 III-88〉 2010년 공익광고 송출 및 게재 내역

매체	홍보 내역	회수
TV	KBS, MBC, SBS, EBS	50
	YTN, TVN, JEI재능TV, DRAMAX	163
	KTV, 아리랑TV, 홈쇼핑채널	420
	KBS-1TV 〈수요기획〉 프로그램 편성	1
신문	중앙 일간지 및 무가지 10여개사	13
총 계		647

4)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방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어느 누구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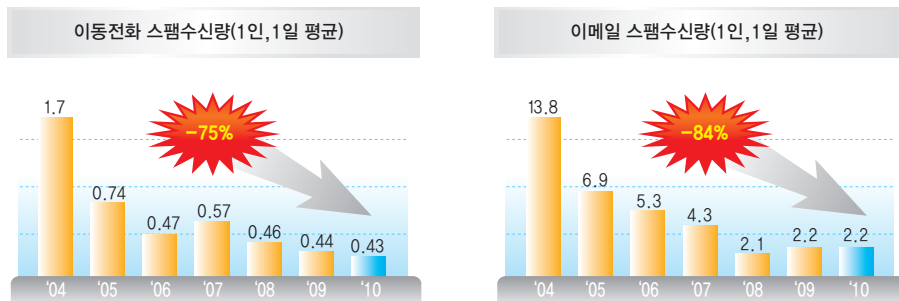
이에 국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평균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80% 수준에 해당하는 3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89,233건)하고 해당 결과(57,139건)를 제공하거나 혹은 사업자별로 자체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란물 유통에 대해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한 대처방안은 사후 신고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단기간 대량처리가 가능하여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음란물 유통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사업자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자 자율규제의 기틀을 제공하게 된다.

5) 스팸 감축 및 대응체계 강화

위원회는 스팸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스팸 방지 기술 개발·보급 및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스팸방지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 대비 2010년의 이용자 1인당 스팸수신량은 이동전화 75%, 이메일 84%가 감소하였다.

〈그림 Ⅲ-18〉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스팸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법률에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대출·도박·의약품 등 악성스팸이 많아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등 신규 통신 서비스의 등장으로 스팸을 보낼 수 있는 경로 및 수단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규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스팸 발·수신 경로별로 각각 스팸 취약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발표한 ‘스팸방지종합대책’의 골자는 주요 스팸발신 경로인 이동전화에 대한 규제 강화로서, 이동전화 문자 발송량 500통 제한, 1인당 이동전화 개통 수 제한 등은 휴대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송되는 스팸 즉 폰투폰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로 인해 2010년 상반기 불법스팸신고 건 중 이동전화 스팸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서 웹 기반

의 Biz-SMS나 C2P와 같은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웹투폰 스팸이 증가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새로운 스팸발신 경로인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에 대해 1일 문자 발송량을 제한하고, 스팸 신고건을 다량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통신회선 전송속도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였다. 이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가 여러 단계의 재판매구조로 이뤄져 있어 실제 스팸발송자를 식별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정책으로서, 최종 발송단계에 있는 상위 사업자의 문자전송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그와 맞물려 있는 하부 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그 규제 효과가 파급되어 정상적인 문자전송을 유도하고, 불법스팸 발송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9월에 236만 건에 달하던 악성스팸(도박, 대출, 불법의약품) 신고 건이 12월에는 157만 건으로 감축되었다.

〈표 III-89〉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한 악성스팸 신고건 접수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2010년 12월	감축비율
신고건	2,358,183	2,304,226	1,919,387	1,571,633	36%

또한 수신단계에서의 스팸 차단율 제고를 위해 위원회는 이통사와 협의하여 현재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청소년과 신규 가입자에게 일괄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만 13세 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거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일괄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해 기본가입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일괄 서비스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2014년경에는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동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90〉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이통사	SK텔레콤	KT	LG U+	합계
제공시기	2007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월	-
전체 이용자	2,561만명	1,599만명	901만명	5,061만명
가입자 수 (전체 대비)	307만명 (12%)	100만명 (6%)	40만명 (4%)	447만명 (8%)

2010년에는 이러한 스팸 발·수신 경로에서의 대응활동과 함께 스팸발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중 지인(知人)을 가장하는 문자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탈취하는 사기성 성인스팸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이들 사기성 성인스팸 발송자들은 특정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타 서비스에 재가입하여 스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위원회는 사기성 스팸 전송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정보이용료를 취소하고, 1회 적발 시에 바로 계약해지하고 해지된 이후에는 타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

였다. 또한, 9월부터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거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1차 스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재전송하지 못하도록 성인스팸 규제기준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스팸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세계이동통신협회(GSMA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모바일 스팸방지 프로젝트’ 시범서비스에 11월부터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이동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등 한국의 스팸방지 제도 및 기술을 세계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가. 네트워크 고도화 기반조성 및 구축 확대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일찍이 구축한 초고속 정보통신망보다 전송속도가 50배 이상 빠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IPTV와 인터넷 영상전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및 상용화하여 확산·보급하고 광대역 무선망(HSDPA, WiBro, Wi-Fi) 서비스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과 서비스 확산의 목적을 달성하고 광대역통합망 이후 도래할 초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한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여, 방송통신 고도화, 미래 네트워크 연구기반 조성과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융합인프라의 세계적 선도를 추진하고자 한다.

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위원회는 2010년에도 BcN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이종망간 이동성제공 서비스

(WCDMA ↔ WiBro, CDMA ↔ Wi-Fi), 멀티스크린 서비스, WiBro 기반 모바일 IPTV 등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다. ② G20방송통신미래체험전에 참가하여 BcN 시범서비스 결과물을 전시하였으며 ③ 이종망간 핸드오버 기술과 유무선간 인스턴트메세징(IM)/프레즌스서비스(PS)의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였다. ④ 도·농간 차별없는 전국 규모의 광대역망 구축을 위해 2010년에는 전국 10개 지자체 약 658개 마을에 방통융합서비스가 가능한 100M급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였고 ⑤ 광대역망을 활용하여 농어촌 정보서비스, 영상기반컨설팅, 금융서비스, 지역특화서비스 등 총 17종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⑥ 또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국기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지역 BcN구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BcN의 가입자는 2010년 12월 기준 이미 4,572만 가입자를(유선 1,482만, 무선 3,090만) 확보하여 2010년 목표인 4,000만 대비 가입자 572만 명(14.3%)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Ⅲ-91〉 연도별 BcN 보급 실적

(단위 : 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유선(세대수)	701	939	1,154	1,200	1,482
무선(가입자수)	563	1,547	2,484	2,800	3,090
계	1,264	2,486	3,638	4,000	4,572

〈표 Ⅲ-92〉 2010년 가입자망 기술별 가입자 수

2010년 12월	유선				무선		
	VDSL	LAN	HFC	FTTH	HSDPA	WLAN	WiBro
가입자 수 (단위 : 만)	166	599	368	349	3,046	—	44
	유선 : 1,482만 가구				무선 : 3,090만 명		
	합계 4,572만 가입자						

2) Giga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1월 수립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Giga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대전, 부천, 서울 은평구, 압

구정, 평창동에 추가로 Giga급 시범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누적 1,621가구에 Giga인터넷을 제공하였으며, 32분기 WDM-PON 기술, RFoG 기술을 시범 적용하였다. 또한 3D 멀티앵글 IPTV, n스크린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방송통신망 정보지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 Giga인터넷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건조성을 확립시켰다.

〈표 III-93〉 2010년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내 용
3D 멀티앵글 IPTV	하나의 대상을 다시점, 3D 화면으로 보는 IPTV
KT Home 서비스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개인 네트워크 기기 간 콘텐츠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n스크린 서비스	하나의 인터넷회선으로 TV, PC, 모바일폰에서 각각 다른 방송 또는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
스마트뷰어	셋톱박스과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TV기반의 양방향 영상통화, 영상교육, CCTV모니터링 제공

3) 방통융합서비스 품질관리 종합계획 마련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지속적인 서비스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품질관리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 시점에서 SNS, 전자메일 및 UCC 등 양방향, 업로드 서비스가 급증하고, 향후 3D영상(15~20Mbps) 및 UDTV 등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품질관리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7월에 유무선 기반 방통통신서비스에 대한 신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그 외 품질 진흥 정책 등 여건 조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방통융합서비스 품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존 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및 3D 영상 등 신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품질측정 S/W를 개발·보급하여 이용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다수 사업자간 연동에 의한 품질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내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서비스 개선 및 망 고도화에 소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

4)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디지털방송까지 확대 개선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²⁶⁾ 구현과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 스마트 TV 등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

26) 초광대역융합서비스(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

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디지털 방송수신 설비까지 확대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운 인증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 설명회와 주요 건설사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 방송 인증 심사기준²⁷⁾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또한,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DTV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상파 D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를 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D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여 인증 엠블럼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0년도 개정의 주요 특징은 지금까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각각 설치되었던 방송과 통신의 구내선로 설비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댁내 망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5)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범위 확대

오늘날의 건설공사는 전기,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은 IP 기반의 인터넷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는 건축사만이 수행 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의 참가는 배제되어 건축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구조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건축사뿐만이 아닌 정보통신분야 전문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관련 규정의

27) 디지털방송 인증 심사기준 : ①배선(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코아 이상), ②방송설비 설치 장소(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 ③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지상파 DTV 시청시 채널당 2분 동안 에러 미발생) 등

개정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이루고 시장에서의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중점 추진사업인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및 가입자망(택내망) 고도화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서비스인 IPTV, 스마트TV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물지능통신 확산 환경 조성

1) 2010년도 사물지능통신 확산환경 조성 사업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위 환경, 상태 정보 등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지식정보 서비스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위원회는 공공안전, 기상환경, SOC 관리 등 분야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 도심 사물지능통신 체감서비스 구현(서울특별시/송파구) ▶ 사물지능통신을 적용한 기상정보 수집체계 효율성 검증(기상청) ▶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녹색도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LG U+/강릉시)의 3개 선도시범과제를 실시하였다.

2)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개발 시험환경 구축

위원회는 2010년에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서비스 개발 인프라조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표준·인증 체계 마련 등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사물지능통신 서

비스 개발 시험환경을 구축 중이며, 2011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개발 시험환경은 이동통신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사물지능통신 관련 모듈, 단말,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 가능한 최첨단의 종합 시험환경이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시험환경을 이용하여 차세대 사물지능통신 모듈, 단말,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개발 기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 창출 능력 향상으로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물지능통신 활성화 여건 조성

위원회는 2010년에 사물지능통신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사물지능통신 실무협의회’ 및 ‘사물지능통신포럼’ 운영 및 ‘2010년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하여 국내 사물지능통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Ⅲ-94〉 2010년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개요

세미나 명	일 자	목 적
2010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6월 29일	국가 차원의 사물지능통신의 사업추진과 기술, 표준화, 서비스 등 전문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장 마련
한-유럽 M2M 기술협력 국제 컨퍼런스	11월 24일~25일	M2M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 전문적인 정보공유 및 토론을 통해 M2M 기술 확산의 장 마련
탈통신의 미래 M2M/IoT 컨퍼런스	12월 14일	급속히 변화하는 임베디드 모바일 환경과 미래 방송통신 수요를 발굴하고 탈 통신 기반의 신규 융합 통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미래 전망

국내 사물지능통신 발전과 사물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추진과 법제도 마련을 위하여 ‘사물지능통신 전

파사용료 감면 방안’ 및 ‘(가칭)사물정보지능통신 진흥법(안)’ 제정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 클라우드서비스, 미래인터넷 및 스마트 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1)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중소 IT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기술 및 사업모델을 검증할 수 있도록 11월에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개소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는 12월 기준으로 한글과 컴퓨터, 티론 등 12개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IPTV 서비스의 클라우드화를 위한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IPTV 시범사업’ (5월~11월, KT·SK브로드밴드 참여)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IPTV 플랫폼을 구축하고 3-스크린 교육서비스, 가상 데스크탑 등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였다. 향후 전체 IPTV 시장에 클라우드가 적용될 경우 저사양 IPTV 셋톱박스의 교체없이 PC수준의 고사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셋톱박스 교체비용이 절감(약 900억 원 추산)되고, IPTV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대수도 1/3~1/4수준으로 감소하여 이에 따른 물리적 공간, 전력 사용, 탄소 배출 등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추진하였다.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융합 IT 서비스 보안 연구회’ 내에 클라우드 분과를 운영 (5월~12월)하여 클라우드 보안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법제연구반’ 운영(3월~12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 간담회’ 개최 (5월)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 (6회)하였다.

2) 미래인터넷 포럼 출범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미래인터넷을 설정하고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9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서 「미래인터넷 추진전략(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미래인터넷 추진전략(안)은 5월 7일에 발표된 ‘10대 미래 서비스 전략’ 후속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현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한국형 미래인터넷 정책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아래 한국형 미래인터넷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2010년 정부·민간 협업의 KPP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인

터넷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미래인터넷 포럼(FIF), FN2020 포럼 등 학계·연구계 등과 함께 민간분야의 관련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7월에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과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은 ▶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구축 등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라.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 상생협력형 인터넷 비즈니스 진흥

위원회는 대·중소 인터넷 기업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중소형 유망 인터넷기업의 신규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Internet Korea Conference’를 9월 9일 ~ 10일 개최하여 중소 인터넷 기업과 대형 포털 등이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대형 인터넷기업 및 유관 협회 등이 함께한 상생협력 선언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9월 9일에 민·관 협력형 ‘인터넷상생협의체’를 발족하였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규 서비스의 지속적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연계형 신규 인터넷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인 ‘Web Biz StartUp Program’을 추진하였다. 일반인 3팀·대학생 2팀을 포함하여 총 5개팀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 및 산업계 실무 전문가들의 1:1멘토링 제공하여 개발자들의 네트워킹 문화 공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기업의 Open API 활용 교육을 연계하여 지역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Open API 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 이용자 권익향상 프로그램 창안 및 자율 규제 제도화 등 인터넷 사회·비즈니스·기술 확산에 기여한 15개 기업·단체 및 개인을 시상하는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을 12월 7일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공유하였다.

2)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 계획 수립

국제적으로 현 인터넷주소(IPv4)의 할당 종료 시점이 2011년 상반기로 가시화 되고, 인터넷주소(IP)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 IPv6 기반 상용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 ▶ IPv6 전환 인식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 ▶ IPv6전환추진체계 및 점검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설정해 이동통신, 웹호스팅 등 주요서비스의 IPv6전환을 돕고, 분야별 홍보, 인력양성, 민관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IPv6전환추진협의회’를 포털, 장비제조사, CATV사업자, 보안업체 등으로 확대 개편하고 2013년까지 백본망 전환 완료, 100대 사이트 대상 전환 유도, 제조사 대상 IPv6 장비 개발유도 등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본 계획을 기초로 9월에는 IPv4 신규할당 종료일(Flag Month)을 주도적으로 공표하여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IPv6 인식제고에 기여했으며, 특히 11월 주요기업 책임자급 대상으로 개최된 ‘제3차 IPv6전환 추진협의회’에서 안전으로 논의하여 정부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IPv6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사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3) 한글 국가도메인(.한국) 서비스 도입 준비

1986년 도메인 도입 초기엔 영문으로만 구성되었던 도메인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비영어권 국가들로부터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0월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이하 ICANN) 서울 정례회의에서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 우선도입방안을 의결하고 2009년 11월 16일부터 우선도입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ICANN의 우선도입방안은 1단계 국가도메인명 평가, 2단계 관리기관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다국어 국가도메인명 신청(1단계)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한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한글 최상위국가도메인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한국’을

5월에 우리나라의 한글 국가도메인으로 정하여 ICANN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ICANN은 문자열 검증, 한국내 이해관계자 집단의 지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을 우리나라 한글 국가 도메인으로 확정했다. 9월 2단계 ‘.한국’ 도메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해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선정하여 ICANN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중으로 ICANN의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한글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2009년부터 ‘.한국’ 국가도메인에 대한 국내 등록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되었다. 인터넷발전협의회 내의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을 통해 ‘.한국’ 국가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이름 구성 및 우선 등록대상, 유보어 기준 및 목록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였다. 9월에는 일반인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등록정책(안)을 2011년 초에 마련할 예정이다. ICANN의 관리기관 지정이 완료되고, 최종 등록정책(안)이 확정되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1년 2분기 경에 한글 최상위국가도메인 ‘.한국’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림 Ⅲ-19〉 ‘.한국’ 등록정책 마련 절차



‘.한국’ 국가도메인 도입은 한글 홈페이지 주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마케팅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 인터넷주소자원(.kr)을 확장하고 이용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정제되어 있는 국내 도메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인터넷주소의 국제화(다국어화)에

대비하여 한글 도메인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4) 온라인광고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은 지난 5년간 평균 30%성장하면서 주요 3대 매체로 도약하였

으며 최근 스마트폰,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결합한 신유형 광고시장이 인터넷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시장은 취약한 유통구조와 자율정화 기반 미비 등으로 신시장 개척 및 광고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표 III-95〉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 성장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광고시장	70,539	76,339	78,300	79,000	72,560	76,650
인터넷광고시장	6,625	8,907	11,364	12,859	12,923	15,835
인터넷광고시장 성장률추이(%)	37.11	34.45	27.59	13.16	0.50	22.53

출처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2010년 11월

이러한 인터넷광고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10년도에 포럼 및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정책마련을 중점 추진하였다. 인터넷 광고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인터넷광고시장 개척, 인터넷광고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건전한 이용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3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10월 14일 제 60차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3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정부, 민간 투자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인터넷광고시장에서의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터넷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업윤리, 이용자의식, 정책기반

등을 구축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 인터넷광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미래 新 인터넷광고시장의 독자적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개방형 플랫폼(OS),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은 무선인터넷 시장구조를 개방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이동통신사 중심의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벗어나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는 서비스·플랫폼, 인프라 구축, 단말기, OS와 콘텐츠 등 IT 서비스/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1)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월부터 KISA·KISDI·ETRI 등 연구기관, 이동통신사·CP²⁸⁾·솔루션 등 업체,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MOIBA) 등 관련 단체를 포함한

60여명의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라는 목표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Ⅲ-20〉 무선인터넷 활성화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비즈니스 활성화 규제 개선 -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 구성 ② 모바일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무선인터넷 기업투자, 상생협력체계 구축, 앱 개발 지원센터 등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생산적 활용	③ 스마트 모바일 확산 추진 - 요금제도 개선, 이용자 피해 방지, 정보보호 강화 ④ 스마트 모바일 응용서비스 생산적 활용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 등 공공응용서비스
세계 최고수준 광대역 무선망 구축	⑤ 무선랜(Wi-Fi) 이용지역 확대 - 先 설비기반 경쟁, 서비스확산 모델 개발 ⑥ 와이브로(Wibro) 인프라 확산 추진 ⑦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 대응 주파수 신규할당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⑧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술개발 - 결제 보안 시스템,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⑨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 - 단말 플랫폼 개발, 상황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보안기술 ⑩ 무선인터넷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28) CP(콘텐츠 제공자, contents provider)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록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2) 광대역무선망 확대를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위원회는 1월 2010년 전략회의에서 ‘무선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다.

무선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국가적 대응 전략인 광대역무선망 발전정책을 수립하고자, 산·학·연·관 CEO급으로 구성된 광대역 무선망 발전협의회를 4월에 개최하였다. 협의회 개최 이후 실무전담반, 발전전담반을 수시로 운영하여 6월말 광대역무선망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민간의 Wi-Fi 투자확대를 위하여 사업자간 설비경쟁정책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지역은 약 6만 6,000개소로 확대되었다. 국가적인 Wi-Fi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통신사, 공공기관이 설치한 Wi-Fi 구축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금여부, 설치지역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용 무선랜(Wi-Fi) 서비스 제공지침’을 개발하여, TTA 단체표준(TTAK.KO-06.0253)으로 제정하였다.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가.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도입되고 결합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 심화,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적 이용자 보호시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즉,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나 올바른 통신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내 방송통신 분야는 품질 향상이나 요금 인하 외에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 등의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측면이 있어,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비롯하여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이 서로 소통하면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아갈 필요

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통신의 디지털화와 융합에 대응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및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확대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선언’을 채택하고, 방송통신의 디지털화와 융합에 대응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보호센터를 설립하였다.

1)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 및 이용자 권익침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서비스 사용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해지절차를 마련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 종량제 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종량제 단일요율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기존의 복수요율과 단일요율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무선데이터서비스의 요금안내, 배너 정보, 재전송데이터 등에 관해서는 비과금 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결과, 이용자의 데이터통화로 절감으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게 무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별 요금고지서 내용과 이용약관 내용을 비교하고 CS센터의 민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요금고지서의 고지내용을 개선하였다. 즉 요금고지서는 ‘요금제 선택에 필요한 정보’ 즉, 요금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필수 고지사항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용약관에 규정된 각종 요금제의 구성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요금고지서의 고지내용 개선으로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2010년도에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요금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요금 부과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였다.

2) ARS 운영개선 가이드라인

그 동안 ARS는 언론, 소비자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소관부처나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AR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ARS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자율준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ARS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도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등은 전문가로 구성된 ‘ARS 서비스 개선협의회’에서 논의

하여 결정하였으며, 평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3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평가대상 선정은 ▶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42개), 지방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286개) 중에서 ARS를 이용하는 61개 기관을 모두 선정하였고 ▶ 민간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ARS 이용량이 많은 218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이 75.6점으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항목(8개) 중에서는 ▶ 이용요금 부담 ▶ ARS 구성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산업별로는 ▶ 오락업(65.8점) ▶ 여행서비스업(68.5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279개 평가대상 업체 중 60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0년도에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48개 업체가 시스템

〈표 III-96〉 ARS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구분	상담원 연결기능 (40점)			메뉴표준 (15점)	이용 및 대기시간 (25점)		이용요금 및 정보제공(20점)		계
	상담원 연결 (20점)	연결 지연 (10점)	지연시 서비스 (10점)	메뉴 표준화 (15점)	광고성 정보 (15점)	단축 다이얼 (10점)	이용 요금 (15점)	정보 제공 (5점)	
공공부문	14.9	8.3	5.5	13.5	15.0	9.5	5.3	2.4	74.6
민간부문	16.1	8.7	6.6	11.9	14.9	9.6	5.9	2.1	75.8
전체	15.9	8.6	6.4	12.2	15.0	9.6	5.8	2.2	75.6

※ 공공부문 : 공직유관단체 + 정부기관

개선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ARS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마련

위원회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2009년 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자, 2010년도에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4)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선언 및 주간행사

위원회는 2009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행사를 통해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방송통신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이용자의 위상’을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은 바 있다. 이를 확대·연장하여, ‘스마트 빅뱅’ 본격화로 가속된 이용자 중심로의 방송통신 시장변화 속에서 ‘나누는 이용문화, 즐거운 선택, 행복한 이용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을 선포하고 이용자 포럼과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 제1회 ‘이용자 보호주간’에서 이용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2010년 제2회 ‘이용자 보호주간’에서는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구현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용자 보호주간’에는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1~4일),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2일),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토론회’(3일), ‘기념식 및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4일) 등의 주제로 행사를 열고,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의 전국적 실시를 위한 관계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방송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선언’을 하였다.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

신 사업자들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선언’에서는 ‘서비스 해지 절차는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정한다’ 등 5개 항목 총 19개의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이행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권익보호 이행방안은 ▶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정당한 해지 신청의 즉시 처리 ▶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 확

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요금 미청구 ▶ 불량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의절차 마련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의 이용요금도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통합요금 ▶ 서비스 가입 시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경품, 요금 감면, 보조금 등을 명시 ▶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감면은 위약금으로 미청구 등이다.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선언문

우리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방송통신 기술 발전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의 올바른 서비스 이용과 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이 선언문에 담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품격있는 방송통신 이용문화를 정착시킨다.

우리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선언의 부속 이행방안을 성실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추가적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선언한다.

2010. 11. 4.

방송통신사업자 일동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선언 부속 이행방안 5개 항목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공정한 혜택 제공
-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정보 제공
-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 콘텐츠의 질적 향상

위원회는 이번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주간’을 계기로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예방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사업자들이 선언한 실천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나누는 이용문화, 슬기로운 선택, 행복한 이용자’라는 목표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0년에도 사전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의 구현을 위하여 2009년 개설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개념 및 연혁, 이용요금, 사용방법,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와이즈유저’는 그간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해당사업자들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사 홍보성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III-21〉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처 : <http://www.wiseuser.go.kr>

2)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센터 개설

위원회는 3월 4일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 환경에 따라 복잡·다양화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시장모니터링과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경

쟁시장 구조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의 주요 임무는

-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
- ▶ 이용자 편의제고 저해요인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등 서비스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 ▶ 현장조사를 통한 이용자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운영·관리 및 보급확산
- ▶ 사업자의 이용자간 통신민원조정을 통한 자율구제 유도 등으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3개팀(정책연구팀, 시장정보팀, 이

용자지원팀)으로 운영되며, 또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와 방송통신사업

자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22〉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조직



나.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기업합병,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통신시장 포화로 가입자 유지·유치를 위한 부당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쟁이 과열되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법적 행위를 통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지배적인 경쟁우위를 이용하여 장치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의 도매제공 시에 후발사업자에 불공정한 협정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제공 및 불공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시장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기술의 진화와 함께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폰 등 점차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가 등장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홍수 속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품질위주보다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 등에 집중하다 보면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은 외면당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방송통신서비스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 내려져야 정책시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감시의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회계정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후제재방안을 신설하여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

1) 방송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2010년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동전화·인터넷 분야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

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9월)로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품질경쟁 및 투자 촉진효과를 제고하였다. 처벌내용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부과(SK텔레콤 114.8억 원, KT 48억 원, LG U+ 26억 원) 및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 마련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KT가 NHN이 요청한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을 거부·지연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3월)로 기간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절차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표 III-97〉 이동전화·인터넷접속 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시정 현황

추진 내용	세부 실적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 주요 서비스 시장별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1월) -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수준, 초고속인터넷 경품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4월~12월)
전용회선 제공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시정	-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및 IDC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보고(1월) - KT에 대해 금지행위(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즉시 중지 등 시정명령(3월)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차별 지급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시정	- 이통 3사에 과징금 부과(SK텔레콤 114.8억 원, KT 48억 원, LG U+ 26억 원) 및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 마련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9월) - 차별적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사업자에게 가인드라인 제시(9월)

둘째,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조사 및 생활 공감형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동계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 분쟁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시장자율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시정조치를 통해 방송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원칙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 방송문화 창달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USIM 이동계약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6월), 선불요금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11월),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불법스팸 관련 제도개선(11월)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중고 단말기 재활용과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III-98〉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조사 및 제도개선 현황

추진 내용	세부 실적
보편적 시청권 확보	- 주요 스포츠 중계권 분쟁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2월) -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행사 개최에 따른 스포츠중계권 분쟁 및 협상 동향 등 점검 - 지상파 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3월)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시장자율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조치 1단계 자율협상 권고(방송3사, 3월) → 2단계 시정명령(방송3사, 4월) → 3단계 과징금 부과(SBS 19.7억 원, 7월) - 올림픽·월드컵 등에 대한 방송3사의 순차편성에 의한 공동중계 합의 유도(9월)
이동전화 USIM 이용 활성화	- 이동전화사업자(SK텔레콤, 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보고(4월) - 이동전화사업자(SK텔레콤, 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 즉시 중지 등) 및 과징금 부과(SK텔레콤 20억 원, KT 10억 원)(6월)
선불요금제 이용 활성화	-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관련 실태 점검 실시(SK텔레콤, KT, LG U+, 7~8월) - 이동전화 선불요금제를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1월) - 일시정지 제도 도입,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 등
인터넷전화 사업자 불법스팸 관련 제도개선	- 불법스팸 관련 인터넷전화사업자 실태점검 실시(7~9월) - 재판매계약서 등에 스팸조항 반영, 번호이동회선 스팸어 근절 등 제도개선(11월)

셋째, 방송회계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후제재방안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 추진(3.11, 국회제출) 및 법 개

정(방송회계제도 마련)에 대비, 방송사업자가 수행할 ‘방송사업 회계정리규정’(안) 제정을 준비하였다.

〈표 III-99〉 방송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개선 현황

추진 내용	세부 실적
방송사업 회계제도 도입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9월)	• 방송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2월) •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월) • 방송법 개정안 국회제출(3월)
방송사업 회계제도 도입 관련 회계규정(대통령령)안 마련(12월)	• 방송회계제도 전담반 구성(5월) 및 전담반 회의(6월 ~ 11월, 5회) • 방송법 시행령안 마련(12월)

2)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가) 3G 서비스 품질 평가

2008년부터 실시해 온 3G 이동전화(WCDMA 또는 EVDO)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지역이 많고 이용자 품질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10년에도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9년에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평가에서 상세 측정 결과 품질이 미흡한 지역으로 꼽혔던 지역들을 재평가하여 사업자의 투자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품질 미흡지역으로 전국 485개 읍·면·동 지

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평가하였으며,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자의 불법 개입을 방지하고자 평가 감시단을 운용하였고 평가 결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단말기를 일반 개인 가입 및 개통을 통하여 사업자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평가결과는 방송통신이용자포털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 및 사업자 등 다양한 품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이로써 품질경쟁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화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며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였다.

〈표 Ⅲ-100〉 3G 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음성통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0년 10월~12월 - 평가대상 : SK텔레콤 KT 3G망 음성통화 서비스 - 평가방법 : 전년도 미흡지역 도로 이동평가 - 평가항목 : 통화성공률(접속성공률, 단절률, 음질불량률) ○ 평가개선 내용 : 이용자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평가조건 등을 개선 ○ 활용결과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사이트에 정보제공
영상통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0년 10월~12월 - 평가대상 : SK텔레콤 KT, LG U+ 3G망 영상통화 서비스 - 평가방법 : 전년도 미흡지역 도로 이동평가 - 평가항목 : 통화성공률(접속성공률, 단절률) ○ 평가개선 내용 : 이용자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평가조건 등을 개선 ○ 활용결과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사이트에 정보제공

나) 인터넷전화 자체 품질평가

일반 유선전화(PSTN)의 보완재에서 대체제로 인터넷전화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 낮은 품질로 인해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있었으나 그 동안 초고속인터넷의 속도 향상, 인터넷전화의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전화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약 914만 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품질불량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민원제기 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 등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일정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이용 편익을 제공하며 사업자의 올바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본격적인 품질평가 시행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자 자체평가로 전환하였다.

자체평가결과는 방송통신이용자포털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 및 사업자 등 다양한 품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2010년 주요 품질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1〉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구 분	주요 내용
인터넷전화 음성통화	○ 평가개요 - 대상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 U+, KCT, 삼성SDS, 몬티스타텔레콤 - 평가기간 : 2010년 10월~12월(2개월간) - 평가호수 : 2만 4천호 - 평가지역 : 전국 16개 시·도 - 평가단수 : 800명 - 평가항목 : 통화성공률, 음성품질 R값 ○ 평가방법 : 실가입자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제 사용자 음성통화 품질 평가 ○ 활용결과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사이트에 정보제공

다) 유·무선 데이터 서비스 품질평가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부터 All-IP 방송·통신환경의 기반서비스로 평가되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이동 중 데이터사용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무선데이터(3G, WiBro)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이 미흡한 지역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평가지역(1,900여 읍·면·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자의 투자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무선인터넷 평가는 이용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측기를 통한 측정방식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단말기에 측정 S/W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표 III-102〉 유·무선 데이터 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유·무선 데이터 서비스 품질평가	○ 평가개요 - 대상사업자 • 초고속인터넷 : KT, SK브로드밴드, LG U+, 티브로드, 씨앤엠, CJ헬로비전 • 3G데이터/Wi-Fi : KT, SKT, LG U+ • WiBro : KT, SKT - 평가기간 : 2010년 10월 ~ 12월 (2개월간) - 평가지역 : 서비스 제공 지역 (초고속인터넷, WiBro), 전국 (3G데이터 / Wi-Fi) - 평가단수 : 초고속인터넷 1,800명, 3G데이터 / Wi-Fi 1,100명, 와이브로 100명 - 평가항목 : 자사망 구간 및 전구간 속도 (다운로드 / 업로드), 웹서핑 시간 ○ 평가방법 : 광범위하게 모집한 이용자 평가단이 품질측정 S/W를 통해 측정하며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수집 ○ 활용결과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사이트에 정보제공

라) 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대표적인 방통융합서비스로 2008년 말 시작된 IPTV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서비스 및 VoD 서비스 등 다양한 양방향부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 및 IPTV 동시 이용자 증가 등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품질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2009년 IPTV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IPTV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적 평가를 추진하여 IPTV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IPTV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및 이용자의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영상체감품질, 채널전환시간 등 주요 품질관리 항목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KT, LG U+, SKB IPTV 3개 사업자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500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 평가를 진행하여 IPTV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도에 마련한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등 전국8개 권역을 대상으로 IPTV 서비스 품질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디지털케이블TV, 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품질 평가를 추진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전분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IPTV 서비스의 영상품질은 이용자가 직접 방송을 시청하면서 품질을 평가하는 이용자 기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표 Ⅲ-103〉 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디지털방송서비스 품질평가	○ 평가개요 - 대상서비스 • IPTV : KT, SK브로드밴드, LG U+ • 디지털케이블 : 티브로드, 씨앤엠, CJ헬로비전, HCN • 디지털위성방송 : SkyLife - 평가기간 : 2010년 10월~12월(2개월간) - 평가지역 : 전국 8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 평가단수 : IPTV (1,750명), 디지털케이블 및 디지털위성 (250명) - 평가항목 : 영상체감품질, 채널전환시간, VoD 이용속도, 콘텐츠검색 간편성, STB 성능(부가기능, 시작시간) ○ 평가방법 : 영상체감품질은 이용자가 직접 방송을 시청하면서 평가하고 채널전환시간 등 기능항목은 전문평가요원이 서비스기능을 분석하여 평가 ○ 활용결과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사이트에 정보제공

3) 통신회계제도를 통한 정책지원

통신회계제도는 상호접속 제도, 보편적서비스 제도,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제도, 전기통신서비스요금 제도,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의 도매대가와 출연금 등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정책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생성, 정리 및 제출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 회계위반 증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요구 증가, 회계분리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기존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과징금으로 전환하였다.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 상한액 및 산정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10년도에 정확한 회계정보에 근거한 방송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 상호접속 원가검증 등을 통하여 2010 ~ 2011년도의 접속료 결정을 위한 통신정책의 정립을 지원하였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분담금의 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 외에도 All-IP 환경 하의 합리적인 정책방안의 정립을 위해 ‘IP 기반 통신서비스의 통화량 검증체계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통신정책의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방송통신 융·결합서비스 등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및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다수 방송·통신사업

자의 시장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어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및 상호접속 의무 이행, 프로그램 공급 등 사업자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2010년에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고, 국제분쟁조정기구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1) 민원만족도 향상

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민원동향 및 민원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매월 분석하고, 민원 처리지연·다수 민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개

최하여 개선토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업자-이용자 간 방송통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송통신민원협의회’는 주기적으로 주요 민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일조하였다.

매월 ‘통신민원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급증하는 방송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3월 ‘방송민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유료방송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201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2010년 6월과 11월에는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방송민원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단체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를 받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가입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료에 대하여 당월제를 적용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후불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시청자보호 활동을 강화하였다.

〈표 III-104〉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함 -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함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시 세대별 사전 동의 의무화	- 본인인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 하여 임의가입·명의도용을 방지하여야 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함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 약관상 채널·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후불 납부제를 적용하여야 함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시 사전안내 의무화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 무료서비스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7일전)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 이용자의 해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해서는 아니 되며, 약관에도 해지처리 최대기간 (7일)을 명시하여야 함 - 위약금 산정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아울러,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해 주의, 권고, 경고 조치를 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에 기여하였다. 2010년도에 시청자불만위원회는 총10회 개최하여 단체수신 계약 시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조치, 서비스 이용요금의 후불제 미실시 사업자 조치 등의 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민원동향을 분석하고 민원처리기간의 준수를 점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월 에 2009년 민원동향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민원동향분석결과 8월

에 발표하였다. 2010년 민원 접수결과 통신 분야의 민원증가로 전년대비 민원 접수건수가 7,904건(2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위원회는 6월에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준수율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실태 평가 결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99.8%에 이르렀고, 이용자-사업자간 민원처리내역에 대한 이용자 민원 만족율이 47.6%에서 53.6%로 6%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5〉 2010년 민원 현황

구분	2009년 (건)	2010년 (건)	점유율	2009년 대비 증감율
방송	7,339	6,488	15.9%	-11.6%
통신	25,670	34,425	84.1%	34.1%
합 계	33,009	40,913	100%	23.9%

한편, 위원회는 민원처리내역을 매월 분석하여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방송분야는 민원분석 자료를 토대로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시청자불만 처리위원회를 통해 규제하였으며, 2월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고, 6월에는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였다.

2)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

위원회는 복잡·다양해지는 방송통신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분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통신재정과 방송분쟁 조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준비하였다.

둘째, 재정사건 처리기간 연장, 재정서류 심사 강화 등 재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분쟁해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이용자간 재정사건에 대한 자율적 조정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평균분쟁처리기간을 목표 60일 대비 39일로 단축하였다.

넷째, 다양한 현장채널을 통해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 간 담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분쟁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해외 방송통신 분쟁 동향 분석 등을 위해 ‘방송통신 분쟁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3) 국제 분쟁조정기구 간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는 2010년 11월 4일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국내·외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2회 국제 방

송통신 분쟁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영국·일본·홍콩과 국내의 분쟁사례 공유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한·일간 방송통신 분쟁 관련 양해각서 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참여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라.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 확립

「전기통신사업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은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에는 금지행위 규정이 미비하여 형평성 결여 및 규제공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간 비대칭 규제 해소와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권익침해에 대한 효과적 규제기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판매 등 추가된 금지행위 유형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최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대형 로펌을 통해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사건 자체도 다수 역무가 관여되는 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방송 및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금지행위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조사관들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조사체계 확립을 위

한 효율적 규제기반 마련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2010년에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방송분야 금지행위 근거 마련 및 제도개선, 통신 분야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송통신시장 조사체계 확립 및 조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1) 방송분야 금지행위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위원회는 방송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방송 분야 금지행위 도입 관련 「방송법」 개정안(위원회 안)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이유로 「방송법」 개정을 반대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방송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인정하여, 7월 「방송법」상 금지행위 신설에 대한 정부 단일안 마련에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 Ⅲ-106〉 방송 분야 금지행위 관련 방통위·공정위 합의안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신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에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통신분야 금지행위 제도 개선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도매제공 및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에 있는 타 부처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MVNO의 시장 조기안착 및 모바일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 방송통신시장 조사체계 확립 및 조사인력 역량강화

위원회는 유무선 통합상품 등장 및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 등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침해 등 불공정행위의 감소 및 사전적 예방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사업자의 규제 예측성을 제고하였다. 이처럼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3월에 통신사 CEO에게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8월에는 현금성 보조금 지급 등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사후규제 심결사례 등 관련 동향을 매일 조사하여 5월부터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조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실조사에 필요한 법제도·회계·전산 등에 대한 조사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 규제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에 맞춤형 전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2월에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 따라 외래강사 초빙 및 자체 직무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조사관 입문과정 교육(8월) 및 조사관 전문교육(9월)을 실시하였다.

〈표 III-107〉 2010년도 조사관 맞춤형 전문교육 현황

구 분	조사 입문과정	조사 전문과정	컴퓨터 포렌식 과정
인 원	18명	18명	17명
기 간	8.25 ~ 8.27 (3일, 21시간)	9.1 ~ 9.3 (3일, 21시간)	9.8 ~ 9.10 (3일, 21시간)
내 용	법규, 조사 기초실무 등	조사 사례분석, 통계분석 등	포렌식 기법 실습 등

4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 기회 확대

가. 시청자 권익보호 기반강화 및 시청자지원

위원회는 시청자의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고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가 주체적인 콘텐츠 창조자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미디어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0년에도 다양한 시청자 권익보호 및 시청자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지원활동을 통해 시청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무료교육 수강, 시설장비 대여 등 시청자 참여를 통한 방송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

운 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 증진과 소외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발맞춘 정책적 시사점 제공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보호기반을 강화하고자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미디어교육 정책연구로 방송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개념 재설정 및 관련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로 시청자 이익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으로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청자불만이 제기된 방송사업자에게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유도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였다. 또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관리하고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 Ⅲ-108〉 최근 3년간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내용

(단위 : 건수, 명)

성과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기금 지원 편수	2,500	3,335	3,500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126,572	142,623	179,750

1)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시청

자미디어센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먼저, 2010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2009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현황을 분석하고 센터 관련자 면담(1.19)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언론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3월~12월)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방송사와의 MOU를 체결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수급통로를 제공하고, 지역 미디어교육 단체 공모 및 장비 위탁지원 등 소규모 지역 미디어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평일 및 휴일 이용자 추이 등을 반영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일 개관도 시행(5월~7월)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백서를 발간(3월)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의 성과 분석·타당성 평가·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및 미디어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 사업계획 수립 시 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세부사업 구성을 통해 연계성을 구현하고, 미디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 미디어교육 강사 인력 확보, 미디어역기능 예방교육, 방과 후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등 신규 교육 영역을 지원하였다.

향후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정책은 사업

의 안정화와 지속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서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센터 건립 추진이 필요 과제로 남아 있다.

2)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시행

위원회는 청소년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강사양성, 미디어 역기능 예방 전문교육 및 교재의 개발·배포, 시청자불만이 제기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권익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우선, 해외 ‘미디어교육 국제컨퍼런스’ 참석(6월, 스웨덴)을 통해 선진국의 미디어교육 우수 사례 및 해외 미디어교육 정책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2010년 미디어교육 역기능 예방교재를 개발·배포하고 지역아동센터, 외부모 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맹학교, 농학교 등 소외계층 학교에 대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교육 기자재를 기증하였다. 또한 시청자의 방송이용패턴 다양화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교육 추진방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였다.

시청자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시청자불만

처리위원회 안건 상정시 관련 불만을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5월~12월,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가 5인)하고 시청자권익증진 사업운영 간담회 개최(1.25),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자문(2.25~27, 2009년 지원사업 평가위원 7명) 등 의견수렴을 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미디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미디어교육 연구저널을 발간, 계층별 지원 사업을 체계화, 반기별 1회 미디어교육 학술대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0년 지원단체 선정 시,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한 심사점수를 반영하기로 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청취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고, 제재조치에 ‘과징금 부과 건의’를 추가하는 등 ‘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결과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원 단체별로 공청회 및 결과보고회를 시행하였다.

한편,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중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을 실시, 사업자의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변화하는 방송통신환경을

반영한 「방송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건의’를 제재조치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시청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불만위원회 제재대상에 IPTV 사업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검토하였다.

3)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

2010년에는 KBS 열린채널 등 63개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3,500편의 제작 지원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추천단체 적법성 여부 점검에 따라 추천단체 사전점검(2009.11.12~11.23)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추천단체 부적격은 12개사 25명, 추천단체 오분류는 16개사 30명, 동일단체에서 3인 이상 추천은 3개사, 5개 단체 이하의 일부 추천단체로 구성된 경우는 4개사,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는 2개사에 걸쳐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으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2.10)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0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에 이를 반영하였다. 시청자 권익증진활동사업 신규단체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를 위

해 성과지표를 수정하고, 2009년 11개 단체 지원에서 2010년 12개 단체 지원(신규단체 2009년 1개 단체~2010년 5개 단체)으로 신규단체 개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사업 결과물 내실화 등 기금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단순 지원 단체 수에서 단체별 종합평가 결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또한 지원 단체에 대한 현장 및 중간평가 등을 통해 기금 운영의 적절성 및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 제고

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를 마련하고, 각 방송사업자 내규에 공통적으로 반영(42개사)하였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

회(10.30), 사업자 간담회(9.15) 및 방송사업자가 포함된 협의회(2009.12. ~ 2010.2.(4회)) 및 설명회(4월, 5개 지역)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나. 소외계층 방송접근기회 확대

방송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완화 및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권 향상을 위해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의 제작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에도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향상시켰다.

〈표 III-109〉 방송소외계층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주요 실적
시·청각 장애인 방송시청권 향상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누적 보급대수 : 136,062대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편성비율 : 자막 96.0%, 수화 5.1% 화면해설 6.0%

1)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확대

위원회는 2010년까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136,200대를 보급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7,505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000대, 난청노인

용 수신기 5,672대 등 총 17,177대를 보급하였다.

또한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및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획득을 위해 전국의 난청노인 300명과 청각장애인 300명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 및 시각장애인 400명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Ⅲ-110〉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 분석 현황

구 분	분석내용
• 2008/2009년 보급된 방송수신기 보급 및 활용실태	•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인지경로, 방송수신기 신청 과정 시 어려움 점, 방송수신기 사용 활동, 방송수신기 이용시간, 매체 이용시간 등
• 2008/2009년 보급된 방송수신기 제품 만족도	• 방송수신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난청노인용 수신기의 소리 선명도, 사용 용이성, 잡음 여부 등에 대한 만족도, 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 음성 선명도, 제품 조작감, 부가 기능, 음성 속도, 작동 편리성 등에 대한 만족도, 자막방송수신기의 자막속도, 제품 조작감, 작동 편리성, 화면 선명도 등에 대한 만족도 분석

또한 장애인 단체, 사업관련 기관, 사업수행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송기기 이용 불편 해소 협의회’ 운영(1월, 2회),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설명회 개최(2.10) 등을 통하여 수신기 성능 및 보급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0년도 방송

수신기 성능개선 및 2010년도 사업의 조기시행,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 등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송수신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표 III-111〉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관련 외부기관 의견 및 조치결과

지적내용	조치결과
• 자막방송 제작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강구 (2009년 결산, 상임위)	• 2010년부터 중소기업이 제작한 다기능 외장형 자막 방송수신기를 보급하여 중소기업 지원
•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9년, 국정감사)	• 시청각장애인 중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순위로 수신기 보급

한편,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수행단체 및 방송사에 대한 현장방문(연 2회)과 방송수신기 활용 및 장애인방송 편성·이용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집행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방송수신기 보급대상자의 선정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장애인방송 편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112〉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집행실적 평가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주 기	연 2회
실시시기	중간평가 : 6월 ~ 8월 / 종합평가 : 11월 ~ 12월
점검내용·방법	•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의 사업 집행을 충실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 방송수신기 보급대상자 선정 일부 지연 • 지역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율 일부 저조
해결실적	• 방송수신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 독려 • 장애인방송 회계 처리 철저 및 편성 독려

2)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0년 중앙지상파 및 지역지상파(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38개사, 보

도·공익·일반 PP 5개사, SO 3개사 등 46개 방송사업자에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향상시켰다.

〈표 Ⅲ-113〉 2010년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

(단위 : %)

구 분	KBS1	KBS2	MBC	SBS	EBS	평균
자막방송	99.0	100.0	92.1	94.7	94.2	96.0
수화방송	8.4	0.9	4.3	5.7	6.2	5.1
화면해설방송	4.1	8.7	6.4	4.1	6.6	6.0

※자막 및 수화방송의 경우 외국어프로그램, 음악·발레 등 공연 및 연주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등 장애인방송 제작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실적

이를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및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획득을 위해 시각 장애인 400명, 청각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 방송편성표에 따른 시청 모니터링 조사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0년도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사업의 운영을 위해 2009년도 지원 사업 운영 사례를 분석(1월)하고 그 결과 예산 배분률이 높은 지상파 5사를 중심으로 예산신청 방법을 변경, 방송사의 편성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4/4분기의 경우

先방송 後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방송 정책 사례조사(5.30~6.10, 영국(OFCOM, BBC 등 6개 기관), 일본(총무성, NiCT, NHK 등 4개 기관))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인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으로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관련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은 시정조치를 시행하였다.

〈표 III-114〉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외부기관 의견 및 조치결과

지적내용	조치결과
•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화면해설방송과 수화방송편성률도 추가할 필요(2009년 예산정책처)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편성 비율을 성과지표에 추가하여 관리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은 지상파 방송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케이블·위성·IPTV 등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2009년 결산, 상임위)	• 2009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확대를 위해 지상파방송사 외 PP 및 SO를 추가 지원(2008년 28개사→2009년 37개사)하였으며, 2010년도는 46개 방송사업자 확대 지원
•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09년 국정감사)	• 자막방송 뿐만 아니라 문맹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할 계획
• 비지상파에 대한 지원확대방안 마련(2009결산, 상임위, 예결위)	• 비지상파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다. 방송 등 언론의 피해 구제활동 지원

위원회는 언론 자유 및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피해구제 제도 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언론피해구제제도 운영 지원으로 인격권 침해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법적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상파방송, IPTV, 포털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존중하며 품격 있는 언론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방송, 인터넷포털 등 언론보도를 매개로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 교육 수행을 통해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함으

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라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과목표를 실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방송, 통신 등 언론보도와 매개로 인한 시청자 인격권 침해 구제와 방송통신의 공익성 및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법정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방송통신 등의 공공성 증진과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언론조정신청사건은 2,205건으로 2009년 1,573건 대비 40.2%나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방송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사건은 전체 조정신청사건 중 1,030건(46.7%)

으로 전체 조정신청사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방송통신의 오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송 전에 조정 및 중재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언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등 언론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방송통신이 언론관련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과도한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방송과 통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부 록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
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4. 2010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5.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현황
6. 2010년도 회계 결산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8. 2010년도 주요 연월표
9. 영문 약어
10.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

가. 위원회 소관 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부록 표-1〉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구 분		주요 업무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기획재정 담당관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총괄 및 조직·정원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세입·세출 및 결산
		정책관리 담당관 ○ 행정제도 업무의 총괄·지원 및 성과관리·동향분석 업무 ○ 위원회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 법령안의 입안, 심사 및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 행정심판 및 소송, 법인설립 허가 및 산하단체 임원 선임·승인 관련 업무
		비상계획 담당관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보안업무 및 재난관리 ○ 통신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의안조정팀 ○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 ○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국 제 협 력 관	국제협력 담당관 ○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 ○ WTO, FTA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남북한간 방송통신 협력 업무
		국제기구 담당관 ○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 ○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
방 송 통 신 융 합 정 책 실	융 합 정 책 관	정책총괄과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 중장기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및 평가 ○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 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평가
		융합정책과 ○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
		방송통신 진흥정책과 ○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 및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 ○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시책 수립
		방송통신 녹색기술팀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및 방송통신 인력양성 ○ 방송통신분야 그린IT계획의 수립
	전 파 기 획 관	전파정책 기획과 ○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 ○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정책,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
		전파방송 관리과 ○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및 방송통신, 정보기기 인증정책
		주파수 정책과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구 분			주요 업무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진흥기획관	방송운영총괄과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 방송광고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디지털방송정책과	○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수립 ○ 소외지역·계획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 및 시행
		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 방송평가 기본계획 및 방송심의정책 수립, 외주제작에 관한 정책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 방송서비스 정책 총괄 ○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및 공영방송 정책
		지상파방송정책과	○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뉴미디어정책과	○ 뉴미디어·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방송채널정책과	○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서비스 정책 총괄 ○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정책, 와이브로 관련 활성화 정책
		통신경쟁정책과	○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 ○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합병, 재판매 제도 관련 정책
		통신이용제도과	○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개선 ○ 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및 이용제도
		통신자원정책과	○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	○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정책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운영
		시장조사과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관련 정책
		이용자보호과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청자권익증진과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관리, 방송소외 계층 지원 정책

구 분		주요 업무
네 트 워 크 정 책 국	네트워크기획 보호과	○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 안전성 · 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 ○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법령 제 · 개정 ○ 위치정보 사업자 인 · 허가 및 보호정책, 건전한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
	인터넷 정책과	○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 인력·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지능통신망팀	○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 활성화 ○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대변인		○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언론 브리핑 지원 ○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 · 평가 및 대응
감사담당관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운영지원과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의전 및 청사의 관리 및 방호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부록 표-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법률명	주요 내용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사무조직 ○ 위원회의 소관사무, 운영방법 및 심의위원회 설치	2008. 2.29 제정 2010. 3.22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의 진흥·기술기준·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010. 3.22 제정 2010. 3.31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사업자 분류(IPTV 제공·콘텐츠 사업자) ○ 진입규제, 사업권역, 소유규제	2008. 1.17 제정 2010. 3.22 개정
방송법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승인·재승인	2000. 1.12 제정 2010. 3.22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 및 출자 ○ 임원의 임명, 이사회 구성	2000. 1.12 제정 2010. 3.22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구성 ○ 방송문화진흥회자금의 설치 근거	2008.12.26 제정 2008. 2.29 개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2008. 3.28 제정 2009. 4.22 개정
전파법	○ 주파수 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 절차 ○ 무선국 허가·검사 등 무선국 이용절차	1961.12.30 제정 2010. 7.23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 통신재난 관리	1991. 8.10 제정 2010. 7.23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역무(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시장진입, 경쟁촉진·공정경쟁 제도 ○ 통신이용자 보호제도	1991. 8.10 제정 2010. 3.22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협조	2003.12.27 제정 2009.11. 2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제, 불법 스팸 전송 금지	1986. 5.12 제정 2010. 3.22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주소자원의 사용·관리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004. 1.29 제정 2009. 6. 9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 공사업의 등록, 설계의 기술기준 ○ 공사의 분리 발주제, 하도급의 제한	1971. 1.22 제정 2010. 4.12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분류, 시장 진입 제도 ○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 정보 이용	2005. 1.27 제정 2010. 3.22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 광대역통합통신망 구축 촉진 ○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1995. 8. 4 제정 2010. 3.22 개정

4. 2010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부록 표-3〉 2010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법안명	국회 제출일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1.8 (미상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사업폐지, 과징금부과 등의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시·도지사)에 이양
방송법	2010.3.11 (미상정)	○ 허가·재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토록 규정 ○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시 승인신청서류 접수 창구 일원화 ○ 시청자가 시간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방송 프로그램의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전환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정보통신 공사업법	2010.10.29 (상임위 소위)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범위 확대 ○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련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5.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현황

〈부록 표-4〉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현황

구 분	규제개혁 추진과제		추진현황
방송	1	기부금품 모집광고 제한적 허용	고시개정 완료
	2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허용 범위 확대	고시개정 완료
	3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 완화	고시개정 완료
	4	방송발전기금 면제 · 경감	시행령제정 완료
	5	방송발전기금 이의신청제도 신설	시행령개정 완료
	6	중계유선 변경허가 사항의 신고제 전환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7	중계유선방송 실시결과 제출의무 면제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8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9	IPTV 사업자 허가 · 승인 심사비용 부담 폐지	고시개정 완료
	10	방송통신분쟁제도 개선	시행령개정 진행중
통신	11	도매제공 도입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마련	고시제정 완료
	12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시행령개정 진행중
	13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시행령개정 진행중
	14	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 면책요건 명확화	고시개정 진행중
	15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면제 제도 개선	시행령개정 완료
	16	양수 · 합병인가신청방법개선	시행령개정 완료
	17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고시개정 진행중
	18	비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	고시폐지 완료
	19	정보통신공사업 재등록 기준 완화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전파	20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시행령개정 완료
	21	DTV동일채널 소출력 중계기 허가제 개선	고시개정 완료
	22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완화	시행령개정 완료
	23	아마추어 무선기사 시험면제 자격종목 도입	시행령개정 완료
	24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의 공중선 전력 범위 확대	시행령개정 완료
	25	고주파 이용 의뢰기기 인증제도 개선	고시개정 진행중
	26	공중선계의 피뢰기 및 접지설치 의무 완화	고시개정 완료
	27	무선국 개설심사의 신고서류 간소화	고시개정 완료

6. 2010년도 회계 결산

□ 결산 총괄

〈부록 표-5〉 2010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결산액(C)	집행률(%) (C/B)
세 입	계	616,529	616,529	632,493	102.6
	일반회계	350,363	350,363	340,328	97.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1	-
	방송발전기금	266,166	266,166	292,164	109.8
세 출	계	598,299	598,861	607,652	101.5
	일반회계	325,637	325,637	313,067	96.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496	7,058	2,421	34.3
	방송발전기금	266,166	266,166	292,164	109.8

주 : 1. 혁신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전파연구소 지방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공사 지연 때문임 (미집행액 2,421백만원 → 2011년도 이월)

2. 방송발전기금 수입·지출은 수입의 증가로 계획액 대비 9.8% 초과 달성됨

□ 방송발전기금

1) 재정상태

〈부록 표-6〉 방송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A)	2009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429,750	410,276	19,474	4.7
부 채	0	0	0	0
자 본	429,750	410,276	19,474	4.7

2) 재정운영

〈부록 표-7〉 방송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A)	2009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프로그램순원가	162,946	147,333	15,613	10.6
비 용	469	1,574	△ 1,105	△ 70.2
수 익	180,418	166,613	13,805	8.3
재정운영결과	△ 17,003	△ 17,706	703	4.0

주 :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 기준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로 표시

□ 프로그램 총괄표

〈부록 표-8〉 프로그램 총괄현황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598,860,664,300	607,652,003,730
130장(분야) 통신	332,694,664,300	315,487,734,020
131관(부문) 방송통신	332,694,664,300	315,487,734,020
〈 일반회계 〉	325,637,069,000	313,067,103,290
10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	1,650,000,000	1,650,000,000
1200항 방송인프라개선	13,557,000,000	13,557,000,000
1300항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7,448,000,000	6,940,949,780
1500항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35,558,000,000	33,072,892,320
3100항 통신서비스고도화	25,109,000,000	25,077,648,360
4100항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100,000,000	2,041,807,340
4300항 네트워크고도화	17,911,000,000	17,911,000,000
4400항 정보보호강화	76,853,000,000	76,853,000,000
5100항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2,420,000,000	12,413,186,800
7100항 방송통신행정지원	133,031,069,000	123,549,618,69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7,057,595,300	2,420,630,730
1500항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7,057,595,300	2,420,630,730
060장(분야) 문화 및 관광	266,166,000,000	292,164,269,710
061관(부문) 문화예술	266,166,000,000	292,164,269,710
〈 방송발전기금 〉	266,166,000,000	292,164,269,710
11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	37,068,000,000	34,931,925,650
12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융자)	11,500,000,000	11,500,000,000
1400항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6,016,000,000	5,954,130,110
1600항 방송진흥기반구축	42,990,000,000	40,866,685,220
1700항 방송진흥기반구축(융자)	22,000,000,000	21,998,493,110
2100항 방송인프라개선	61,420,000,000	58,585,688,500
4200항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2,092,000,000	21,714,433,290
5200항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4,120,000,000	4,041,639,430
7200항 방송발전기금운영비	723,000,000	307,079,060
9000항 내부거래지출	50,000,000,000	50,000,000,000
9700항 여유자금운용	8,237,000,000	42,264,195,340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부록 표-9〉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1차	1.14(목)	의결	(재) 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서면보고 및 내부위임 처리방안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입법 추진현황 및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제2의 인터넷 붐 조성을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기본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안)에 관한 사항
제2차	1.15(금)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은평방송 등 14개사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Australia Network 등 외국방송
제3차	1.27(수)	의결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일괄 처리에 관한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 22건
		의결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씨유미디어 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앤엠 등 16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한국에이치디방송 등 3개사
		의결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에 관한 건 - (주)한국경제티브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CMB광주동부방송 및 (주)CMB광주방송 합병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주)티브로드 동남·북부산·서부산방송 합병
		의결	(주)KT와 (주)LG텔레콤 간 착신과금(080)서비스 상호접속협정 변경 인가에 관한 건
		보고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회차	일자	안전 구분	안전명
제4차	1.29(금)	의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위성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제5차	2.3(수)	의결	2010. 3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6차	2.9(화)	의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운영 및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의결	WiBro 사업자의 이행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정책방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주) CJ오쇼핑의 (주) 온미디어 인수에 따른 심사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7차	2.12(금)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 와미디어 등 3개사
제8차	2.12(금)	의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USIM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안전 상정에 관한 사항
제9차	2.26(금)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 SK브로드밴드, (주) LG텔레콤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서울특별시 등 2개사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Fashion TV HD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10차	2.26(금)	의결	「KBS 제3표준 FM 방송국」개설 허가에 관한 건
		의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건
제11차	3. 4(목)	의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12차	3.10(수)	보고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13차	3.15(월)	기타	(주)에스비에스,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피심인 의견진술
제14차	3.16(화)	의결	09년 3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플래닛미디어 등 2개사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DVL TV S.A. 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엠비 대전방송의 (주)씨엠비 동대전·(주)한씨엔 합병
제15차	3.17(수)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의결	(주)에스비에스,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규제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강원방송, (주)신라케이블방송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제16차	3.26(금)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TV - Novosti의 Russia Today 등 3개 외국방송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 등 23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알앤엘내츄럴라이프 등 3개사
제17차	3.30(화)	의결	「2010~2011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주)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가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18차	4.7(수)	의결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시 확정에 관한 건
		의결	「방송법」상 1인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에 관한 사항
제19차	4.13(화)	의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정에 관한 건
제20차	4.21(수)	의결	보조적데이터방송을 이용한 T-커머스 제도개선에 관한 건
		의결	(주)CJ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주식인수에 관한 건
		의결	(주)강원민방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건
		보고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21차	4.23(금)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재)아이피티브이교육방송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NGC NETWORK INTERNATIONAL, LLC의 NATGEO WILD HD 등 2개 외국방송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JCN 울산방송(주) 등 5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에이치씨엔 서초방송 등 10개사
제22차	4.23(금)	의결	(주)에스비에스,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23차	4.26(월)	의결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안)에 관한 건
제24차	4.28(수)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삼성전자(주) 등 13개 법인
		의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티유미디어(주)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영서방송
		의결	방송편성책임자 방송공표 및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주)
		의결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사
		보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25차	5.7(금)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BBC Worldwide Ltd의 Cbeebies 등 3개 방송
제26차	5.7(금)	의결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사
		의결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및 서면 의결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위성휴대통신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유)의 (주)LG텔레콤 위성휴대통신 사업양수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송신에 관한 건 - (주)현대홈쇼핑 등 3개사
		보고	융합과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사항 -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

회차	일자	안전 구분	안전명
제27차	5.12(수)	의결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의결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제28차	5.18(화)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
		보고	200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29차	5.20(목)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주)아이비미디어넷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KT 등 3개 사업자
		의결	SK텔레콤(주)와 (주)세종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등 2개사
제30차	5.26(수)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제31차	5.28(금)	의결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및 디지털무전기 도입을 위한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제32차	6.1(화)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씨제이미디어 등 6개사
		의결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건
		보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33차	6.7(월)	의결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에 관한 건
		의결	협찬고지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KBS 등 5개 방송사업자
		의결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사
제34차	6.10(목)	의결	LBS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이용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관한 건
		의결	SK텔레콤(주) 및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35차	6.11(금)	의결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투원미디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제이미디어 등 6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동서디지털방송 등 45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주)씨엠비대전방송의 (주)한국케이블TV 대전방송 합병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 등 53개사
제36차	6.11(금)	의결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사항
제37차	6.30(수)	의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의결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안)에 관한 건
		의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제38차	7.2(금)	의결	SK텔레콤(주)와 (주) 한국케이블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협정 변경인가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제39차	7.6(화)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주)모음미디어
제40차	7.8(목)	의결	KBS-2TV ‘부자의 탄생’ 재심에 관한 건
		의결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제41차	7.12(월)	의결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제42차	7.15(목)	의결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대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주)강원네트웍스, (주)강원방송, 하나방송(주)
		의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제주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건
		의결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43차	7.16(금)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LG U+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에이치씨엔미디어 등 3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인가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주)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합병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인가에 관한 건 - (주)씨엠비홀딩스의 (주)씨엠비전남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
		보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4차	7.20(화)	의결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안)에 관한 건
제45차	7.23(금)	의결	(주)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주)에스비에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제46차	7.29(목)	의결	2.5GHz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재)극동방송 등 4개사
		의결	KBS 경인 제1TV 방송국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건
제47차	8.9(월)	의결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이피지 등 11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아이티비엠지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충청방송 등 24개사
제48차	8.13(금)	의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건
		보고	CJ계열 PP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9차	8.17(화)	의결	KBS 경인 제1TV 허가 및 KBS 제1TV 변경허가에 관한 건
		의결	MBC-TV '개인의 취향' 재심에 관한 건
		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50차	8.18(수)	의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수정)에 관한 건
제51차	8.19(목)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제52차	8.24(화)	의결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재난방송 종료일시 및 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송국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제53차	9.3(금)	의결	SK텔레콤(주)와 SK텔링크(주)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변경 인가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영서방송 등 8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54차	9.8(수)	의결	(주)한국레저낙시방송 - (주)CJ헬로비전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
		의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제55차	9.15(수)	의결	(주)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
		의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6차	9.16(목)	의결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씨유미디어 등 4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 등 19개사
제57차	9.17(금)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의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전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8차	9.24(금)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KT 등 3개 사업자
		의결	이통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에 관한건
		보고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사항
제59차	10.13(수)	의결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계획에 관한 건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LG U+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60차	10.14(목)	의결	LG U+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조건 관련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정보통신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제61차	10.20(수)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 한국노키아(주) 등 8개 법인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 KT 등 3개 사업자
		의결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재) 원음방송 등 2개사
		의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SK텔레콤(주)의 티유미디어(주) 합병
		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차	10.21(목)	보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안)에 관한 사항
		의결	전기통신사업법령 하위 고시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
제63차	11.2(화)	의결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 -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의 와이브로 사업
		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64차	11.3(수)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주)KT의 외국방송 재송신 한시적 허용에 관한 건
		의결	SKT(주)와 (주)한국케이بل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SKT(주)와 (주)KT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연합인포맥스 등 3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하나방송(주) 등 52개사
제65차	11.10(수)	의결	「2010년 방송평가」결과에 관한 건
		의결	하나방송(주) 구성주주의 주식처분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건
		의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건
		보고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
제66차	11.15(월)	의결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에 관한 건
		의결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2010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67차	11.18(목)	의결	SK텔레콤(주), (주)KT, (주)LG U+의 무선데이터 서비스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안동MBC 등 6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의결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제68차	11.19(금)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 환경티비 등 4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주)씨제이헬로비전 해운대 기장 방송 및 (주)한국케이블티브이모두방송 합병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 계열 14개사
		의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제정안에 관한 건
제69차	11.26(금)	의결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43개 사업자
		의결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고시) 제정 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리빙티브이 등 2개 방송사업자
제70차	11.29(월)	의결	단체수신 계약시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제71차	12.2(목)	의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SK텔레콤(주), (주)KT, (주)LG U+의 무선데이터 서비스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72차	12.8(수)	의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제73차	12.10(금)	의결	SK텔레콤(주)와 SK브로드밴드(주)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사회안전방송 등 2개사
		의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행정규정 개정안 일괄 개정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74차	12.13(월)	의결	「2.5GHz대역 WiBro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에 관한 건
		의결	「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무선설비규칙 등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재) 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고시)및 부속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제75차	12.16(목)	의결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제76차	12.22(수)	의결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의 와이브로 사업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 (주)CJ헬로비전의 (주)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 양수
		의결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SK텔링크(주)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재허가에 관한 건 - (주)강원민방
		의결	하나방송(주) 재허가에 관한 건
		의결	(주)경기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의결	창원 - 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엠에스하모니 등 35개 사업자
		의결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77차	12.24(금)	의결	「방송평가에관한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아날로그TV방송의 디지털전환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선물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 구분	안건명
제78차	12.28(화)	의결	2010~2011년도 접속료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고시 제·개정 등에 관한 건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제79차	12.29(수)	의결	2009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 방송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주)일자리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Eurochannel Inc의 Eurochannel 등 2개 방송
		의결	SK텔레콤(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결정에 관한 건
		보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제80차	12.31(금)	의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건

8. 2010년도 주요 연월표

〈부록 표-10〉 2010년도 주요 연월표

○ 2010년 1월

일 자	추진 내용
1월 13일	벤처업계와 신년하례회 개최
1월 13일	제1차 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
1월 14일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확정 발표
1월 18일	인터넷기업 CEO 및 관련 협회장 신년간담회 개최
1월 19일	뉴미디어 업계와 신년 하례회 개최
1월 19일	방송통신 기술 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
1월 20일	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발대식 및 제4차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1월 25일	통신업계 CEO와 신년 간담회 개최
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설명회 개최
1월 28일	제1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
1월 28일	2009년 방송통신민원 동향 발표
1월 28일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벤처업계 신년하례회〉



〈방송통신 기술 자문단 제1차 회의〉



○ 2010년 2월

일 자	추진 내용
2월 2일	3DTV 방송진흥센터 개소
2월 2일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공시
2월 3일	디지털TV 보급 활성화 계획 발표
2월 8일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발표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협력방안 합의
2월 16일	800/900MHz, 2.1GHz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 의결
2월 16일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의결
2월 17일	2010년 디지털방송 시설투자 융자신청 개시
2월 23일	울진군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2월 26일	단양군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3DTV 방송 진흥센터 개소〉



〈울진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 2010년 3월

일 자	추진 내용
3월 2일	개인정보 자가진단 웹사이트 운영 개시
3월 4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월 4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센터 개소
3월 5일	강진군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 개최
3월 8일	보급형 저가디지털TV 선정 공표
3월 8일	2011년 APCERT 총회 한국 유치
3월 11일	2009년 국가정보보호지수 발표
3월 11일	방송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3월 16일	제2차 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
3월 16일	휴대폰 충전단자 20핀 표준, ITU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3월 17일	한국교육방송 보컬이사 임명
3월 1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 의결
3월 22일	무선인터넷 활성화 IT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3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3월 24일	미래위 공동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세미나 개최
3월 25일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3월 29일	2009년 하반기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발표
3월 29일	모바일광고 정책 포럼 출범
3월 30일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의결

〈방송업계 CEO 간담회〉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 2010년 4월

일 자	추진 내용
4월 1일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운영 개시
4월 1일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 개최
4월 1일	인터넷기업 CEO와 간담회 개최
4월 1일	LN, SH공사와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공동사업 협약 체결
4월 6일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울진, 단양, 강진) 정부지원 개시
4월 7일	2008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의결
4월 7일	아날로그 TV방송 2012년 12월 31일 04시 종료 의결
4월 8일	광대역 무선망 발전협의회 개최
4월 8일	법정부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4월 14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시행
4월 14일	MIPTV 2010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
4월 20일	전직 정통부장관·방송위원장 간담회 개최
4월 21일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의결
4월 22일	제 55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
4월 23일	농어촌스마트인프라구축협의회 발대식
4월 23일	월드뱅크와 ICT 협력을 위한 MOU 체결
4월 26일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선정 의결
4월 26일	제2회 기업보안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4월 27일	제2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개최
4월 27일	편성평가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4월 28일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출범
4월 28일	800/900MHz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최종 확정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협약 체결〉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 2010년 5월

일 자	추진 내용
5월 4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간담회 개최
5월 6일	ICT 포럼 코리아 2010 개최
5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용 앱 서비스 개시
5월 7일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 발표
5월 11일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연구회출범
5월 12일	방송통신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 5.14)
5월 12일	재외국민거주여권정보확인시스템시범서비스 개시
5월 13일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공표
5월 14일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 컨퍼런스 개최
5월 14일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보궐이사 임명
5월 17일	ITU-T SG3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 5.21)
5월 18일	4개 통신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 발표 (2009.9. ~ 2010.4.)
5월 18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와 간담회 개최
5월 19일	3DTV 방송진흥센터 홈페이지 및 체험관 개소
5월 19일	세계최초 지상파 3DTV 시범방송 개시
5월 19일	미래인터넷 추진위원회출범
5월 20일	방송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5월 24일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월드IT쇼 (~ 5.28) 개최
5월 25일	보급형 디지털TV, 3개사 6개 제품 확정 · 출시
5월 27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그린 IPTV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5월 28일	제2차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개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 간담회〉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 컨퍼런스〉



○ 2010년 6월

일 자	추진 내용
6월 1일	IT 관련 10개 협회와 간담회 개최
6월 1일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허용 의결
6월 5일	한국인터넷드림단 발족
6월 8일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계획 발표
6월 9일	민·관 협력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 협약 체결
6월 10일	정보보호 심포지엄 2010 개최
6월 10일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추진계획 의결
6월 10일	LBS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이용활성화계획 의결
6월 14일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6월 28일	2010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개최
6월 29일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6월 29일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6월 29일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별 역할 발표
6월 30일	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6월 30일	20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발표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 협약 체결〉



〈2010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 2010년 7월

일 자	추진 내용
7월 8일	3D 방송분야 산학연 대표와 간담회 개최
7월 9일	제6차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7월 14일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7월 15일	일간신문 부수 인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 지정
7월 16일	제7회 해킹방어대회 시상식 개최
7월 20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회 개최
7월 22일	경기도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실시협약 체결
7월 22일	방송사 대상 협찬고지, 신유형 광고제도 설명회 개최
7월 26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3차 회의 개최
7월 29일	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7월 3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7월 30일	방송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3D방송 산학연 대표 간담회〉



〈경기도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실시협약 체결〉



○ 2010년 8월

일 자	추진 내용
8월 3일	애플 아이폰4 전자파 적합 및 형식등록 인증서 교부
8월 16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공청회 개최
8월 16일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8월 18일	통신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통신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8월 18일	2010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동향발표
8월 19일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8월 19일	2010년도 방송통신 품질평가 워크숍 개최
8월 20일	FMC 단일번호 서비스 허용
8월 25일	아이핀(i-pin)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8월 31일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광주) 전일 개관

〈통신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CEO 간담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공청회〉



○ 2010년 9월

일 자	추진 내용
9월 1일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 (KCMC) 발족
9월 1일	울진군 우리나라 최초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완료
9월 2일	종합평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9.3)
9월 5일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 개최 (~ 9.10)
9월 6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9월 9일	인터넷코리아컨퍼런스 (IKC) 2010 개최 (~ 9.10)
9월 9일	한 - 에콰도르 간 정보통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9월 9일	민 · 관 합동 인터넷상생협약체 발족
9월 13일	아 · 태 무선통신포럼 (AWF) 개최 (~ 9.16)
9월 14일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9월 15일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 의결
9월 15일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 추진계획 의결
9월 24일	SKT · KT · LG U+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9월 28일	DDoS 사이버 대피소 개소
9월 29일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울진군 디지털방송 전환 선포〉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



○ 2010년 10월

일 자	추진 내용
10월 1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10월 6일	강진군 디지털방송 전환 선포식 개최
10월 8일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 업무협력 협약 체결
10월 8일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10월 14일	3D 시청 안전성 세미나 개최
10월 14일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의결
10월 14일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의결
10월 21일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유치 결정
10월 21일	알기쉬운 무선랜(Wi-Fi) 보안설명서 배포
10월 27일	천리안위성 국산화성공 기념 및 통신중계기 활용계획 워크숍 개최
10월 29일	고화질 3DTV 실험방송 개시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지키기 업무협력 협약 체결〉



〈고화질 3DTV 실험방송 개시〉



○ 2010년 11월

일 자	추진 내용
11월 1일	제2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개최 (~ 11.4)
11월 2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11월 3일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임명
11월 3일	단양군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완료
11월 3일	미래인터넷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1월 4일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이용 개선방안 발표
11월 4일	제2회 국제 방송통신분쟁조정 포럼 개최
11월 4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 개최
11월 5일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개최 (~ 11.13)
11월 8일	2010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개최 (~ 11.10)
11월 8일	방송통신 분야 최초 녹색인증 수여
11월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 의결
11월 10일	2010년 방송평가결과 공개
11월 11일	스마트미디어 시대 방송전문인력 양성방안 공동 워크숍 개최
11월 15일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

〈G20 방송통신 미래 체험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



○ 2010년 11월

일 자	추진 내용
11월 16일	월드뱅크 공동,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융합 공동 워크숍 개최
11월 17일	제4회 인터넷전화(VoIP)보안기술세미나개최
11월 17일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자문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11월 19일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개소
11월 22일	전파방송 컨퍼런스 2010 개최
11월 23일	스마트TV 대응 방송콘텐츠 진흥 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11월 23일	제14회 해킹방지워크숍 개최 (~ 11.24)
11월 23일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추진계획 발표
11월 24일	스마트시대 방송광고산업 육성전략 발표
11월 26일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의결
11월 30일	2010년도 사물지능통신 선도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 개최
11월 30일	2010년 LBS 컨퍼런스 개최
11월 30일	무선인터넷 접속번호 (WINC)서비스 활성화 시행계획 발표

〈전파방송 컨퍼런스 2010〉



〈2010년 LBS 컨퍼런스〉



○ 2010년 12월

일 자	추진 내용
12월 1일	KIF 벤처투자 컨퍼런스 및 페어 개최
12월 2일	제3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12월 3일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재창조 심포지엄 개최
12월 3일	‘2010 인터넷 윤리대전’ 시상식 개최
12월 6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공청회 개최
12월 6일	방송통신망 고도화 컨퍼런스 개최
12월 7일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8일	2010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월 9일	디지털 미디어 페어 및 IPTV 출범 2주년 기념식 개최
12월 10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
12월 10일	제2기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



〈디지털 미디어 페어 및 IPTV 출범 2주년 기념식〉



○ 2010년 12월

일 자	추진 내용
12월 13일	2010년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개최
12월 13일	보안업계 방문 및 CEO 간담회 개최
12월 14일	스마트워크 포럼 창립총회 개최
12월 14일	미래전파 응용서비스 세미나 개최
12월 15일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 개최
12월 21일	2010년도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22일	2010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작품 시상회 개최
12월 24일	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 의결
12월 24일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 발표
12월 28일	2010 ~ 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의결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9. 영문 약어

〈부록 표 - 11〉 영문 약어

약 어	내 용
ADB	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APCERT	아시아·태평양지역 침해사고대응팀 협의체 (Asia-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APEC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pp store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
APT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기 통신 개발의 촉진과 지역 전기 통신망의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 협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 기구
ASEAN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AT-DMB	지상파 DMB(T-DMB)의 성능을 개선한 모바일 TV 방식.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으로 T-DMB보다 전송량을 2배 정도 향상시켜 다채널 또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가 가능
BcN	음성·데이터, 유·무선 등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CAGR	연평균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수년간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즉 기하평균) 평균성장률을 환산한 것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벨로루시·투르크멘·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우즈베크·키르기스·카자흐·타지크·몰다비아 등 11개국
CP	콘텐츠 제공자 (contents provider),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록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CUG	폐쇄형 사용자 그룹 (Closed User Group), 공중 교환망에서 특정의 가입자가 집단을 구성하여 동일 집단 가입자 상호 간에만 접속되며, 집단 이외의 가입자간 접속이 금지되는 기능
D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
DDoS	해커가 감염시킨 대량의 좀비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시스템으로 다량의 패킷을 무차별적으로 보내 과다 트래픽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약 어	내 용
DAB	유럽에서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FM)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발한 디지털 오디오 방송 명칭. 유럽 첨단기술개발계획(EUREKA)의 프로젝트로서 개발되어 EUREKA 1470이라고도 함
DMB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DNS	특정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 일일이 숫자로 된 IP주소를 기억하지 않고 도메인 네임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을 IP주소로 전환시켜주는 시스템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미디어의 불법 또는 비인가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저작권 소유자나 판권 소유자가 이용하는 정보 보호 기술의 일종인 접근 제어 기술
DVB-H	유럽 방식의 휴대인터넷TV 방송기술. IP 데이터그램이라는 신호 처리 방식으로 신호를 패킷 단위로 보내는 일종의 웹캐스팅인 IP 데이터 캐스팅
ESCAP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O)의 상설기구로 운영. 역내의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및 자원에 관한 사업 등 아·태지역 경제사회문제를 다룸
FIRST	국제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FLO	미국 퀄컴사가 개발한 휴대폰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전송기술. 이동휴대방송 솔루션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단방향 지상파 전송기술인 FLO(Forward Link Only)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MediaFLO MDS(Media Distribution System)로 구성
FMC	유무선 융합(Fixed Mobile Convergence),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망, 기술, 사업, 서비스 등의 통합
FTTx	전화국으로부터 광섬유가 도달 되는 지점, 구역, 장비,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광가입자망의 포괄적인 표현
HD	고화질(High Definition), 화소수가 1920×1080 이상인 화질로 1초 동안 60프레임을 재생하는 것. SD(일반화질)TV에 비해서는 4배의 화질을 구현
HFC	접속망 구성의 한 방식으로, 동축 CATV 전송망의 주요 트렁크 부분을 광케이블로 개선시킨 망. CATV 방송국에서 가입자 광망 종단 장치(ONU)까지는 광선로를 이용하고 ONU에서 가입자 단말까지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구성 방식
HIGHT	모바일용 64비트 블록 암호화 기술. 2010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보안 분야(ISO / IEC)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HSDPA	비동기식 3세대 이동 통신의 하향 링크에서 10Mbps 수준의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 규격
ICANN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를 지정하는 미국의 비영리 사설기관. 1998년도에 창설된 조직으로서 인터넷의 비즈니스, 기술계, 학계 및 사용자 단체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경로 서버 시스템 관리 등 업무를 조정하는 범세계적 합의체로서 미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약 어	내 용
IEEE	1884년에 설립된 미국전기학회(AIEE: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와 1912년에 설립된 무선학회(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가 1963년에 현재의 명칭과 조직으로 합병하여 설립된 미국 최대의 학회
IMT-2000	미래 공중육상이동통신시스템(FPLMTS)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
IMT-Advanced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3세대(IMT-2000) 이후의 차세대 이동 통신(4G)의 공식 명칭
i-PIN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웹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로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서비스
IP-USN	USN 기술과 IP기술을 접목시킨 방식, IP 인프라와 USN 인프라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센서 노드에 IP를 탑재하여 광범위한 확장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ISMS	정보보호 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
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전기 통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주파수의 할당, 통신료의 인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국제전기통신연합 부문의 하나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책정
LTE	3GPP 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3세대 이동 통신(3G) 방식인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의 진화 기술로 유력한 4세대 이동 통신(4G) 후보 기술
M2M	무선 통신을 이용한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
MRA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시험, 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는 상대국 승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채택하는 협정
MSO	복수중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2개 이상의 SO(중합유선방송사업자)를 가진 사업자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주파수 또는 물리적인 통신망 및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약 어	내 용
OECD	1961년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one-seg	일본의 디지털 휴대 이동 방송 서비스 명칭.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ISDB-T) 신호는 6MHz 대역에 13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방송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세그먼트양을 가변적으로 사용
Open API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토콜, 도구 같은 집합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운영 체제의 상세한 기능은 몰라도 공개된 몇 개의 API만으로도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OUN	방송대학TV, 케이블TV, 위성TV, IP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 교육전문 공공채널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경제력·경영 외국어자격증 등 TV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PIMS	현대인의 사회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종합 시스템
PP	프로그램공급자(Program Provider),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Pre-IPTV	IPTV의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형태로 IPTV의 전(前) 단계. IP망을 기반으로 VoD(주문형 비디오) 중심으로 제공
PSTN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가입 전화 서비스를 위한 전화망. 근래 발달해 온 공중 가입형의 데이터 통신망(공중 교환 데이터망 등) 또는 이용자 직영의 사설 통신망 등과 비교하여 기존의 전화망을 이와 같이 부름
RFID	전파 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RFoG	RF 방식을 도입한 광케이블망. 기존 케이블 방송용 광동축 혼합망(HFC)이 아닌 광케이블망(FTTH)을 통해 RF 방식의 실시간 케이블 방송 신호를 전달하여 케이블 TV의 안정적인 방송 품질을 유지하고 1Gbps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RO	지상파 재송신이 주된 역무인 방송사업자
SEED	메시지를 특정 크기로 나눠서 암호화하는 블록암호 알고리즘의 하나로, 1999년 KISA 및 국내 암호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 국내 정보보호의 씨앗이 되라는 의미에서 'SEED'로 명명됨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케이블TV를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약어	내용
T-DMB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ITU-R의 DSB System A (Eureka-147)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개발한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TOE	kl, t, m³,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u-BcN	현재의 광대역 통합망 (BcN)보다 10배 빠른 망으로 유선은 최고 1Gbps, 무선은 평균 100Mbps 속도의 ALL-IP망 기반 초광대역 융합망
u-City	도시의 모든 시설물이 정보 기술 (IT)로 지능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시
USIM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 (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비밀번호, 로밍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모듈
UWB	중심 주파수의 20%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 또는 점유 대역폭과 상관없이 500MHz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
VDSL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전화선을 이용한 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하나
VSAT	지름 0.6~1.8m의 소형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용 지구국, 주로 미국 내에서 실용화되고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많은 초소형 지구국 (VSAT)이 운용
WCDMA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 이동통신-2000 (IMT-2000)을 위해 부호분할다중접속 (CDMA) 방식을 광대역화하는 기술
WDM-PON	파장 분할 다중 (WDM)을 사용한 광 가입자 망(PON). 현재 코어 백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을 광 가입자 망에 적용한 것으로 PON의 궁극적인 목표
WiBro	핸드셋,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A),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WiBro-Evolution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로, 기존 와이브로에 다중입력다중출력 (MIMO) 기술, 스마트 안테나, 여러 정정 기술인 LDPC 등을 접목한 기술
WiFi	2.4GHz대를 사용하는 무선 랜(WLAN) 규격 (IEEE 802.11b)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주어진 인증 마크, 와이파이라고도 함
WLAN	무선 주파수 (RF) 기술을 이용한 근거리 네트워크. 무선 랜 (WLAN)은 무선접속장치 (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WLAN 카드가 장착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10.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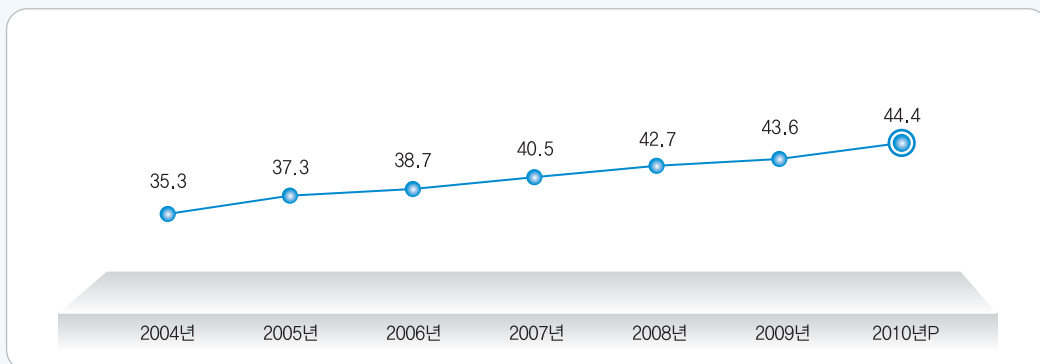
■ 방송통신산업 전체 매출 규모

(단위: 조원)



■ 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 조원)



■ 방송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 조원)



※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2010)',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2010.12.)'에서 인용

■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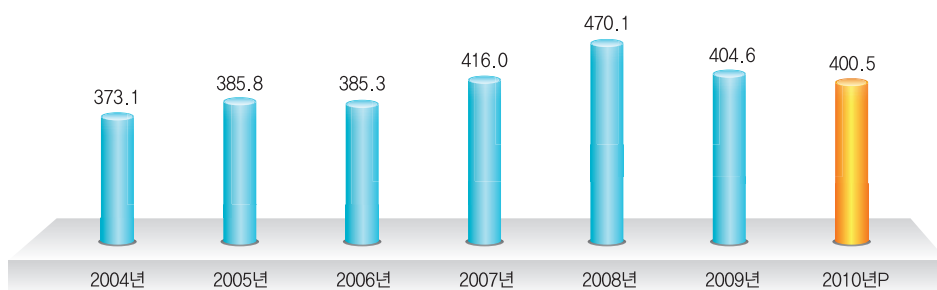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매출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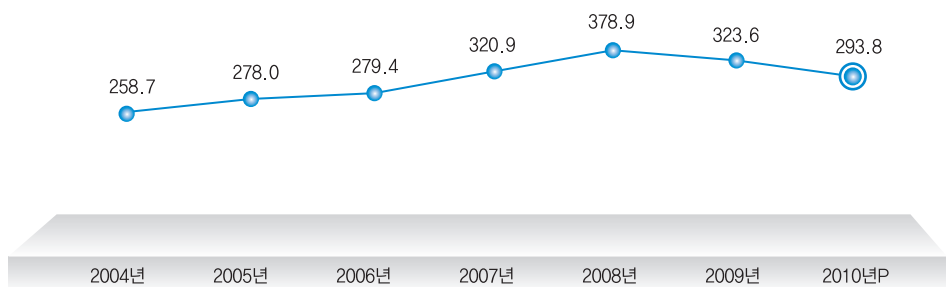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전체 수출액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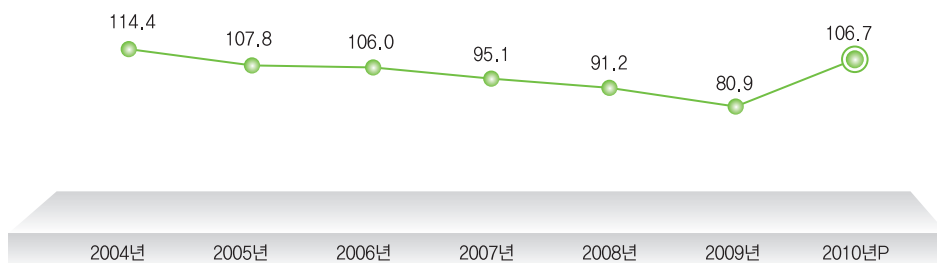
■ 통신기기 수출액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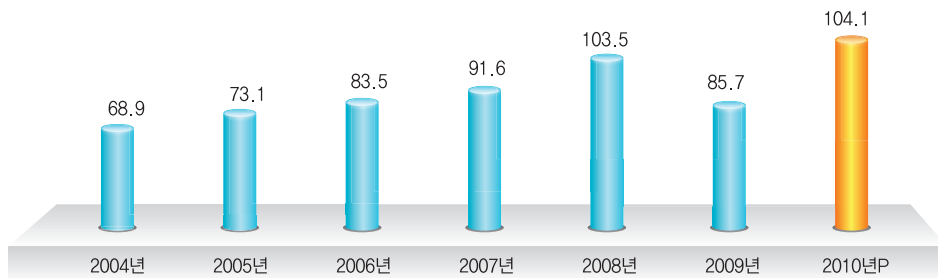
■ 방송기기 수출액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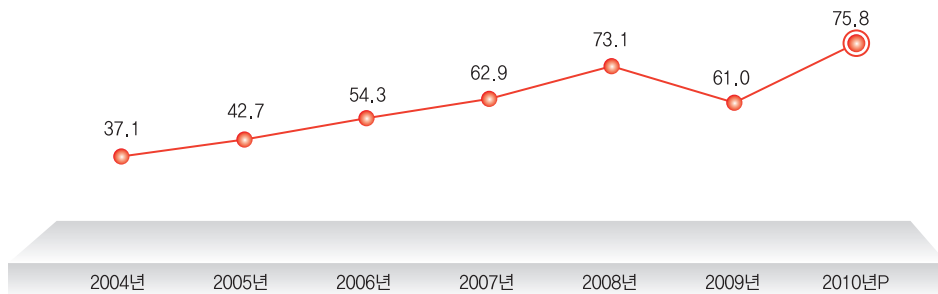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전체 수입액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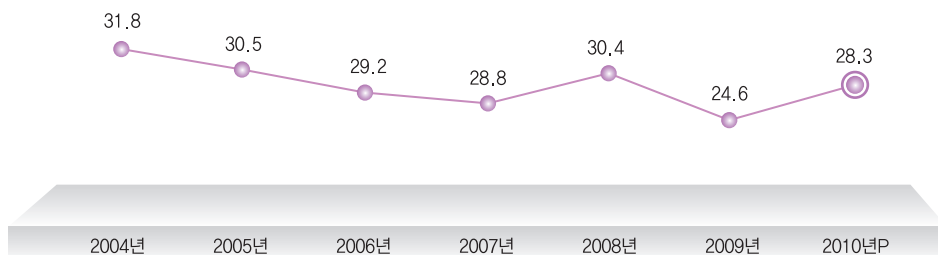
■ 통신기기 수입액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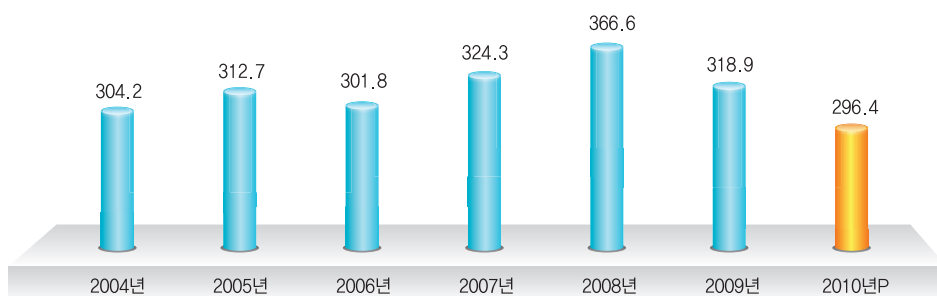
■ 방송기기 수입액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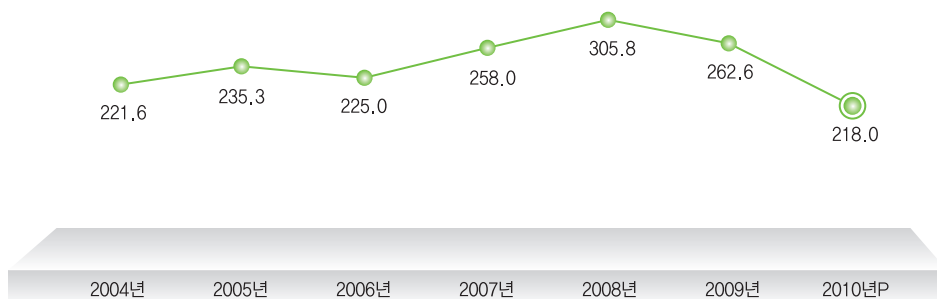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전체 무역수지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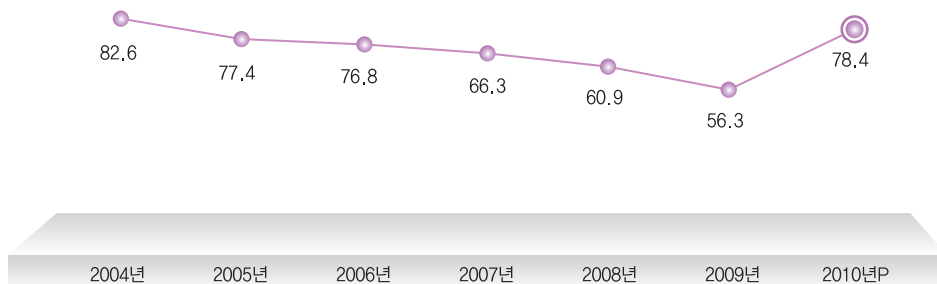
■ 통신기기 무역수지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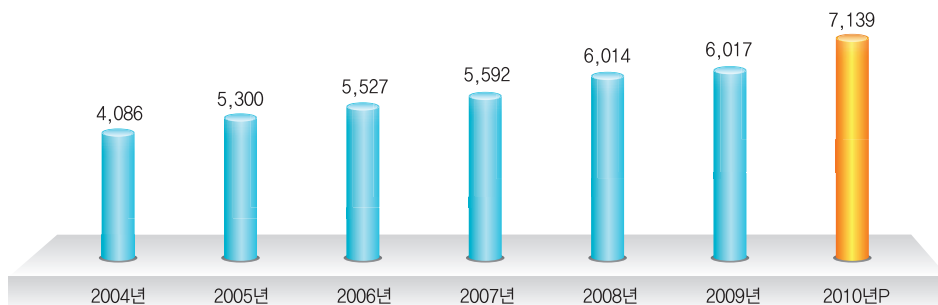
■ 방송기기 무역수지

(단위: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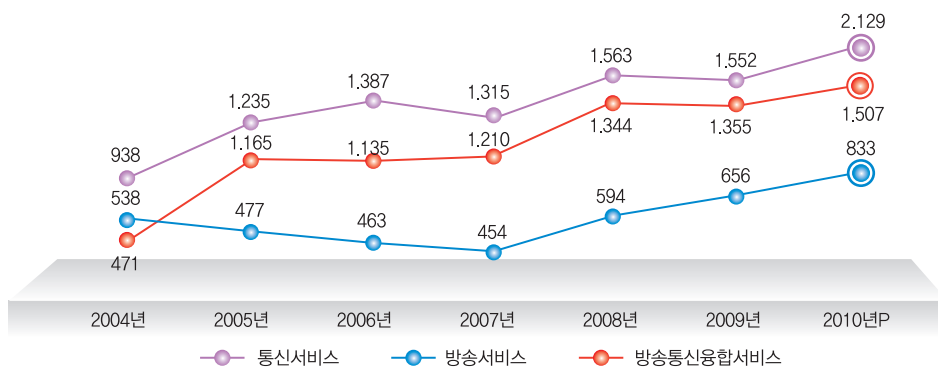
■ 방송통신산업 전체 사업체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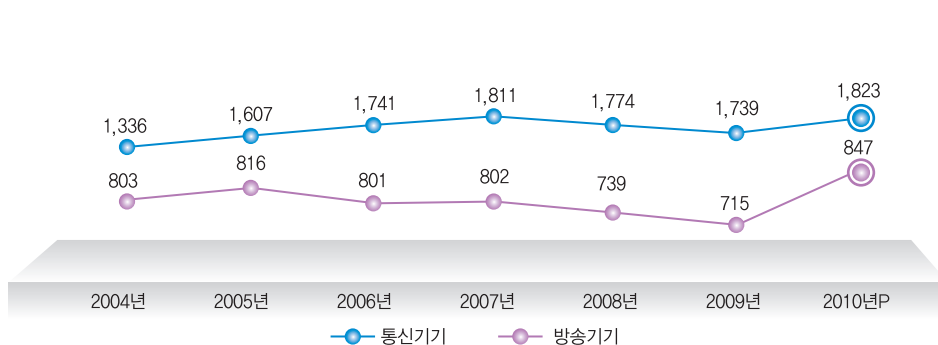
■ 방송 · 통신 · 융합 서비스별 사업체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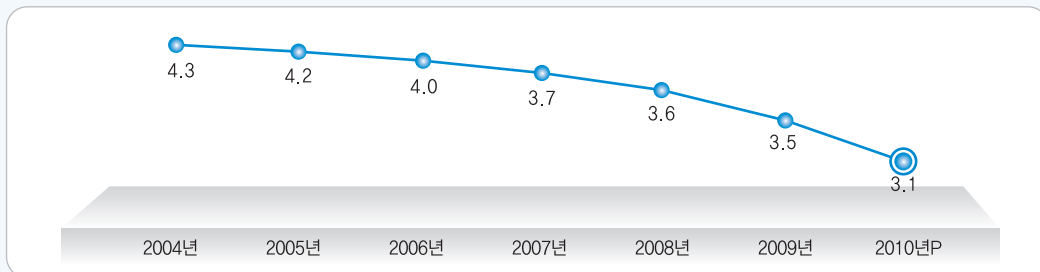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사업체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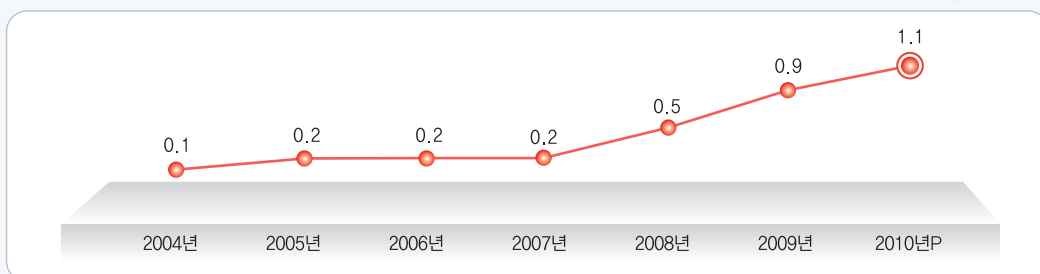
■ 시내전화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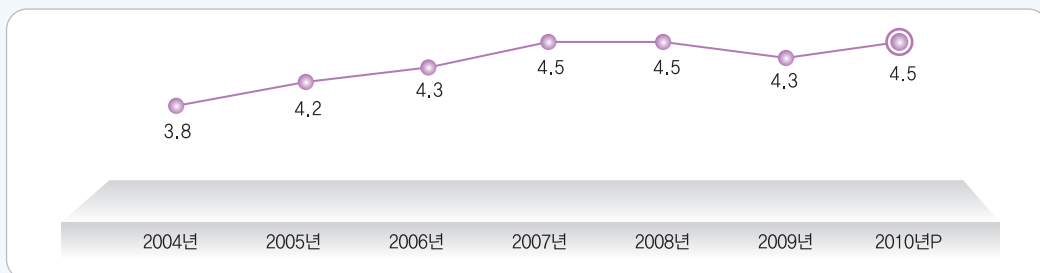
■ 인터넷전화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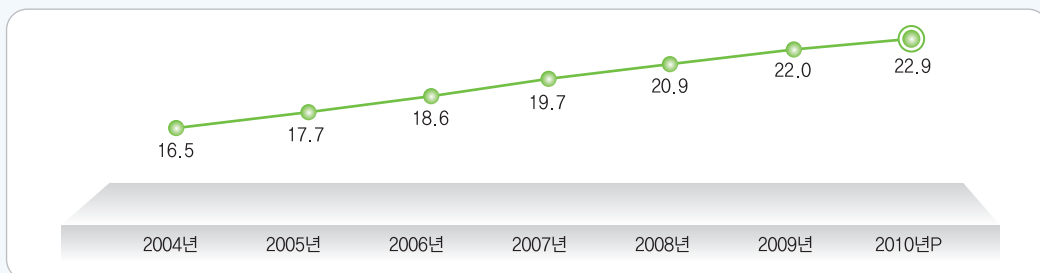
■ 초고속인터넷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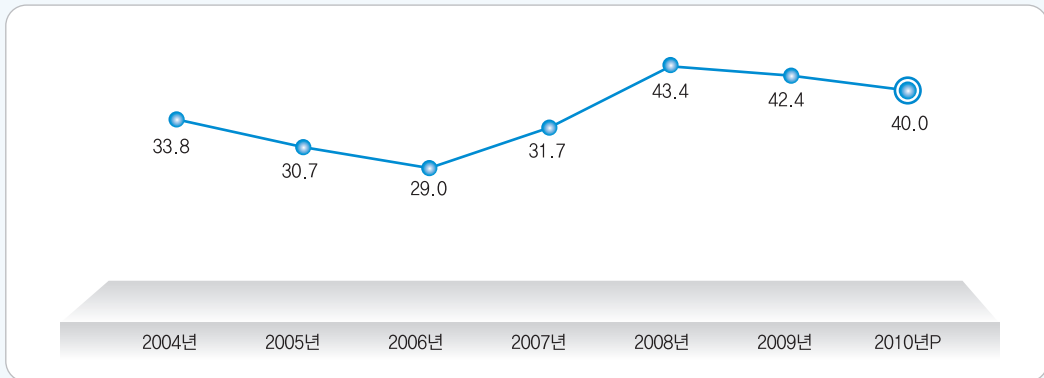
■ 이동전화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 휴대단말기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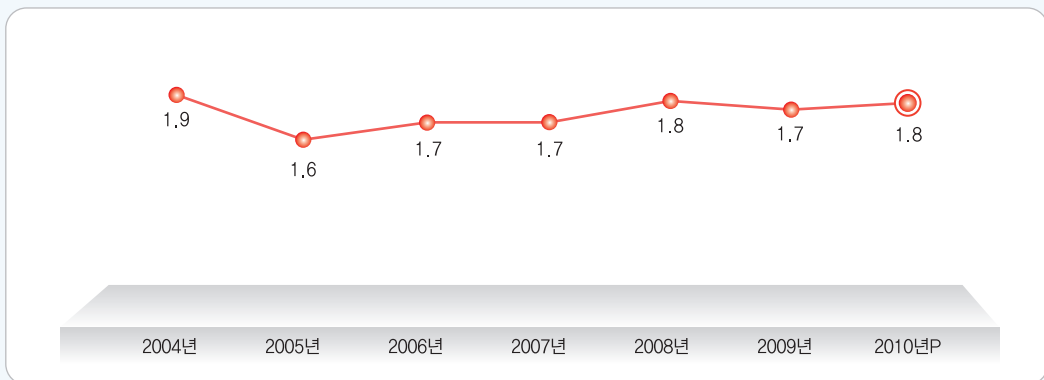
■ DTV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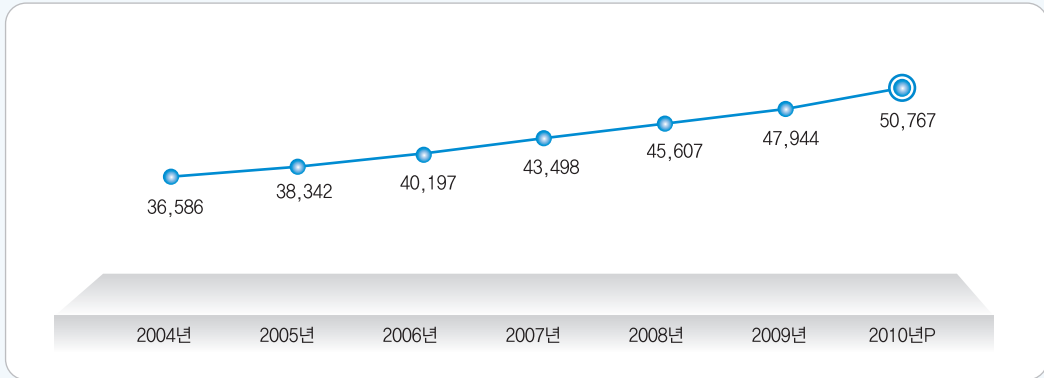
■ 전체 셋톱박스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 이동전화 가입자수

(단위 : 천명)



■ 시내전화 가입자수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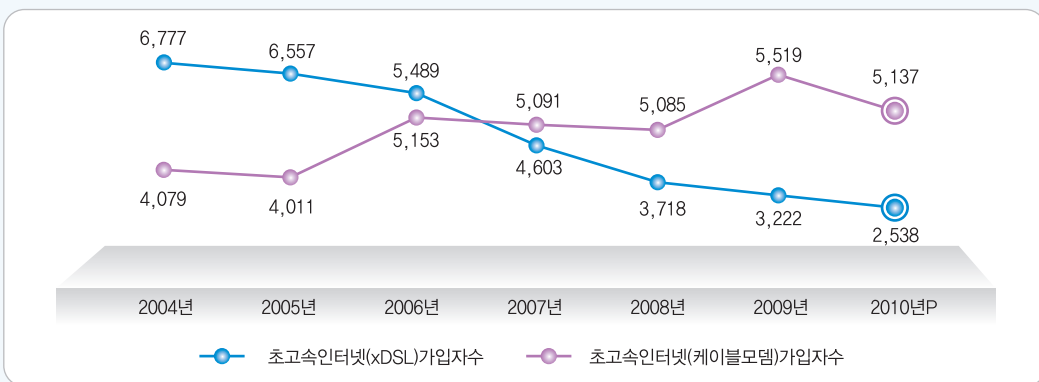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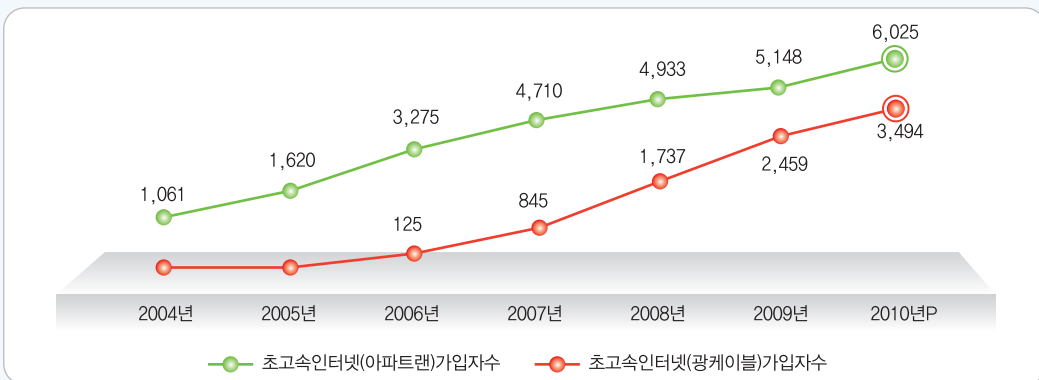
■ xDSL, HFC(케이블모뎀) 가입자수

(단위 : 천명)



■ 아파트랜, FTTH(광케이블) 가입자수

(단위 : 천명)



※ 광케이블 가입자수는 2006년부터 집계

2010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인 쇄 2011년 3월

발 행 2011년 3월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대표전화 02-750-1114

Homepage : www.kcc.go.kr

인쇄처 샤크커뮤니케이션 02-2268-1383

비매품

